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Enhancement of the Inclusivenes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Beaches

2019. 08.

정지호 | 최희정 | 정세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정지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최희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정세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정지호 연구총괄, 제1장, 제3장 제1절, 제2절 일부, 제4장 제1절, 제3절, 제4절 일부, 제5절~제6절, 제5장
연구진	최희정 제2장 제2절, 제3장 제2절 일부, 제4장 제2절 일부 정세미 제2장 제1절, 제3장 제3절, 제4장 제4절 일부

목차

❖ 요약 · i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제 2 장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실태 분석 · 11

제1절 사회약자 현황 및 이동·활동 실태	11
1. 약자의 정의 및 현황	11
2. 약자의 이동·활동 실태 분석	16
제2절 해수욕장 사회약자 이용실태 시범 분석	23
1. 해수욕장 포용 실태 분석 개요	23
2. 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및 백사장 접근로 실태조사	25
3. 해수욕장 접근 및 이동 여건 GIS 분석	32
4. 해수욕장 포용성 증진 시사점	35

제 3 장 해수욕장 포용성 관련 개념과 제도 분석 · 39

제1절 국내·외 포용성 관련 이론 검토	39
1. 포용적 성장	39
2. 포용도시	41
3. 공간적 포용	42
4. 국내 포용도시 논의	43
5.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46
6.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48
제2절 국내 제도 및 사업	50
1. 관련 법률	50
2. 관련 시설 기준	55
3. 관련 사업	65
제3절 국외 제도 및 사업 분석	67
1. 미국	67
2. 일본	71

제 4 장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증진 방안 · 75

제1절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75
1. 기본방향 도출을 위한 방법과 주요 시사점	75
2. 기본방향	79
제2절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방향	80
1.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방향 도출 절차	80
2. 포용성 관련 평가 사례	81
3. 해수욕장 포용성 평가 방향	95
제3절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103
1. 사회약자 관련 법률 개선사항	103
2. 해수욕장 조성·관리 관련 법률 개선사항	104
3. 관련 지침 등 제정	106

	제4절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110
	1.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110
	2. 한국형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정비 개발 111
	3. 포용성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해수욕장의 특성 분석 112
	제5절 사회약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114
	제6절 연안공간의 포용성 개념 정립 및 평가 116
	1. 포용성 개념 정립을 위한 연안공간 범위 117
	2. 포용성 개념 정립을 위한 연안공간의 특성 118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23

	제1절 요약 및 결론 123
	제2절 정책 제언 125

❖ 참고문헌 · 129

❖ 부록 · 135

	부록 1.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관련 기준 136
	부록 2.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사용자유형별 특성과 배려사항 141
	부록 3. 해수욕장 평가 기준 147

표 목차

❖	
〈표 1-1〉 우리나라 해수욕장 지정 현황	4
〈표 1-2〉 선행연구와 차별성	9
〈표 2-1〉 사회적 약자의 종류	12
〈표 2-2〉 우리나라 사회약자 대상	13
〈표 2-3〉 교통약자 현황(2017년)	14
〈표 2-4〉 장래 교통약자 유형별 추계 인구	15
〈표 2-5〉 (체육시설 이용자) 주변 체육시설 접근성	19
〈표 2-6〉 향후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을 원하는 체육시설	20
〈표 2-7〉 최근 3년 이내 장애인의 여행 경험	21
〈표 2-8〉 관광지별 국내여행 경험	22
〈표 2-9〉 해수욕장 포용성 실태 분석 개요	23
〈표 2-10〉 해운대구 해수욕장 지정 현황	24
〈표 2-11〉 2014년 부산광역시 해수욕장 실태조사 결과	26
〈표 2-12〉 부산지역 장애인 해수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30
〈표 2-13〉 해수욕장 포용성 실태 및 시사점	37
〈표 3-1〉 포용성 관련 주요 개념	40
〈표 3-2〉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1번 세부목표 일부	42
〈표 3-3〉 도시의 포용성 측정지표의 체계	45
〈표 3-4〉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유사 개념	49
〈표 3-5〉 해수욕장 조성과 이용 관련 주요 법률	50
〈표 3-6〉 사회약자 편의증진 관련 주요 법률	52
〈표 3-7〉 사회약자 지원 세부 규정	54
〈표 3-8〉 해수욕장 시설·환경기준	57
〈표 3-9〉 해수욕장 시설의 설치·관리기준	58

〈표 3-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공원) 평가항목별 점수	63
〈표 3-11〉 열린관광지 사업 개요	65
〈표 3-12〉 열린관광지 중 연안관광지 현황(2015~2018)	65
〈표 3-13〉 지자체 단위 사업 개요	66
〈표 4-1〉 해수욕장의 포용성 증진 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 종합	77
〈표 4-2〉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79
〈표 4-3〉 장애물 접근성 종합 평가리스트(안)	82
〈표 4-4〉 산림복지시설 공간유형 및 평가항목	90
〈표 4-5〉 해수욕장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Ver. 1.0)	90
〈표 4-6〉 수변활용형 관광레저 시설의 교통약자 접근성 조사표	93
〈표 4-7〉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주요 이용자 특성	97
〈표 4-8〉 해수욕장의 바다·바닷가 포용성 평가항목(안)	100
〈표 4-9〉 해수욕장 평가 개요	102
〈표 4-10〉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사회약자 관련 법률 개선사항	104
〈표 4-11〉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연안공간 조성 관련 법률 개선사항	105
〈표 4-12〉 포용적 국토를 위한 시민참여 관련 과제	115
〈표 4-13〉 연안관리법상 연안의 정의	117
〈표 4-14〉 공유수면의 특성	119
〈표 5-1〉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법률 개선사항	12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7
〈그림 2-1〉 해운대구 송정 및 해운대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 지정 현황	24
〈그림 2-2〉 해운대 해수욕장 시설 현황	25
〈그림 2-3〉 해운대 해수욕장 경사도 현황	33
〈그림 2-4〉 해운대 해수욕장 재질 현황	34
〈그림 3-1〉 다차원적 포용도시 개념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clusive Cities: interventions aimed at inclusion in each dimension)	43
〈그림 3-2〉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44
〈그림 3-3〉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48
〈그림 3-4〉 장소의 기능별 접근가능성 표시	68
〈그림 3-5〉 캘리포니아 해변별 접근가능성 표시	69
〈그림 3-6〉 Disney World Resort의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서	70
〈그림 3-7〉 일본 전철 및 전철역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사례	72
〈그림 3-8〉 수상관광 프로그램 참가 지체장애인(H.I.S.사)	72
〈그림 3-9〉 지체장애인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 안내서(JTB사)	73
〈그림 3-10〉 오아라이 썬 비치의 대여용 수륙양용 휠체어	74
〈그림 3-11〉 입수 체험활동 휠체어이용자	74
〈그림 4-1〉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 방안 도출 과정	76
〈그림 4-2〉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방향 도출 흐름도	80
〈그림 4-3〉 산림복지시설 평가기준	89
〈그림 4-4〉 해수욕장 공간의 물리적 특성	96
〈그림 4-5〉 해수욕장 포용성 평가기준	99
〈그림 4-6〉 부산 주요 해수욕장 Access 보드 현황	107
〈그림 4-7〉 해수욕장 입수 레일 경사로(Seatrack)	108

〈그림 4-8〉 휠체어 입수 해수욕장 경사로(그리스, Sirenis 리조트)	108
〈그림 4-9〉 가변식 접근로 설치 사례(Access Rec사)	109
〈그림 4-10〉 고정식 접근로 설치 사례(Kite Beach, Dubai)	109
〈그림 4-11〉 휠체어 접근 가능 보트 1	110
〈그림 4-12〉 휠체어 접근 가능 보트 2	111
〈그림 4-13〉 비치 휠체어(Access Rec사) 사례	112
〈그림 4-14〉 해수욕장 특성을 고려한 공간 세분 예시	113
〈그림 4-15〉 포용도시의 차원과 구성요소	114
〈그림 4-16〉 연안공간의 범위와 구분	117

요약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해수욕장은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찾는 관광지다. 한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1억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있다. 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시원한 계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바다가 주는 휴식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해수욕장에서 쉽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

2018년말 기준, 우리나라 사회약자(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와 동일)는 전체 인구의 약 29%(1,509만명)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약자는 각종 조사를 통해 공원, 바다 등 야외활동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약자에게 해수욕장은 불편한 장소다. 과거에 비해 장애인 화장실, 샤워장, 접근로 등을 설치한 해수욕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

이용객 상위 10대 해수욕장이 다수 분포하는 부산시 해수욕장에는 장애인 화장실, 모래사장 접근로, 장애인 유영구역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설치된 시설이 해수욕장마다 제각각이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모래사장 위에 설치된 접근로는 해수욕장마다 소재, 모양, 크기, 설치방식 등이 다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유영구역이 있어도 접근로가 없거나 근처에 탈의실, 샤워장 같은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산시 해수욕장에 설치된 것 같은 편의시설 마저 없는 해수욕장이 전국에는 많다는 것이다.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등 사회약자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사회약자에 관한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 법, 기준에서 해수욕장이 제외되어 있거나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수욕장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수욕장과 같은 바닷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수욕장법, 연안관리법 등 해수욕장 조성·관리 관련 법률에서는 사회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 거의 없다. 특히 해수욕장법의 해수욕장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사회약자 관련 사항이 없고 매년 시행하는 해수욕장 평가에 사회약자 관련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사회약자에 대한 포용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 속에서 해수욕장이 주는 혜택을 동등하게 받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해수욕장 이동과 활동을 위한 편리한 시설 설치, 각종 보조기구 대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정책을 뒷받침 하는 법률과 기준이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가 해수욕장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실태 평가, 해수욕장 이용 관련 법률의 개선과 가이드라인 제정, 사회약자 관련 편의시설 확충, 인력지원 등 비물리적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평가가 필요하다.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26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실태평가에서는 배후지역의 일반적인 시설물과 다른 특성이 있는 바다와 바닷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와 다른 해수욕장의 다양한 재질(모래, 갯벌, 자갈 등)과 경사, 바람과 파도의 영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실태평가를 해수욕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해수욕장평가와 연계한다면 해수욕장의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태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약자 관련 법률에서는 해수욕장과 같은 연안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해수욕장법 등 해수욕장 조성 관련 법률에서는 사회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해수욕장 조성, 시설 설치,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인력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의 시민단체, 대학교 등 민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사회약자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

■ 전체 인구의 29%가 사회약자, 시설불편 등으로 야외활동 참여는 낮은 편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사회약자(교통약자)는 2018년 기준, 1,50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8.9%에 달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됨

※ 고령인구는 2010년 10.8%에서 2019년 14.9%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문체부 등에서 실시한 사회약자 관련 조사 결과,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는 공원, 등산로, 바다 등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각종 야외활동 참여도는 낮은 편임.

※ 장애인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근처 야외 등산로, 공원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시설 내부보다 야외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8)

※ 장애인은 여행경험이 없는 경우가 27.4%, 혼자 여행 경험 없는 경우가 72.6%에 달함. 또한 관광지별 여행 경험에서 바다여행은 55.9%로 다소 높으나 섬 여행은 37.1% 낮은 편임 (한국소비자원, 2015)

■ 해수욕장에 사회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이용에는 여전히 불편

- 부산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7개 해수욕장 중 5개 해수욕장이 바다까지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로의 소재, 규격, 설치방식 등은 제각각임.
- 또한 접근로가 있더라도 장애인 안내 표지판이 없거나, 휠체어의 이동이 어렵게 되어 있는 등 여전히 해수욕장에 접근하는데 불편한 요인들이 많음
- 장애인 화장실, 샤워실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미흡한 곳이 많음. 장애인 화장실 성별구분 점자표시 미설치, 화장실

- 내부에서 휴지걸이와 비상 호출 벨 사용 불가능 등 불편
- 일부 해수욕장(광안리, 송도 등)에 장애인 유영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안내표시가 없고 장애인 유영구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음. 또한 장애인 유영구역에 근처에 장애인용 탈의실, 샤워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해수욕장 이용·접근을 지원하는 인력이 부재하고 배치되어 있는 안전요원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 다만 일부 지자체(사하구 등)는 장애인 물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1. 부산 주요 해수욕장 접근시설 현황

해수 욕장	접근시설 설치 모습	
해 운 대		
	Access 보드 접근로	목재 Access 보드
송 도		
	Access 보드와 탈의실	Access 보드와 탈의실

해수욕장	접근시설 설치 모습	
광안리		
	Access 보드	보행약자 쉼터 및 안내표지판

자료 : 부산시 서구청(송도), 저자 촬영(해운대, 광안리)

국내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 관련 제도적 여건은 열악

- 해수욕장 관련법은 사회약자 포용성 미흡, 사회약자 관련법에서는 해수욕장 고려 미흡
 - 장애인등편의법 등에 근거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예를 들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포함되지 않음. 이는 해수욕장 등 바닷가가 실제로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 등 공원 관련 법률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연안관리법, 해수욕장법 등 해수욕장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약자를 배려한 규정이 거의 없음. 예를 들면 해수욕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해수욕장평가에서 사회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 관련 항목이 없고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만 구분할 뿐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장애인 유영구역과 같은 사회약자를 위한 구역의 지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또한 해수욕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연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안정비사업에서 사회약자를 위한 시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표 2.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 관련 주요 법률 현황

구분		주요 이용·관리수단
해수욕장 조성과 관리	연안관리법	• 연안정비사업
	해수욕장법	• 해수욕장 구역 세분 • 해수욕장 시설 설치·관리 • 해수욕장 평가와 지원
	관광진흥법	• 관광지 지정 • 관광지 개발
사회약자 편의증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편의시설 설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이동편의시설 설치 •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자료 : 저자 작성

외국은 사회약자 법제 정비, 이용 편의시설 충분히 설치

■ 미국, 영국, 일본, 사회약자 포용 법률 정비 및 다양한 편의시설 개발·보급

- 미국은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근거하여 분야별로 장애인을 배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연안지역 관리를 담당하는 해양대기청(NOAA)도 소위 ‘장애인법 준수(ADA-compliant)’로 불리는 정책에 따라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ADA의 기

준(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에 근거하여 표지판 (Adding “Coastal” Sign Language), 보행로 접근성 증진사업, 바다 접근성 증진 사업,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 추진

-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국가에서는 해수욕장 등 연안에서 누릴 수 있는 휴식과 레저의 기회를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연안보전청(California Coastal Conservancy)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요 해변별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치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민간 여행사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전용 관광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는데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약자에게 편한 숙박시설, 안내책자 등도 개발하고 있음

표 3. 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 주 휠체어 사용자 가이드라인 내용	바다 접근로 설치 사례(캐나다 Wasaga Beach)
자료 : http://www.wheelingcalsoast.org/	자료 : https://www.cbc.ca/news/canada/manitoba/mayor-of-gimli-rolls-out-plan-to-make-beach-more-accessible-1.3052463

사회약자를 배려한 해수욕장 조성 필요

■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를 배려하여 공간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사회약자가 관광 등 야외활동의 장소로 해수욕장을 선호하나 일반 시민처럼 접근하고 활동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음
- 해수욕장과 바다가 사람에게 주는 휴식, 관광 등을 통한 건강증진의 혜택을 사회약자도 큰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4. 해수욕장 이용실태 문제점과 시사점

해수욕장 이용실태	시사점
• 해수욕장 포용성 진단 및 평가에 대한 논의 미흡 •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에서 포용성에 대한 인식 낮음	•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의 포용성 개념을 명확히 정하고 포용성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요소 확인 후 평가(진단) 필요 • 해수욕장의 특성을 고려한 포용성 진단 및 평가 필요 • 해수욕장 관리·운영 평가체계 내 포용성 측면의 평가 항목이 필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
• 과거에 비해 해수욕장 접근로 등 편의시설 여건이 개선 • 여전히 포용성 측면의 시설 가이드라인 부재하여 시설의 소재, 규격, 설치 방식 제각각 • 접근로와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 바닷가의 접근 보장과 수영 활동 및 편의 시설 이용 보장 • 해수욕장 포용성 진단 시 접근성, 정보성, 지원 프로그램 고려 • 접근로와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해수욕장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미비 • 해양활동 지원 인력 및 프로그램 부재	• 해수욕장 이용 콘텐츠 다양화 • 사회약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해수욕장 이용에 대한 장애인 수요 맞춤형 정보서비스 • 안전요원의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교육 필요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화와 관련 예산확보, 이동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필요

해수욕장 이용실태	시사점
백사장, 바다의 지형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 해수욕장의 다양한 재질(모래, 자갈, 갯벌 등)의 특성 고려 - 자연해안의 지형적 특성과 해수욕장 수면 특성 파악

자료 : 저자 작성

해수욕장에 대한 사회약자 이용실태 평가 우선적으로 추진

- 유사 포용성 평가지표, 해수욕장 특성 등 고려, 해수욕장에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 마련
 - 평가기준은 편리성, 안전성, 정보성, 다양성이며, 타 분야와 달리 공유수면인 바다와 바닷가를 별도로 구분하였음.
 - 배후지역인 토지나 일반적인 시설물과 다른 특성이 있는 바다와 바닷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되 해수욕장의 다양한 재질(모래, 갯벌, 자갈 등)과 경사, 바람과 파도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

표 5. 사회약자 해수욕장 이용실태 평가를 위한 바다·바닷가 평가항목(안)

공간 유형	세부공간	평가항목	평가기준	요구사항
바다 (해양 공간)	물놀이구역	안내시설	정보성	식별이 잘 되고 내용을 알아보기 쉬운가?
		안내시설	정보성	필요에 따라 깃발, 부표(유영가능구역부표, 안전부표) 등으로 물놀이 구역을 나타내고 있는가?
		위치/진입	안전성	물놀이구역과 레저장비 활용 공간이 분리되어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가?
		위치/진입	안전성	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안전한가?
		위치/진입	접근성	물놀이구역 이용을 위한 위치 및 진입에 있어서 편리한가?

공간 유형	세부공간	평가항목	평가기준	요구사항
바다 (해양 공간)	물놀이구역	위치/진입	다양성	장애인, 유아, 노인 등이 이용가능한 유영구역 등 선택의 다양성이 있는가?
		활동	지원성	다양한 이용자의 해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활동	지원성	다양한 이용자 특성별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있는가?
바닷가 (백사장 등)	진입로 (배후공간 ⇒ 백사장)	안내시설	정보성	식별이 잘 되고 내용을 알아보기 쉬운가?
		폭	편리성	차량 및 보도로 이동하기 불편함이 없는가?
	사인시설	정보안내	정보성	이용자에게 공간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공간안내	정보성	안내 표시가 식별이 잘되고 보기 편한 위치에 있는가?
	종합안내 시설	진출입	편리성	종합안내시설은 접근이 편리한가?
		안내시설	정보성	종합안내시설은 흥미있고 재미있는 설명을 제공하는가?
	산책로	안내시설	식별성	이동 동선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며 식별이 잘되는가?
		구간	다양성	자연형 산책로, 장애인, 유아, 노인 등이 이용 가능한 산책로 등 선택의 다양성이 있는가?
		폭	편리성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폭인가?
		경사	편리성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기울기인가?
	접근로 (백사장⇒ 물놀이구역)	안내시설	정보성	동선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며 식별이 잘되는가?
		폭	편리성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폭인가?
		진입구간	편리성	장애요소가 없어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한가?
		경사	안전성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기울기인가?
		바닥재	안전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바닥재인가?

해수욕장 평가를 기반으로 법제도의 개선 필요

■ 해수욕장 관련 법률, 사회약자 관련 법률 성격에 맞춰 제도 개선 추진

- 사회약자 관련 법률 :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편의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에 해수욕장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

한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는 보조기기 종류에 해수욕장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기(해변용 휠체어 등)를 포함

- 해수욕장 관련 법률 : 연안관리법에서는 연안정비사업에 사회약자의 포용성을 증진하는 사업을 포함. 해수욕장법에서 해수욕장 이용실태평가에 관한 규정 포함. 전국 해수욕장 대상 사회약자 편의시설 사업 추진하는 근거 마련, 또한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의 접근·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

표 6. 해수욕장 포용성 증진을 위한 법률 개선사항

구분	개선방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편의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에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 포함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중 공원의 하나로 바닷가 혹은 해수욕장 포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보조기기 종류에 해수욕장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포함 • 레크레이션용 보조기기의 하나로 포함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해수욕장 지원 인력 보유와 파견
연안관리법	• 연안관리에서 기본원칙의 하나로 포용성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연안공간의 포용성 평가를 위한 근거 마련 • 포용성을 고려한 연안정비사업 추진 • 연안정비사업 선정기준에 포용성 증진 관련 항목 포함 • 해수욕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수욕장에 대한 포용성 증진 사업 추진
해수욕장법	•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을 위한 물놀이구역 지정 기준 마련 • 전국 해수욕장 대상 사회약자의 포용성 증진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해수욕장 평가체계에 포용성 관련 항목 포함 • 포용성 측면에서 우수한 해수욕장에 대한 재정 지원 •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의 접근·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지원 근거 마련 • 사회약자를 위한 해수욕장 조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관광진흥법	• 연안공간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관광지에 대한 개발에서 포용성 증진 고려

■ 가칭 ‘사회약자를 위한 해수욕장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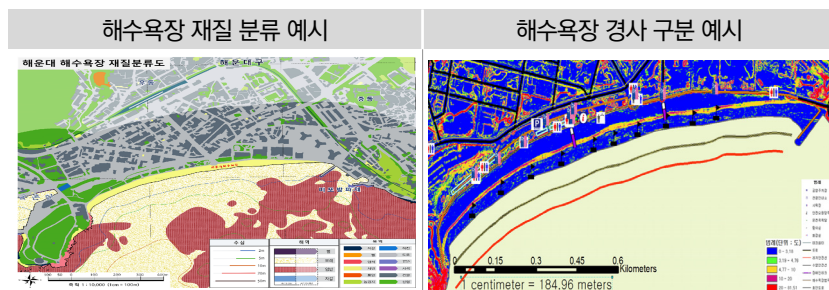
- 해수욕장에 설치되는 사회약자 편의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약자 친화적인 해수욕장을 종합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가이드라인에서는 해수욕장 조성, 시설 설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을 필요가 있음

바다와 접한 해수욕장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 증진사업 추진

■ 사회약자 이용을 위한 해수욕장 지형, 해양물리 조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방문할 해수욕장과 활동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수욕장의 지형적, 해양물리적 특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예를 들면 백사장(길이, 폭, 구역), 물놀이 구역 위치 정보(해안선, 수심 등), 해수욕장 재질, 경사도 정보를 분석·제공할 필요가 있음. 해수욕장에 대한 정보는 상당 부분 위성영상, 초분광영상 등 각종 영상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음

그림 1. 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사례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인력 지원 등과 같은 비물리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각종 편의시설과 같은 물리적 시설의 설치가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수영, 모래 걷기 등 좀 더 활동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수욕장 지원인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지원인력은 시민단체, 대학교 등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사회는 많은 분야에서 배제된 사회약자를 끌어안기 위한 노력, 즉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을 ‘혁신적 포용국가’로 설정할 만큼 포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World Economic Forum에서 2017년 발표한 포용발전지수(inclusive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 포용발전지수가 선진 29개국 중 14위를 차지하였고 최근 5년간 개선율에 해당하는 포용성장 수준은 8위로 평가되었다¹⁾.

국가 전체적으로는 포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포용발전 수준이 낮지 않으나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가 느끼는 포용성의 수준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²⁾

1) 김원규 외(2018), pp. 17~18.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

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등록)은 2006년 1,967,326명에서 2016년 2,511,051명으로 증가³⁾하였고 고령인구는 2010년 10.8%에서 2019년 14.9%로 증가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하는 사회약자는 공공서비스, 공공 공간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5년간 바다와 계곡을 가지 못한 경우가 47.3%, 비용 때문에 여행을 포기한 경우가 80.6%로 나타났다⁵⁾. 또한 장기요양 환자에게 가장 절실한 서비스로 ‘이동지원’이 41.3%로 높게 나타났다⁶⁾.

국가비전에서 포용을 강조하고 사회약자를 배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에서 포용성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등 국토·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내륙에서는 포용성에 대한 조사와 평가, 관련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연안공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은 정신적·신체적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사회약자가 접근하고 체험하는 데 불편과 제약이 크다. 예를 들면, 2017년 해수욕장 이용객 상위 10대 해수욕장 중 5개가 밀집⁷⁾한 부산시의 해수욕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장애인이 해수욕장에 접근하고 즐기기가 매우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⁸⁾. 많은 일반인이 쉽게

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함.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7), p. 4.

4) 통계청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2.)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검색일: 2019. 3. 14.)

6) 중앙일보(검색일: 2019. 3. 7.)

7) 한국소비자원(2018), p. 7.

찾는 해수욕장이지만 사회약자에게는 접근하여 편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각 분야에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해수욕장을 비롯한 연안공간에서도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안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여 즐기고 재충전하는 해수욕장은 어느 공간보다 먼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가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가 느끼는 불편과 제약을 검토하여 해수욕장의 공간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연안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사회 약자의 해수욕장 접근과 이용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에 대한 사회약자의 접근과 이용 실태를 시범 진단하고 전국 해수욕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 등 평가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과 관련 사업을 제시하였다.

8) 국제신문(검색일: 2019. 3. 7.)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이 연구는 연안관리법상 연안 중에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고 연안·해양 분야 법률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 중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여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해수욕장법에 따라 26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다만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분석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부산광역시에 분포하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1〉 우리나라 해수욕장 지정 현황

시도	지정해수욕장
부산광역시(7)	송도, 해운대, 송정, 다대포, 광안리, 임랑, 일광
인천광역시(7)	왕산, 하나개, 을왕, 십리포, 장경리, 사포리, 웅암
울산광역시(2)	일산, 진하
강원도(93)	사천진, 정동진, 염전, 안인, 등명, 주문진, 도직, 영진, 하평, 사근진, 송정, 경포, 순긋, 안목, 사천, 강문, 남향진, 옥계, 연곡, 금진, 망상, 리조트, 대진, 노봉, 어달, 추암, 외옹치, 속초, 등대, 장호, 용화, 부남, 궁촌, 상맹방, 삼척, 한재밀, 덕산, 하맹방, 오분, 문암, 작은후진, 증산, 맹방, 임원, 원평, 명파, 송지호오토캠핑장, 가진, 대진5리, 천진, 송지호, 켄싱턴리조트, 삼포, 봉포, 초도, 자작도, 공현진2리, 공현진1리, 청간, 거진1리, 아야진, 삼포2리, 반암, 거진11리, 백도, 봉수대, 화진포, 마차진, 교암, 대진1리, 청간리, 문암2리, 잔교, 38(기사문), 동산포, 남애3, 물치, 지경, 죽도, 동산, 갯마을, 원포, 중광정, 오산, 낙산, 동호, 광진, 남애1, 인구, 북분리, 설악, 정암, 하조대

시도	지정해수욕장
충청남도(33)	대천, 무창포, 난지섬, 왜목마을, 춘장대, 장삼포, 꽃지, 바람아래, 방주골, 백사장, 만리포, 갈음이, 구름포, 어은돌, 학암포, 달산포, 곰섬, 청포대, 천리포, 구례포, 꾸지나물골, 연포, 방포, 신두리, 파도리, 빗개, 기지포, 안면, 마검포, 의항, 몽산포, 셋별, 삼봉
전라북도(8)	선유도, 구시포, 동호, 모항, 위도, 고사포, 변산, 격포
전라남도(55)	외달도, 무슬목, 안도, 거문도, 모사금, 웅천, 만성리, 장등, 방죽포, 대전, 금장, 나로우주, 덕흥, 익금, 발포, 염포, 풍류, 남열해돋이, 연소, 용동, 울포솔밭, 수문, 송호, 송평, 사구미, 톱머리, 홀통, 돌머리, 가마미, 송이도, 신지동고, 보길중리, 신지명사십리, 약산가사, 보길예송, 보길통리, 생일금곡, 청산신흥, 청산지리, 금일명사십리, 가계, 금갑, 신전, 관매도, 우전, 황성금리, 백길, 돈목, 하트, 추포, 원평, 시목, 분계, 대광, 짱뚱어
경상북도(25)	도구, 구룡포, 칠포, 화진, 영일대, 월포, 나정고운모래, 오류고아라, 관성솔밭, 전촌솔밭, 봉길대왕암, 경정, 대진, 남호, 오보, 하저, 장사, 고래불, 후포, 나곡, 후정, 봉평, 구산, 기성망양, 망양정
경상남도(26)	광암, 비진도 산호 빛 해변, 통영공설, 사랑 대항, 남일대, 여차, 덕원, 함목, 덕포, 와현모래숲해변, 농소, 망치, 학동흑진주몽돌해변, 명사, 구조라, 구영, 물안, 옥계, 황포, 흥남, 사곡, 설리, 두곡 월포, 송정 솔바람해변, 사촌, 상주 은모래비치
제주도(11)	협재, 김녕, 괭지, 이호, 삼양, 함덕, 금능, 신양, 화순, 중문색달, 표선

자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9.)

2)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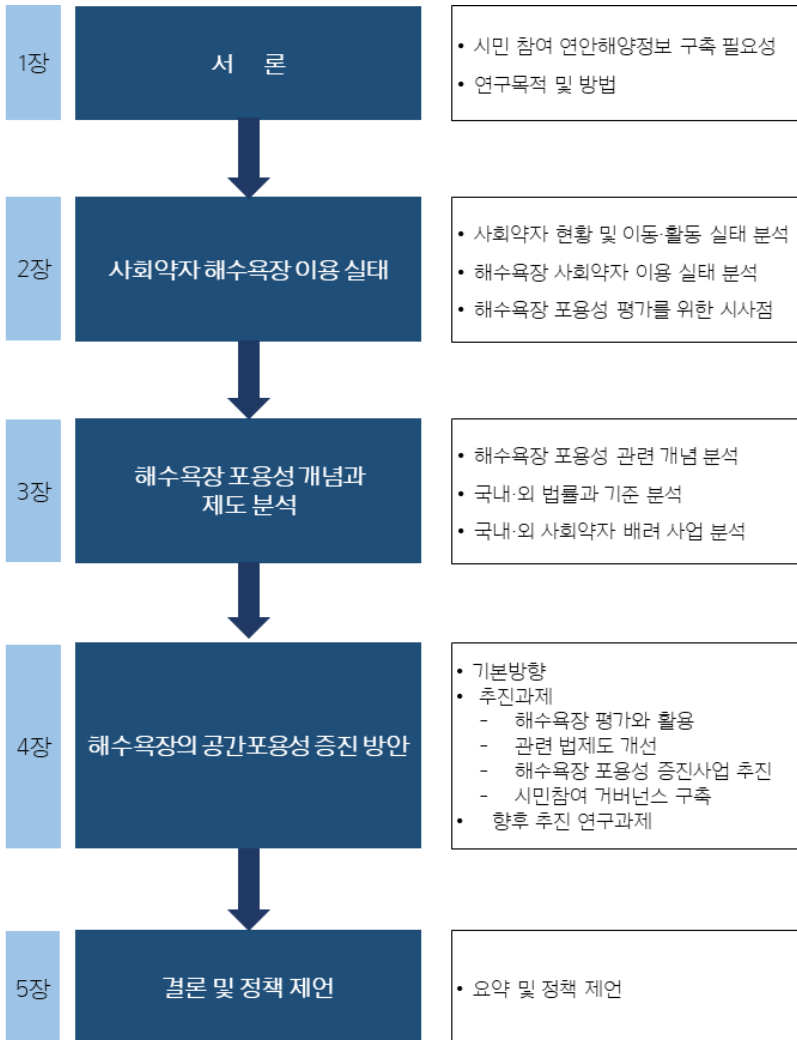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전체 사회약자의 현황과 주요 이동·활동 실태와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의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외 해수욕장 조성과 관리 관련 제도를 사회약자의 이용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수욕장의 사회약자를 배려한 공간적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약자의 전반적인 현황과 이동·활동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래에는 우리나라 사회약자 비율이 높아져 포용성 관련 정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해수욕장에 대한 사회약자 이용실태는 부산시에 있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현장 조사, 기존 문헌(보고서, 신문기사 등) 분석, 전문가 인터뷰, 위성영상을 활용한 GIS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에 비해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를 배려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이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해수욕장 포용성에 관한 국내외 유사 개념을 살펴보았다. UN-Habitat가 제안하고 세계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는 ‘포용도시’ 개념과 포용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인 ‘공간적 포용(Spatial Inclusion)’이 이 연구에서 직접 참고할 만하였다. 국내 포용성 관련 제도는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약자 관련 법률, 「연안관리법」, 「해수욕장법」 등과 같은 해수욕장 조성 및 관리 관련 법률 등을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사회약자 관련 법률, 해수욕장 등 바다에서 사회약자가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설치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수행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수욕장의 공간 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추진과제로는 해수욕장 평가와 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해수욕장 포용성 증진사업,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수욕장을 포함한 전체 연안공간의 포용성 개념 정립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주요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 시범 지역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문헌은 포용성 관련 국내외 보고서, 관련 논문 등을 분석하였다. 시범지역 사례조사는 연안 공간 중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조사에서는 현장조사, GIS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포용도시 관련 전문가,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 건축·디자인 전문가, 연안·해양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기존 연구는 포용이라는 담론을 국토 또는 도시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거나 도시 전체 차원의 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미리(2016)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포용도시의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진단하였다. 김수진(2018)은 포용도시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고 도시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태분석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정호 외(2016)는 국토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포용적 국토의 개념을 제시하고 포용적 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문정호 외(2016)가 제시한 추진과제 중 시민참여 관련 내용은 연안공간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으로도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포용도시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도시, 국토 등을 대상으로 포용성 평가와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해수욕장과

같은 연안공간을 대상으로 포용성을 진단하거나 정책제언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표 1-2〉 선행연구와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연구자(연도): 변미리(2016) -연구목적: 서울시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평가	-문헌조사 -전문가 브레인 스토밍과 심층 면접	-포용도시 이론 검토 -포용도시론 비교 분석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구축 -서울시 포용도시 수준 진단
	2 -과제명: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연구자(연도): 김수진 (2018) -연구목적: 포용도시 관점에서 도시취약지역 실태파악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 제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사례연구	-포용도시 담론 분석 -도시 내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도시취약지역 실태 분석 -도시취약지역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3 -과제명: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연구자(연도): 문정호 외 (2016) -연구목적: '포용적 국토' 규범을 정립하고, 대안적 정책방향과 핵심적 정책과제 제시	-문헌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분석, AHP 등 계량분석	-포용에 관한 논의 동향 -우리나라 공간정책의 포용성 -포용적 국토 정책개념과 핵심 정책 과제
본 연구	-기존의 연구는 포용이라는 담론을 국토 또는 도시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거나 도시 전체 차원의 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존 연구에서 해수욕장 등 연안을 대상으로 포용성을 진단하거나 정책제언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음	-국가비전으로 포용이 채택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륙과 다른 특성을 지닌 해수욕장에 대한 포용성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제 2 장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실태 분석

제1절 사회약자 현황 및 이동·활동 실태

1. 약자의 정의 및 현황

1) 약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약자(弱者)’란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그런 집단을 말하며, ‘약자’에 ‘사회적’이라는 관형사를 붙여 사회적 약자로 불린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⁹⁾ 이처럼 사회적 약자는 구성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사회 내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 표현이다.¹⁰⁾

9) 박경태(2008), p. 13.

10) 네이버닷컴(검색일: 2019. 6. 15.)

사회적 약자의 조건¹¹⁾은 첫째,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흑인, 동성커플 데이트 등 신체적이든 문화적이든 외형적으로 구별되는 속성을 지닌다. 둘째, 사회적 영향력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능력 차이가 난다. 셋째,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수자 집단 간에 연대의식이나 집단의식이 필요하다. 단순히 개인적 특징으로 인해 차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이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며,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표 2-1〉 사회적 약자의 종류

종류	인권침해 유형	예
신체·정신적 약자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침해에 노출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기형인, 에이즈/한센병환자 등
권력적 약자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 경험	여성, 특정지역 거주민, 외국인 노동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동성애자 등
경제적 약자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	비정규직, 도시 빈민, 외국인 노동자 등
문화적 약자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	혼혈인, 동성애자, 외국인 배우자, 미혼모 등

자료: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13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pp. 114~115.

사회적 약자의 종류는 신체적 결함을 인해 차별받는 신체·정신적 약자, 권력적 지위가 낮아 차별적 대우를 받는 권력적 약자, 경제적

11) Dworkin and Dworkin(1999), pp.17~24; 윤인진(2000), pp. 24~36 재인용

으로 어려워 차별받는 경제적 약자,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는 문화적 약자로 구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약자는 기준에 따라 유형과 범위가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이동능력을 기준으로 약자를 정의하므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약자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종류 중 첫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표 2-2〉 우리나라 사회약자 대상

유형	근거법	대상
교통약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주거약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자료: 저자작성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의 기준으로 하며, 「노인 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으로 정의하고,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자로 정의한다. 또한 보건·의료 통계에서 임산부란 ‘임신 중 또는 임신 종료 후 만 42일 미만의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된 출생 자료를 당해 연도의 임신부로 가정한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9세 이하의 아동을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계청의 인구 통계 계급이 5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이 중 0~5세 인구를 영유아, 6~12세 인구를 어린이 교통약자로 정의할 수 있다.

2) 약자의 현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3〉 교통약자 현황(2017년)

구분	총인구 (천 명)	교통약자(천 명)						
		소계	비율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전국	51,779	14,963	28.9	1,383	7,356	406	2,569	3,249

주: 1) 장애인 인구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 장애인 인구는 2016년도 기준

2) 고령자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65세 이상의 인구현황

※ 고령자 정의: 만65세 이상의 노인, 「노인복지법」 제1조2 5항)

3) 임산부 인구 - 행정안전부 「인구동향조사」출생인구현황으로 대체

4) 영유아동반자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0-5세 인구현황

※ 영유아 정의: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영유아보육법」 제2조 1항

5) 어린이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6-12세 인구현황

※ 어린이 정의: 만13세 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 23항)

자료: 국토교통부,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8, p. 8. 표의 일부를 인용함.

총 인구 대비 교통약자 현황을 살펴보면, ‘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4명 중 1명 이상으로 전체인구의 약 28.9%

인 1,496만 명 수준이며, '16년에 비해 약 25만 명 증가했다. 교통약자의 유형별로 고령자 14.2%, 어린이 6.3%, 영유아 동반자 5.0%, 장애인 2.7%, 임산부 0.8% 순으로 고령자가 교통약자 중 과반수(49.2%)를 차지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는 장래의 교통약자 현황에 대해 예측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향후 5년 후(2022년)까지의 교통약자 추계인구는 총 인구가 연평균 0.3% 증가하고, 교통약자는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통약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령자는 5년간 약 200만 명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장래 교통약자 유형별 추계 인구

구분	총인구 (천 명)	교통약자(천 명)						
		소계	비율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2018	51,635	14,640	28	1,373	7,381	411	2,576	3,194
2019	51,811	14,883	28.6	1,368	7,694	410	2,520	3,222
2020	51,974	15,143	29.1	1,364	8,134	409	2,491	3,203
2021	52,124	15,510	29.9	1,360	8,544	410	2,456	3,160
2022	52,261	15,819	30.6	1,356	8,978	411	2,439	3,133
2023	52,388	16,186	31.5	1,351	9,449	413	2,437	3,098
증감율	0.3%	2.0%	2.4%	-0.3%	5.1%	0.1%	-1.1%	-0.6%

주 1)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 코호트요인법¹²⁾ 활용

2) 장애인 - 등비급수법¹³⁾

자료: 국토교통부,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8, p. 10.

12) 인구변동요인별(출생·사망·국제이동) 미래 수준을 각각 예측한 후,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을 적용하여 다음 해 인구를 반복적으로 산출해 나가는 인구추계 방법

13) 지수모형 중의 하나로 인구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또는 감소)하는 지역에 적용이 가능

2. 약자의 이동·활동 실태 분석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교통약자의 외출 빈도는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동일 시·도) 외출을 하는 비율은 일반인 32.5%, 장애인 32.0%, 고령자 13.9%, 임산부 3.9% 순으로 일반인과 장애인의 지역 내 외출 빈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지역 간 외출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인 36.0%, 고령자 23.6%, 임산부 14.5%, 장애인 13.1%로 나타나 지역 내 외출과 지역 간 외출 빈도 차이는 장애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지역 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일반인(54.3%)과 임산부(58.9%)는 버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고령자는 지하철(46.4%)의 빈도가 높았고, 장애인은 버스(24.6%)와 지하철(22.4%)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비율은 모든 이용자에게서 승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인(13.8%)과 고령자(32.8%)는 고속(시외)버스, 장애인은 기차(22.7%) 순으로 나타났다.¹⁵⁾

특별교통수단¹⁶⁾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연간 이용실적은 6,097,673건, 월평균 이용실적은 508,139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 특별교통수단의 월평균 대당 이용건수는 173.3건으로 나타났다.¹⁷⁾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14) 국토교통부(2018), pp. 129~136.

15) 위의 책, pp. 137~142.

16)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17) 국토교통부, 앞의 책, p. 89; 각 지자체 내부자료 재인용

콜센터 예약방식으로 운영하며, 인터넷 예약, 모바일 예약, 홈페이지 예약 등을 복수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 모든 광역·기초지자체는 이동지원센터를 타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크게 공기업(공단, 공사), 운수사업자(택시, 시내버스 등), 단체(장애인협회, 이동지원센터 등)로 구분된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운영 중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일반 택시와 비교하여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이용대상, 요금, 운행 범위 등이 상이하여, 지역 간 이동의 제약 및 서비스 차별 등이 발생하고, 광역 운영체계 등도 갖춰져 있지 않아, 법정보급대수를 초과하였음에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배차시간 지연 등 정시성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위해 주로 관광활동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의 경우 버스(저상버스 포함)가 29.6%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28.7%), 기차(25.1%) 순으로 나타났다.¹⁸⁾ 반면 장애인콜택시(8.4%), 비행기(6.4%), 선박(1.3%)은 낮게 나타났다. 국민여행실태조사결과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주로 자가용(72.9%)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지자체별로 운영되면서 이용구간이 제한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저상버스 보급 확대, 대중교통 관련 인프라의 무장애 환경 조성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8)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pp. 26~27.

2) 장애인 이동·활동 관련 설문

(1)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실태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2018)¹⁹⁾에서는 전국의 10~69세 등록 장애인 1,641,743명(2017년 말 기준)을 조사모집단으로 설정하고, 만 10세에서 69세까지의 조사모집단에 대한 지역별 장애유형별 분포에 따라 총 5,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조사를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장애인의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은 집안, 근처 야외등산로나 공원, 복지관, 장애인시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민간스포츠시설, 학교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로 구분하였고, 성별, 연령, 권역, 장애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의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주 평균 이용 횟수를 살펴보면, 집안이 4.4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 스포츠 시설(3.21회), 근처 야외등산로나 공원(3.17회)이 평균 3회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체육시설별 이용횟수에 큰 차이는 없으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이용횟수가 평균 2.44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체육시설 중 다른 시설과는 달리 근처 야외등산로나 공원은 10대에서 60대로 갈수록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향후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을 원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근처 야외등산로나 공원시설이 다른 시설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권역,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등산로 혹은 공원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 문화체육관광부(2018), p. 8.

〈표 2-5〉 (체육시설 이용자) 주변 체육시설 접근성

단위: 회

구분	집안	근처 야외 등산로, 공원	복지관, 장애인 시설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	민간 스포츠 시설	학교 체육 시설	공공 체육 시설	기타
전체	4.45	3.17	2.91	2.44	3.21	2.61	2.68	3.24
성별	남성	4.45	3.17	2.97	2.43	3.13	2.45	3.61
	여성	4.44	3.18	2.85	2.45	3.30	2.85	2.74
연령	10대	4.10	1.66	2.43	2.29	2.78	2.86	2.65
	20대	4.05	2.36	2.84	1.68	2.74	2.17	1.99
	30대	4.01	2.75	3.61	2.03	3.04	1.93	1.50
	40대	4.05	3.13	3.42	1.56	2.98	2.53	2.24
	50대	4.48	3.00	2.50	2.60	3.11	2.37	3.06
	60대	4.61	3.44	2.77	2.89	3.59	2.88	2.89
	70대	4.61	3.44	2.77	2.89	3.59	2.88	2.89
권역	서울	4.19	2.99	3.11	1.31	3.14	2.98	2.28
	인천/경기	4.44	3.00	2.82	2.28	3.05	2.05	2.82
	대전/충청	4.33	3.30	3.00	3.13	2.84	2.95	2.73
	광주/전라	4.26	3.22	2.65	2.16	3.04	2.44	2.91
	대구/경북	5.03	3.15	2.62	1.00	4.11	1.86	2.90
	부울경	4.61	3.39	3.03	2.60	3.58	3.07	2.63
	강원/제주	4.68	3.53	3.06	2.16	2.97	2.53	2.81
장애 유형	지체	4.45	3.18	2.61	2.69	2.95	2.70	2.71
	시각	4.07	2.97	2.45	2.14	3.26	2.22	2.91
	청각/언어	4.35	3.09	3.09	2.58	3.61	2.47	3.22
	지적/자폐	4.23	2.74	3.23	2.09	3.25	2.47	1.91
	뇌병변	5.07	3.64	3.12	2.94	4.26	3.47	3.08
	기타	4.57	3.54	3.45	1.68	3.70	2.63	2.24
	기타	4.57	3.54	3.45	1.68	3.70	2.63	2.2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8, p. 19.

〈표 2-6〉 향후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을 원하는 체육시설

단위: %

구분		집안	근처 아외 등산로, 공원	복지관, 장애인 시설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	민간 스포츠 시설	학교 체육 시설	공공 체육 시설	기타
전체		17.2	28.9	12.7	10.9	6.3	2.5	7.2	14.3
성별	남성	15.2	29.9	12.6	11.3	6.8	2.6	7.4	14.1
	여성	19.9	27.5	12.7	10.3	5.8	2.4	6.9	14.5
연령	10대	8.0	11.4	17.4	25.6	10.0	10.3	8.0	9.4
	20대	10.9	14.7	17.1	22.9	11.9	2.8	6.2	13.4
	30대	9.0	20.5	15.4	21.6	5.4	3.3	7.9	16.9
	40대	19.4	25.3	12.3	10.7	7.9	2.1	5.9	16.4
	50대	17.8	29.9	11.2	10.9	5.8	1.7	8.4	14.3
	60대	18.6	33.0	12.4	7.4	5.4	2.5	6.9	13.8
권역	서울	13.0	29.3	14.2	12.0	8.1	2.1	7.6	13.6
	인천/경기	16.2	29.3	12.2	12.1	6.2	2.3	9.5	12.3
	대전/충청	18.7	27.9	13.5	9.8	4.6	2.9	6.2	16.4
	광주/전라	23.6	26.8	11.7	8.7	5.3	3.3	5.1	15.6
	대구/경북	22.5	25.2	12.0	7.5	7.4	2.2	6.0	17.2
	부울경	15.0	30.3	12.6	12.2	6.8	2.2	6.3	14.6
	강원/제주	18.8	32.1	11.8	8.3	6.1	3.7	5.5	13.6
장애 유형	지체	17.9	30.6	11.9	9.6	7.5	2.2	7.9	12.5
	시각	16.3	31.3	15.0	10.2	6.5	2.7	7.1	10.9
	청각/언어	14.4	33.0	11.0	8.7	5.6	4.3	8.2	14.9
	지적/자폐	13.6	19.9	16.1	19.0	5.4	2.8	5.4	17.8
	뇌병변	19.6	22.7	13.1	14.9	3.1	2.0	5.5	19.3
	기타	19.3	31.0	11.2	7.1	5.3	2.9	6.6	16.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8, p. 26.

(2) 장애인 여행 경험 실태

한국소비자원(2015)²⁰⁾에서 2015년 3월에 혼자 이동(여행)이 가능한 지체·시각·청각 장애인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3년 이내에 혼자 여행과 장애인 단체 여행을 구분하고, 국내와 국외여행에 대한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최근 3년 이내 여행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내여행은 72.6%, 국외여행은 15.7%로 일반국민의 해외여행 경험 비율(49%)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장애유형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들의 여행경험은 12.5%에 불과하였다. 또한 국내여행과 국외여행 모두 단체 여행 경험이 혼자 여행한 경험의 약 2배 정도로 나타났으며,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보다 이동이 자유로운 청각 장애인의 여행 경험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표 2-7〉 최근 3년 이내 장애인의 여행 경험

단위: %

구분	유형	혼자 여행		장애인 단체 여행		여행 경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국내 여행	지체	21.7	78.3	60.8	39.2	69.2	30.8
	시각	23.6	76.4	58.2	41.8	67.3	22.7
	청각	43.6	56.4	52.7	47.3	80.0	20.0
	계	27.4	72.6	58.3	41.7	72.6	27.4
국외 여행	지체	4.2	95.8	9.2	90.8	12.5	87.5
	시각	5.5	94.5	14.5	85.5	18.2	81.8
	청각	12.7	87.3	12.7	87.3	20.0	80.0
	계	6.5	93.5	11.3	88.7	15.7	84.3

자료: 한국소비자원, 「장애인 여행 실태 및 개선방안」, 2015, p. 21.

20) 한국소비자원(2015), p. 19.

여행 경험 설문조사에서 관광지별 국내여행을 구분하여 설문한 결과, 지체·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지난 3년간 경험한 국내여행 중 도심 여행 경험이 평균 59%로 가장 높았고, 문화유적 여행의 비율이 평균 57.7%, 바다여행 경험이 55.9%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은 국립공원 여행(28.7%), 시각장애인은 섬여행(29.2%), 청각장애인은 계절축제 여행(27.0%)을 가장 낮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가장 편차가 적은 항목은 바다여행 경험으로, 바다여행은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50% 이상의 장애인들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8〉 관광지별 국내여행 경험

단위: %

국내여행 경험 구분	지체	시각	청각	평균
문화유적 여행 경험	59.7	59.4	50.0	57.9
계절축제 여행 경험	49.4	52.1	27.0	45.8
도심여행 경험	54.3	67.7	69.0	59.3
바다여행 경험	56.9	55.2	53.0	55.9
섬여행 경험	39.3	29.2	37.4	37.1
국립공원(산) 여행 경험	28.7	38.5	63.6	36.8

자료: 한국소비자원, 「장애인 여행 실태 및 개선방안」, 2015, p. 23.

(3) 종합

장애인 활동에 관한 자료 분석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은 야외등산로나 공원시설 이용을 가장 많이 원하며, 바다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선호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만약 바다에 접한 해수욕장에 장애인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면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해수욕장 사회약자 이용실태 시범 분석

1. 해수욕장 포용 실태 분석 개요

해수욕장은 공간 특성과 기능에 따라 바닷물이 존재하는 “바다(유영구역)”과 “백사장 및 배후 공간”으로 구분되며, 개별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게 된다. 해수욕장은 대표적 국민휴양공간으로 다양한 처지의 이용객 즉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아야 한다. 특히, 친수 여가활동의 경험은 국민에게 신체적 가치, 지적 가치, 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을 부여한다.²¹⁾

이 연구에서 부산광역시의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기존 조사 보고서, 현장 방문 및 GIS 분석,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해수욕장 포용성 실태를 확인하였다.

〈표 2-9〉 해수욕장 포용성 실태 분석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분석 대상지		부산광역시 해수욕장 :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일광, 임랑
분석 방법	문헌조사	• 2012 부산광역시 7대 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및 백사장 접근로 실태조사보고서 • 2013 부산광역시 7대 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및 백사장 접근로 실태조사보고서 • 2014 부산 7대 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고 및 주변 관광지 안내 • 2018 수변활용형 관광레저 시설의 접근성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연구
	현장 방문 및 GIS 분석	• 해운대 해수욕장 현장 방문 • 해운대 백사장 및 주요 시설 접근성 GIS 분석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 배용호, 19. 5. 13., 해수욕장 접근의 현황 및 과제 • 정수철, 19. 7. 3., 해수욕장 실태조사 결과 자문 및 포용성 진단 체크리스트 검토 • 이호승, 19. 6. 24., 해수욕장 실태조사 결과 자문 및 유니버설디자인 자문

21) (재)부산디자인센터·경성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2010), p.3.

〈표 2-10〉 해운대구 해수욕장 지정 현황

명칭	공간구분	규모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길이 : 1,500m/폭 : 70m~80m
	유영구역	길이 : 1,500m/폭 : 50m
송정해수욕장	백사장	길이 : 1,200m/폭 : 30m~70m
	유영구역	길이 : 1,200m/폭 : 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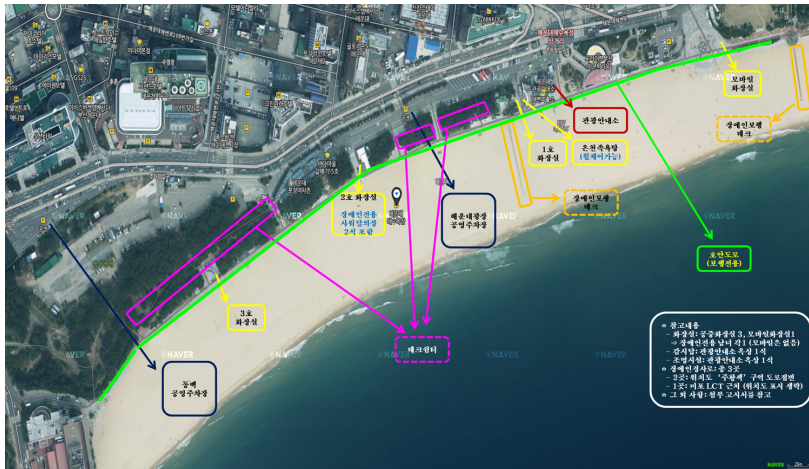
자료: 해운대구(관광시설관리사업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조례 1178호)」, 2015

〈그림 2-1〉 해운대구 송정 및 해운대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 지정 현황



자료: 해운대구, 「2019년 해운대구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 지정 고시」, 2019

〈그림 2-2〉 해운대 해수욕장 시설 현황



자료: 해운대구 내부자료

2. 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및 백사장 접근로 실태조사

1) 부산 7대 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고 및 주변 관광지 안내
보고서²²⁾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의 해수욕장까지의 접근로와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주차장, 탈의시설, 샤워시설, 보도 등), 장애인 유영 구역과 모래사장 내 접근로 설치 실태,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였다. 장애인이 직접 전동 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경사계, 색약모의 필터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장애인의 해수욕장과 관련 편의시설의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22)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2014), pp.1~59. 재정리

이 조사에 따르면 7개 해수욕장 중 5개 해수욕장이 바다까지 Access 보드(이하 접근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장애인 화장실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미흡한 곳이 많았다. 샤워실과 탈의실은 장애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대부분 백사장 위, 승강기가 없는 2층 등 접근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백사장을 지날 수 있어야 하며, 비교적 수심이 얇고 주변에 안전시설이 위치한 유영구역, 샤워실과 탈의실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2-11〉 2014년 부산광역시 해수욕장 실태조사 결과

명칭	Access 보드 설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해운대	ㄱ 자형 중간지점에서 원활한 교차 가능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대의 휠체어 위치 가능 장애인 유영구역 안내표시 부재 주변의 안정·편의시설 위치	장애인 주차 공간 부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의 연속성 Access 보드 설치지역에 에어컨프레서 설치 장애인 전용 샤워실과 탈의실 부재
광안리	I 자형 교차 불편	화장실 규격에 맞지 않음. 해변산책로 점자블록의 연속성 부재 장애인 화장실 및 샤워실 부재
다대포	I 자형 교차 불편 장애인 이동 통행로 안내판 부재	장애인 주차공간 부재 주차장에서 산책로 입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닥면이 울퉁불퉁한 재질 점자 유도 블록 설치
송도	T 자형/ 장애인 무료 탈의장이 있지만 보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 유영구역 경계표시(전용 유영구간 부표 없음.)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장애인 전용 화장실 부재
송정	T 자형	장애인 주차장 표시되어 있으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음. 장애인 화장실 설치(규격에 맞지 않음.) 장애인 탈의실과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명칭	Access 보드 설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일광	미설치	장애인 탈의실 및 샤워실 부재 화장실 자동물 교체 필요 장애인 유영구역 관련 시설물 비치 필요
임랑	미설치	장애인 주차구역 부재

주: 2014년 기준 자료로 현재 운영 실태와 다를 수 있음.

자료: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 7대 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고 및 주변 관광지 안내」, 2014, pp. 1~59.

7대 해수욕장 실태조사를 수행한 사하구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해수욕장의 포용실태에 관한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수욕장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 등은 신설인데도 불구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따로 관리 대책이 없으며, 장애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해수욕장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고 있지만, 접근로가 있더라도 장애인 안내 표지판이 없거나, 휠체어의 이동이 어렵게 되어 있는 등 여전히 해수욕장에 접근하는 데 불편한 요인들이 많다. 다대포와 기장의 해수욕장은 백사장의 폭이 좁긴 하지만 오히려 좁은 폭으로 장애인들에게는 바닷가 접근이 용이한 상황을 제공한다. 장애인들에게 해수욕장의 시설, 접근·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하드웨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이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동반 가족 혹은 안전 요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수욕장 이용과 접근을 지원하는 인력이 부재하고, 안전요원이 있어도 장애인에 대

한 기본적으로 교육이 되어있지 않았다. 사하구의 경우처럼, 장애인 물놀이 지원을 위한 장애인과 청년회 연계 프로그램 등은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수욕장 활용을 위해서는 접근로와 장애인 유영구역 등의 안내표시가 필요하다. 혹자는 해수욕장에서 일부 공간을 장애인을 위한 곳으로 표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애를 특별히 의식한 결과로 자칫 편견과 차별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 해수욕장에서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인식되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요원 혹은 보조요원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장애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수변활용형 관광레저 시설의 접근성 실태파악과 개선방향 연구 보고서²³⁾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장애인 신문 기사²⁴⁾를 토대로 부산지역 해수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부산 해수욕장 중 다대포, 송도, 광안리, 임랑, 일광, 송정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상태를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공중화장실 관련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공중화장실의 외부에 장애인 화장실 성별구분 점자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50%로 나타났고, 내부에는 대변기에 앉았을 때 휴지걸이와 비상 호출벨이 닿지 않는 해수욕장이 많았다.

조사결과 장애인전용주차장은 1대당 평균너비는 약 355cm로 법적

23) 이호승 외(2018), pp. 147~148.

24)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검색일: 2018.7.26.~2018.7.31.)

기준인 폭 350cm를 대체로 만족시키는 상황이나 장애인구역으로부터 건물의 출입구까지의 거리, 주차장표면의 균질하지 못한 바닥 마감, 차도에 인접하여 승하차 시 위험성 존재 등이 존재하였다. 휠체어 이용자가 목적지까지의 최적경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시설안내도와 교통약자를 위한 경로안내도가 부재하다. 접근로·진출입구는 인도와 차도의 경계 및 횡단보도의 점점 등에서 단차가 발견되었다. 가로등, 가로수, 빗물배수구 덮개와 같은 도시 시설물 주변, 불규칙한 노면포장 등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교통약자에게 해양 및 수상레저는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참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 측면에서 접근성 실태는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휠체어이용자에게는 무리 없이 활동하기 위한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교통 측면에서 접근성 실태는 관광여정에 따라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제한적이고, 승하차 시설의 미비, 효율적이지 못한 배차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의시설 측면에서의 휠체어로 이용가능한 편의시설이 한정적이고, 이를 위한 공간이나 위치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 콘텐츠 및 서비스 측면에서는 한정된 콘텐츠로 온전한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차별된 콘텐츠와 서비스로 공평한 기회 및 선택권 제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관련법 및 제도 측면은 앞서 언급한 접근성 실태(이동, 교통, 편의시설, 이용 콘텐츠)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미흡한 현실이다.

〈표 2-12〉 부산지역 장애인 해수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구분	접근성 및 장애인편의시설 상태	다 대 포	송 도	광 안 리	임 랑	일 광	송 정
전용주차장	부적절한 노면포장 소재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미확보				○		
진출입구	횡단보도의 한쪽에만 점자블록 설치		○				
공 중 화 장 실	휠체어 캐스터가 빠질 수 있는 빗물 배수구 덮개	○					
	경사로의 손잡이 구조물 훼손	○					
	입구 옆에 설치된 경사로가 가팔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데 어려움						○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진입로의 폭		○				
	화장실 입구 벽면에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과 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입구가 계단임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잡이와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또한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음			○			
	외부 장애인화장실 안내표지가 없어 장애인들이 찾기에 어려움, 그러나 비장애인화장실은 안내표지가 있음			○			
	입구 벽면에 성별구분 점자표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점자블록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			○	○	
	터치식자동문 출입문이 고장 상태				○		
	출입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어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들고 문고리 잠금장치도 사용하기 어려움		○				
	출입문이 접이식으로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들고 문고리 잠금장치 사용도 어려움			○			
	내부 대변기용 등받이와 휴지걸이가 없음		○				
	설치 원칙이 무시된 채 잘못된 시공된 대변기용 L자 손잡이		○				
	세면대 양쪽 손잡이가 고정식이며 가로막이와 아래쪽에 구조물이 있어 휠체어의 세면대 접근을 방해		○				
	대변기와 세면대가 인접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방해			○			
내부	입구 앞바닥에 점자블록 설치 안 되어 있음. 비장애인화장실 입구 가운데와 장애인화장실 버튼 밑에 있음	○					

구분	접근성 및 장애인편의시설 상태	다 대 포	송 도	광 안 리	임 랑	일 광	송 정
공 중 화 장 실	장애인화장실의 대변기에 앉았을 때 휴지걸이에 손이 닿지 않음	○		○		○	
	비상호출벨은 대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설치됨		○		○		
	공간이 좁아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		○				
	세면대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으며, 세면대 아래에 구조물이 있어 휠체어 접근을 방해			○			
	대변기 양쪽 손잡이의 간격이 넓어 사용하기 힘들				○		
	세면대 양쪽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고 가로막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의 세면대 접근을 어렵게 함	○					
	대변기와 세면대가 마주보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사이의 공간이 좁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이동이 불편					○	
	세면대 양쪽 손잡이는 고정식으로 가로막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의 세면대 접근을 방해					○	○
	세면대가 가깝고 손잡이가 양쪽이 아닌 한쪽만 설치되어 있음					○	
	대변기 옆에 세제가 담긴 통 등 물품이 쌓여 있음					○	
	세면대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넘어질 위험 있음						○
	파손된 세면대용 손잡이				○		
	장애인화장실은 공간이 좁아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대변기에 자동 물 내림 센서와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휴지걸이도 없으며 비상호출벨은 대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됨						○
샤워실	샤워실 옷장 아래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샤워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음	○					
	2층에 샤워실이 있어 계단으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음				○		

구분	접근성 및 장애인편의시설 상태	다 대 포	송 도	광 안 리	임 랑	일 광	송 정
해변공간	모래사장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바닷물이 있는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편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행로에 의자, 조각물 등 구조물이 많아 직진 이동이 곤란			○			
	경사로가 모래사장 초입까지만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바닷물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음			○			
관람시설	설치 원칙이 무시된 채 잘못 시공된 점자블록		○				
	해수욕장 가운데에 배 모양의 구조물이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 구조물에 설치된 경사로는 매우 가파름					○	
		다 대 포	송 도	광 안 리	임 랑	일 광	송 정

주: ○ 표의 많고 적음이 해당 장소의 장애인편의시설 평가척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자료: 이호승 외, 「수변활용형 관광레저 시설의 접근성 실태파악과 개선방향 연구」, 2018, p. 147~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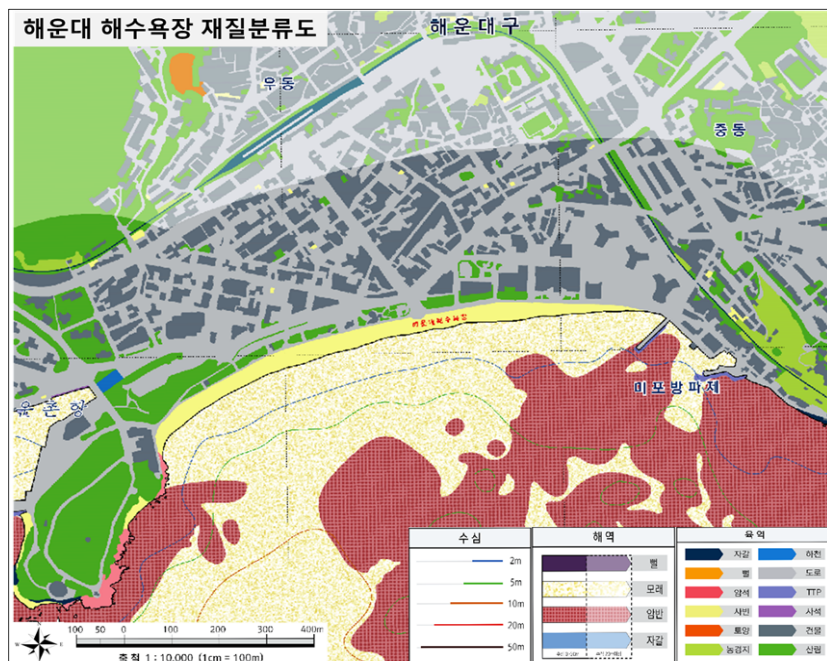
3. 해수욕장 접근 및 이동 여건 GIS 분석

계단, 단차뿐만 아니라 자갈밭, 비포장 도로 등과 같은 자연 상태의 노면은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이동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용객이 해양레저·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접근과 이동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해외의 해수욕장에서는 이동약자를 배려한 단차의 정비와 경사로 설치, 백사장이나 바닷가에서도 휠체어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매트 또는 접근로를 설치하고 있다. 접근로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자주식 휠체어뿐만 아니라 무거운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사용자도 있으며 보행보조기, 지팡이, 유모차, 그 외에도 바퀴가 달린 물체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해수욕장 물놀이 공간의 특성, 노면의 상태, 바다와 바닷가의 접근 가능 시설 및 이동 가능 정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정보는 해수욕장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GIS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① 백사장(길이, 폭, 구역), 물놀이 구역 위치 정보(해안선, 수심 등), ② 해수욕장 시설 위치 및 인근 토지 이용 정보, ③ 해수욕장 재질, 경사도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지도화하였다.



〈그림 2-4〉 해운대 해수욕장 재질 현황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해수욕장의 재질, 지형, 경사도 등에 관한 기초 지리정보는 라이다 및 초분광 영상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접근이 용이한 국내의 경사 기준은 기울기가 18분의 1(약 3.18°) 이하이며,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약 4.76°)까지 완화 가능²⁵⁾하다. 캘리포니아 기준을 살펴보면 기울기가 12분의 1(약 4.76°)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하인 곳은 매우 완만하며, 이상인 곳은 가파르다고 볼 수 있다. 물놀이 구역은 「해수욕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만조 시 기준으로 백사장의 길이 방향의 가운데 지점의 해수면 시작점부터 수심 1.5m 이하의 해수면이 10m 이상인 곳이 대상이 된다.

25) 한국소비자원(2016), p. 6.

해운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물놀이 구역과 백사장 상태를 담은 도면을 제작한 결과는 <그림 2-3>과 같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이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로 진입하는 근처에 해안선을 따라 경사(4.76°)가 있는 공간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공간은 완만한 경사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모래재질로 되어 있어 이동약자가 이동하기에는 불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2개의 접근로를 설치되어 있다.

4. 해수욕장 포용성 증진 시사점

해수욕장의 포용성을 증진하는 것은 해수욕장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과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사회약자가 이 과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이 논의는 사회약자가 다양한 기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방법과 기술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 시 사회적 배제 문제를 극복할 대상 공간의 포용성 개념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 포용성 측면에서 대상 공간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확인하고 이 요소가 충족되는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해수욕장 관리 평가체계에 포용성 관련 평가항목을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공간, 문화 및 산림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할 때 포용성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포용성의 진단 및 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수욕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해수욕장의 접근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동이고, 제한 없이 활동하기 위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비해 해수욕장 접근로 등 편의시설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이동 약자의 경우 계단, 단차, 자갈밭, 백사장, 비포장 도로 등과 같은 노면 이동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휠체어 활용이 어려운 접근로와 연결 도로 상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위치 고려 미미, 바다를 직접 접촉하여 놀이를 하도록 하는 시설과 안전의 확보가 미흡하다.

동시에 해수욕장 포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해수욕장 이용 콘텐츠 및 지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콘텐츠 이용에 대한 다양화와 공평성으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해수욕장 이용에 대한 장애인 수요 맞춤형 정보서비스 및 안전요원의 장애인 전문지식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안공간 중에서 휴식과 관광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안공간의 유형은 다양하다. 해수욕장 대부분은 백사장으로 되어 있으나 모래해변이 아닌 재질로 되어 있는 해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자연해안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해수욕장은 수면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므로 수면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2-13〉 해수욕장 포용성 실태 및 시사점

해수욕장 이용실태	시사점
• 해수욕장 포용성 진단 및 평가에 대한 논의 미흡 •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에서 포용성에 대한 인식 낮음	•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의 포용성 개념을 명확히 정하고 포용성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요소 확인 후 평가(진단) 필요 • 해수욕장의 특성을 고려한 포용성 진단 및 평가 필요 • 해수욕장 관리·운영 평가체계 내 포용성 측면의 평가 항목이 필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
• 과거에 비해 해수욕장 접근로 등 편의시설 여건이 개선 • 여전히 포용성 측면의 시설 가이드라인 부재하여 시설의 소재, 규격, 설치 방식 제각각 • 접근로와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 바닷가의 접근 보장과 수영 활동 및 편의시설 이용 보장 • 해수욕장 포용성 진단 시 접근성, 정보성, 지원 프로그램 고려 • 접근로와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해수욕장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미비 • 해양활동 지원 인력 및 프로그램 부재	• 해수욕장 이용 콘텐츠 다양화 • 사회약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해수욕장 이용에 대한 장애인 수요 맞춤형 정보서비스 • 안전요원의 장애에 대한 전문교육 필요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화와 관련 예산확보, 이동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등이 필요
• 백사장, 바다의 지형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 해수욕장 대부분은 백사장으로 되어 있으나 즉 모래해변이 아닌 재질로 되어 있는 해수욕장 고려 필요 • 자연해안의 지형적 특성과 해수욕장 수면 특성 파악

제 3 장

해수욕장 포용성 관련 개념과 제도 분석

제1절 국내·외 포용성 관련 이론 검토

최근 국제기구(UN, OECD, 세계은행 등)가 경제성장 전략, 도시정책 비전으로 ‘포용성’을 채택하고 유럽 등 많은 국가들도 포용성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채택하였고 사회의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포용적 성장

포용에 관한 논의는 주로 경제성장 측면인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소득계층의 다차원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정의²⁶⁾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과 불평등(inequality)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소득 기반의 측면들(non-income dimensions)도 고려하는 것²⁷⁾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 포용성 관련 주요 개념

용어	정의
혁신적 포용국가 (Inclusive State)	- 사회경제적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국가 -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을 고루 추진하고 그 결과로 불평등 축소, 빈곤 감소, 성장 잠재력 증가, 저출산 해소, 자살률 감도 등 유도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의료와 같은 비 소득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성장 방식으로 빈곤감소,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성을 추구(OECD, 2014)
포용 도시 (Inclusive Cities)	- 모든 사람이 재산, 성별, 나이,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들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UN HABITAT, 2002) - 포용도시 원칙은 지속가능성, 보완성, 형평성, 효율성, 투명성과 책임, 시민참여와 시민의식, 안전성으로 구성

자료: 성경룡 외(2017), p. 67; 변미리(2018), pp.7-8.

또한 유럽의 성장전략에 관한 보고서인 「유럽 2020 전략보고서(EUROPE 2020)」에서 성장의 방향으로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과 함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포용적 성장은 경제, 사회 및 영토의 통합(Cohesion)을 이루는 높은 고용 경제(high-employment economy)를 달성하는 것²⁸⁾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경룡 외(2017)가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Inclusive State)를 제시하였고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기능적)’을

26) OECD(2014), p. 10.

27) 김수진(2015), p. 18.

28) EUROPEAN COMMISSION(2010), p. 8.

핵심원리로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포용성은 경제영역, 고용영역, 복지영역 등 여러 영역에서 약자집단과 일반 국민의 참여와 보호 수준을 확대하는 것²⁹⁾이다.

2. 포용도시

전 세계적으로 포용에 관한 논의는 포용적 성장과 함께 공간에 초점을 맞춘 ‘포용도시(Inclusive City)’에 대해서도 활발하다. UN-Habitat(2002)는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를 “모든 사람이 재산, 성별, 나이,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하는 기회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정의하였다.³⁰⁾ 또한 UN HABITAT III 회의³¹⁾에서는 도시의 ‘포용성(inclusivity)’을 강조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였다.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포용성을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로 명명하였는데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거주자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접근성이 있고, 저렴하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³²⁾.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³³⁾도 도시의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SDGs 11번은 “도시와 거주지를 포용적이고(inclusive), 안전하

29) 성경룡 외(2017), p. 8.

30) UN-Habitat(2002), p. 5.

31)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

32) 박세훈 외(2016), p. 100.

33) 2005년 유엔의 밀레니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전환되면서 도시발전 전략으로써 포용성을 강조하였음(김수진(2015), p. 9.)

며(safe), 회복력 있고(resilient) 지속가능하게(sustainable) 만드는 것”이다³⁴⁾. UN SDGs 11번의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도시의 포용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표 3-2〉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1번 세부목표 일부

세부 목표	내용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적정가격의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 환경을 개선한다.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고령자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도로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고,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검색일: 2019. 3. 28.)

3. 공간적 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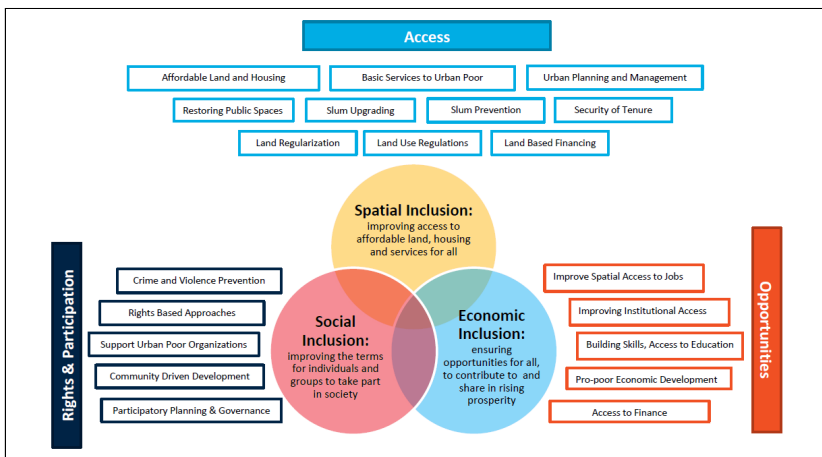
세계은행이 작성한 ‘포용도시에 관한 보고서(World Inclusive Cities Approach Paper)’에서는 포용도시를 ‘공간적 포용(Spatial Inclusion)’,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경제적 포용(Economic Inclusion)’의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공간적 포용은 ‘토지, 주택 및 인프라시설에 대한 접근’, 사회적 포용은 ‘개인과 집단의 권리와 참여’, 경제적 포용은 ‘경제적 기회 보장’을 의미한다. 포용도시의 세 가지 관점은 서로 구분되면서도 상호

34) 임현목 외(2017), p. 27.

35) 지속가능발전포털(검색일: 2019. 3. 28.)

연계되어 있다. 이 중 공간적 포용은 ‘접근(Access)’이 강조되며 ‘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공간적 포용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저렴한 토지와 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서비스’, ‘도시계획과 관리’, ‘공공 공간의 복원’, ‘슬럼가 정비 및 슬럼화 방지’, ‘토지이용 규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³⁶⁾.

〈그림 3-1〉 다차원적 포용도시 개념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clusive Cities: interventions aimed at inclusion in each dimension)



자료: World Bank, *World Inclusive Cities Approach Paper*, GSURR, 2015, p. 13.

4. 국내 포용도시 논의

우리나라에서도 포용도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분야에서는 문정호 외(2016)가 포용적 국토정책을 “사회정의, 공간에 대한 권리 및 행복 추구의 당위에 기초하여;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공간서비스의 구현과; 사회구성원의 정책·계획에 대한 참여역

36) World Bank(2015), pp. 11-13.

량을 강화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보다 형평성 높은 지역발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책·제도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일련의 정책”³⁷⁾으로 정의하였다. 이 중에서 세계은행이 말한 공간적 포용(Spatial Inclusion)과 관련 있는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공간서비스 구현’이란 “저소득층, 노령인구, 여성, 장애인,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공간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들의 공간편익(비용절감, 접근성, 안정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³⁸⁾.

〈그림 3-2〉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영역	구성요소	지표
사람 포용성	경제적 역량	• 지니계수(or 빈곤율) • 실업률 • 비정규직 비율 • 생산가능인구 중 대졸자 비율 • 취업률 • 장애인 고용률
	사회적 웰빙	• 사회보험 가입률 • 공공문화 예산비 • 주관적 건강만족도 • 기대수명 격차 • 문화서비스 만족도 •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공간 포용성	생활인프라 접근성	• 공공임대주택 • 이동권 • 교통환경만족도 • 주거비 부담률 • 녹지환경만족도 • 주거환경만족도
	공공서비스 접근성	• 공공인터넷 • 응급대응서비스 • 안전서비스 • 밤거리안전만족도
거버넌스 포용성	시민참여	• 투표율 • 지역사회 참여율 • 지역 자부심 • 사회단체 수 • 이웃신뢰도 • 자원봉사율
	투명성과 책임	• 공무원 중 여성비율 • 공공기관 신뢰도 • 공공기관 청렴도 • 사회단체 지원예산 • 행정정보공개율

자료: 변미리,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서울연구원, 2016, p. 57.

또한 변미리(2016)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제안하였다.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는 ‘사람 포용성’, ‘공간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으로 구분하였다. 사람 포용성은 경제적

37) 문정호 외(2016), p. 86.

38) 위의 책, pp. 86~88.

역량과 사회적 웰빙을, 공간 포용성은 생활인프라 접근성과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거버넌스 포용성은 시민참여, 투명성과 책임을 의미한다. 공간포용성에 해당하는 지표로는 공공임대주택, 이동권, 주거환경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³⁹⁾.

박인권·이민주(2016)⁴⁰⁾는 포용도시의 건설에 필요한 도시 진단을 위해 도시의 포용성 개념을 정립하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도시들의 포용성을 진단할 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시 포용성의 4가지 차원(역량형성, 상호의존성, 참여, 공간적 개방)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11대 구성요소 및 33개 지표로 구성된 도시 포용성 지표체계(Urban Inclusivity Indicators System: UIIS)를 개발하였다.

〈표 3-3〉 도시의 포용성 측정지표의 체계

차원 (제1계층)	구성요소 (제2계층)	연번	세부지표 (제3계층)
역량 형성	소득	1	빈곤율(중위 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X-)*
		2	빈곤보장률(빈곤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수 비율)
		3	소득만족도
	건강	4	저소득층(일정 소득 미만) 기대수명
		5	인구 십만 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
		6	저소득층의 주관적 건강평가
	교육	7	유아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예산
		8	영유아 100명당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9	아동 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수
	문화	10	1인당 공공문화비 예산
		11	1인당 공공문화체육시설 면적
		12	문화시설 등 접근 용이성 만족도
상호의존	공정한 분업	13	사회적약자의 고용률
		14	정규직 노동자 비율
		15	저임금 노동자 비율(-)*

39) 변미리(2016), p. 57.

40) 박인권·이민주(2016), p. 112.

차원 (제1계층)	구성요소 (제2계층)	연번	세부지표 (제3계층)
상호의존	사회적 호혜	16	소수자(이민자, 성소수자, 타 종교)에 대한 관용
		17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수
		18	저소득층 사회적관계망 정도
참여	실제 참여도	19	저소득층 지방선거 투표율
		20	사회적 약자 사회단체활동 참여 비율
		21	저소득층 문화·예술·스포츠 연간 관람 횟수
	권력분배	22	사회단체 예산지원 규모
		23	지방의회 구성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
		24	예산총액 대비 참여예산사업 예산 비율
공간적 개방	저렴한 주거	25	전체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
		26	중위(또는 평균) 주택가격(-)*
		27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외부지향	28	인구유입률(유입인구/총인구)
		29	청년(15-45세) 인구비율
		30	저소득층 대중교통 접근성 만족도
	공간통합	31	외국인 거주분리 지수(-)*
		32	빈곤층 거주분리 지수(-)*
		33	1인당 오픈스페이스(공원·녹지 등) 면적

주 : * (-)는 지표 값이 낮을수록 해당 구성요소의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박인권·이민주,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 한국의 포용도시 의제 설정을 위하여」, 『공간과 사회』, 제26권 제4호, 2016, p. 112.

5.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포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일 만나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에서 장애인 등 사회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시도로써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정책을 들 수 있다.

행정안전부(2018)⁴¹⁾에 따르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연령·성

41) 행정안전부(2018), p. 6.

별·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⁴²⁾.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등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잠재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의 대상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이다⁴³⁾. 유니버설디자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배리어프리(Barrier Free)가 있는데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 노인 등 특정 계층만을 주로 고려하는 배리어프리 개념에서 모든 사람을 고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증진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7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7가지 원칙은 '공평한 사용', '사용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실수에 대한 관대함', '적은 신체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을 말한다⁴⁴⁾.

유니버설디자인은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주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약자를 배려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약자가 차별 없이 편하게 이용하게 된다면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목표는 당연히 포용성을 증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유니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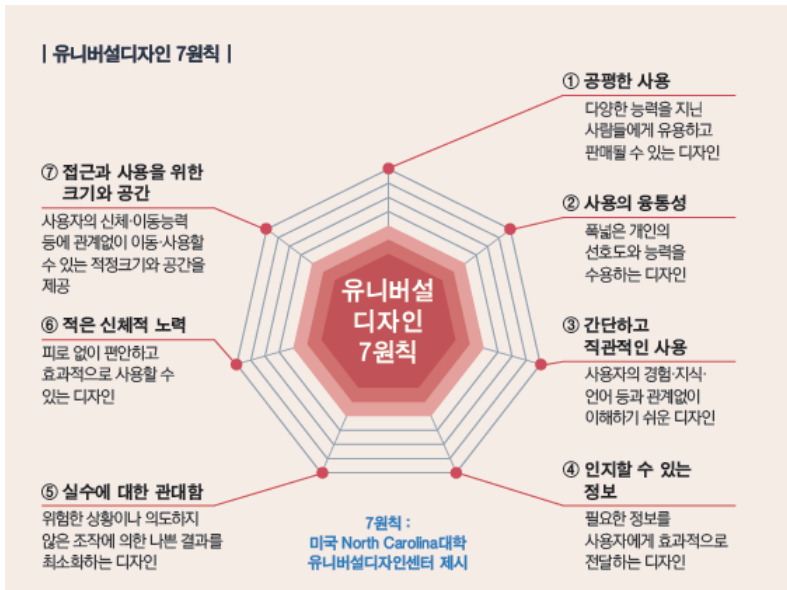
42) 유니버설디자인의 창시자인 로널드 메이스 박사(Ronald L. Mace, 1941~1998)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는 수고나 특별한 장치 없이도 내재하는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 모두가 이용 가능한 제품이나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정의하였음.(국립산림과학원(2015), p. 8.)

43) 위의 책, p. 7.

44) 행정안전부, 앞의 책, p. 6.

디자인을 실현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나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과 시설에서 포용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림 3-3〉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 2018, p. 6.

6.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이 연구에서 말하는 해수욕장의 포용성 개념은 포용도시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해수욕장의 포용성 개념이 포용도시 개념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며 기본적인 목표는 공유하면서 대상 공간이 해수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수욕장의 포용성은 World Bank(2015)의 포용도시 프레임을 구성하는 3개 부문 중에서 공간적 포용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이 연구는 해수욕장의 공간포

용성을 중심으로 수행하였고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해수욕장 공간과 자원이 제공하는 휴식, 레저, 치유 등의 서비스에 일반시민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표 3-4〉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유사 개념

유형	세부 유형
포용도시	- 모든 사람이 재산, 성별, 나이,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하는 기회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
공간 포용성	- 토지, 주택 및 인프라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 ‘접근(Access)’이 강조,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
포용적 국토	-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공간서비스 구현 - 사회구성원의 정책·계획에 대한 참여역량 강화. 좋은 거버넌스 구축 - 형평성 높은 지역발전 기회 보장을 위한 공간정책·제도환경 개선

자료: UN-Habitat, *The 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 Concept Paper 2nd Edition, 2002, p. 5; World Bank, *World Inclusive Cities Approach Paper*, GSURR, 2015, pp. 11-13; 문정호 외,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2016, pp. 86-88.

한편으로 포용도시 프레임에 3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긴 하나 각 부문이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다룰 때도 사회적 포용성과 경제적 포용성과 관련 있는 내용도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써 해수욕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때는 사회적 포용성 측면의 개선도 필요하다. 문정호 외(2016)가 제시한 포용적 국토의 개념도 공간적 포용성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포용성과 경제적 포용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제2절 국내 제도 및 사업

1. 관련 법률

법률 분석은 해수욕장 공간 구성과 시설물 설치·관리 관련 법률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약자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할 때 이용하게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분석하였다.

1) 해수욕장 조성과 관리

해수욕장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연안관리법」, 「해수욕장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관광진흥법」 등이 있다.

〈표 3-5〉 해수욕장 조성 및 이용 관련 주요 법률

구분	주요 이용·관리수단	공간 조성 및 시설 설치 관련 규정
연안관리법	연안정비사업	연안유희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 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해수욕장법	- 해수욕장 지정 - 해수욕장 구역 세분 - 해수욕장 시설 설치·관리 - 해수욕장 평가와 지원	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기준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
항만법	- 항만개발사업 - 항만시설(친수시설) 설치 - 항만재개발사업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
어촌어항법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항개발사업	
관광진흥법	- 관광지 지정 - 관광지 개발	

연안관리법은 모든 연안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법률이며 연안재해 예방, 친수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연안정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사례지역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해수욕장법에서는 계획 수립, 해수욕장 구역 세분(물놀이구역, 수상레저구역), 해수욕장 시설 설치, 해수욕장 평가와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해수욕장 조성과 관리에 관한 주요 법률에서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규정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법 제3조에서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해수욕장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 포함되어 있고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에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47조의3⁴⁵⁾(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에서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약자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선언적 원칙이거나 소극적인 차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약자 편의 증진

사회약자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구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45)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 등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구체적인 공간이나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 않고 각 분야별로 장애인의 차별 금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3-6〉 사회약자 편의증진 관련 주요 법률

구분	주요 이용·관리수단	공간 조성 및 시설 설치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 차별 금지 -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편의시설 설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 별표1 : 편의시설 설치 대상(제7조) - 별표2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별표2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이동편의시설 설치 -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장애인등편의법은 사회약자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개별 법률에서 사회약자 관련 시설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장애인보조기

기법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교통약자법이 사회약자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교통약자법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해수욕장도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약자 관련 법률의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며 이 중에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해수욕장에 해당한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 공원은 구체적으로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수욕장의 일부만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써 공원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해수욕장은 수역과 육역을 모두 포함하는데 공원으로 포함된 구역이 일부에 해당한다. 육역 중 백사장, 수역은 지적이 등록되지 않은 공유수면에 해당하여 장애인등편의법의 설치 대상이 아니다.

교통약자법에 따른 이동편의 설치 대상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가 대상이다. 이동편의 설치 대상은 대부분 해수욕장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하는 교통수단, 섬지역에 방문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선박, 항만시설 등이 직접 관련 있는 시설이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증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과 교통약자법에 따른 이동편의 설치 대상이 해당한다.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보조기기에는 레크리에이션 보조기기도 포함되어 있어 해수욕장에서 휴식하고 레저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3-7〉 사회약자 지원 세부 규정

구분	세부 내용
편의시설 설치 대상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	1. 공원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2.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3. 공동주택 -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4. 통신시설 -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제1조의 2의 제호 규정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이동편의 설치대상(교통약자법 제9조)	1. 교통수단 : 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광역전철 2.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도시철도 역사,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광역전철 역사 3. 도로 : 도로, 준용도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교통약자법 제16조)	-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함 -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구분	세부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법 제16조의2)	-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기 법 제3조)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2. 관련 시설 기준

1) 해수욕장 시설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증대되면서 바다와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양레저·관광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의 활동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수욕장 시설 관리와 운영의 선진화, 해수욕장 이용의 안전 확보 등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을 제정하였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해수욕장은 해안선을 따라 총 26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강원 연안에 가장 많은 93개 해수욕장이 있다.⁴⁶⁾ 2017년 기준 전체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100,379천 명이고, 부산 연안의 해수욕장 이용객이 4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산 연안에 지정된 해수욕장은 송도, 해운대, 송정, 다대포, 광안리, 임랑, 일광해수욕장 등 7개이다.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이하 관리청)가 해수욕장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정부와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개선·복구·복원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6)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9.)

〈표 3-8〉 해수욕장 시설·환경기준

구분			기준
시설 기준	자연 기준	백사장	• 전년도의 평균 해면(海面) 기준으로 길이 100미터 이상, 폭 20미터 이상일 것(전년도의 해당 해수욕장 이용객이 3만 명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수심	• 만조 시 기준으로 백사장의 길이 방향의 가운데 지점의 해수면 시작점부터 수심 1.5미터 이하의 해수면이 10미터 이상일 것
	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		• 물놀이를 위한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이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은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환경 기준	백사장		• 백사장의 토양이 「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수질		• 수역의 수질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試料)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장구균(Enterococci): 100CFU/100mL 이하 또는 100MPN/100mL 이하 나) 대장균(E.coli): 500CFU/100mL 이하 또는 500MPN/100mL 이하

자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2조(시설 및 환경 기준) 관련)

「해수욕장법」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은 ① 기본(백사장) 및 기능시설(산책로, 편의시설, 안전시설, 환경시설), ② 지원시설(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체육시설, 판매·대여시설, ③ 기타 시설(다이빙대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조경시설, 문화 및 체험 시설)이 있다. 해수욕장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자연적 기준 이외에 시설, 환경, 안전에 관한 설치·관리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3-9〉 해수욕장 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구분			설치기준	관리기준
기본 및 기능 시설	백사장		○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백사장을 확보	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 매일 개장시간 전 또는 개장시간 후에 백사장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나) 해수욕장 개장 전 1개월 이내에 시료를 1회 이상 채취하여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산책로		○ 해수욕장의 지형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즉시 제거할 것
	이용객 편의 시설	샤워시설	○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간단한 샤워를 하거나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노천 샤워장이나 세족(洗足)장을 설치할 수 있다.	○ 개장기간 동안 매일 샤워시설의 청결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화장실	해당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 및 연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할 것	(1) 개장기간 중 매일 화장실 청결 상태 및 화장지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신속한 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하여 화장실 관리자의 연락처를 해수욕장 이

구분		설치기준	관리기준
안전 시설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관리청은 해수욕장 주변 상가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여 계도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것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및 구명튜브	인명구조선(응급구조사 및 산소호흡기 등 필요한 인력 및 장비가 갖추어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를 갖추고, 감시탐마다 구명튜브를 갖추는 것	관리청은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및 민간해양구조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명구조 장비의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감시탑	(1) 해수욕장 이용객들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백사장의 길이와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를 설치할 것 (2) 감시탑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 감시탑에 있는 안전요원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구명보트 등으로 물놀이 구역 순회하는 등 감시탑과 연계한 다양한 해상안전 감시체제를 구축할 것
	물놀이 구역 안전시설	(1) 물놀이구역에는 물놀이 구역임을 표시하는 물놀이구역 부표를 설치할 것 (2) 물놀이구역이나 물놀이 구역 인근 해저에 급경사면, 웅덩이 또는 암초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있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안전부표 또는 경	(1)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해안의 경우에는 만조시간과 간조시간 등 해수욕에 필요한 정보를 공지할 것 (2)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 구역이 인접한 경우 물놀이구역 부표와 수상레저 구역 사이에 10~20미터의 안전구역(Safety Zone)을 둘 것

구분		설치기준	관리기준
환경 시설		고판 등을 설치할 것 (3) 물놀이구역 외의 구역에 수상레저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를 따로 설치할 것	
	오수·폐수 처리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또는 판 매·대여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수·폐수가 정화처리 없이 바다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 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해수욕장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오염원들을 조사하고, 오수·폐수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
	쓰레기집 하·처리 시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백 사장 길이, 연 이용객 수 및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 여 1개 이상의 분리수거식 쓰레기집하·처리시설을 설 치할 것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이용객 수 및 쓰 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 여 적절한 주기로 개장시 간 전후에 백사장 청소를 실시할 것 (2) 해수욕장 또는 해수욕장 인근에 설치한 쓰레기집 하·처리시설이 위생적으 로 관리되도록 하고, 쓰레 기집하·처리시설로 인하 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지원 시설	관리사무소	1) 해수욕장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관할 경찰서, 해양경 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의 안전·치안요원들이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는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2) 최상층(또는 옥상)에는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를 설치할 것	
	진료시설	1)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 소에 설치할 것 2) 해수욕장 이용객이 진료시설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 할 것	

구분		설치기준	관리기준
	체육시설	1) 백사장에 비치발리볼 장(場)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백사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가급적 임시 시설물로 설치할 것 2) 체육시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 축조 및 시설물 설치 시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	
	판매·대여시설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쾌적한 해수욕을 위하여 적절한 수와 규모의 판매·대여시설을 설치할 것	
그 밖의 시설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전망대,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레저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해수욕장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해상에 설치된 레저시설 등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은 이용객의 접근성, 이용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할 것	
		체험장 등 체험시설은 해양 관련 이미지 제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양 및 해양안전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잔디밭, 방목림, 분수대 등 조경시설은 해수욕장 및 해안의 미관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시설을 배치하고 관리할 것	

자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제17조(해수욕장 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관련)

2) 장애인 편의시설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등⁴⁷⁾의 시설 및 설비 이용 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

4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동법 제2조 제1호)

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며, 편의시설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동법 제2조).

이 법에서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명시하고 있다(제7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동법 제7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⁴⁸⁾을 설치하여야 한다⁴⁹⁾.

이 연구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원의 편의시설 종류는 7가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는 총 17가지로, 접근로, 화장실, 점자블록 등은 두 시설에서 공통적인 설치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등편의법 외에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장려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 기준에 따라 예비인증과 본 인증을 거치게 되며, 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 일반등급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대부분 국가와 지

48)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동법 제2조 제2호)

49) 편의시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방자치단체에서 인증을 신청하며, 인증대상은 건축물, 공원, 도시, 역사, 교통수단이 있다.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은 기존의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법의 편의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기존 법률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면 일반이나 우수 등급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표 3-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공원) 평가항목별 점수

범 주		분류번호	평가항목	배점
1. 매개 시설	1.1 접근로	P1-01-01	1.1.1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1
		P1-01-02	1.1.2 유효폭	2
		P1-01-03	1.1.3 단차	1
		P1-01-04	1.1.4 기울기	2
		P1-01-05	1.1.5 바닥마감	1
		P1-01-06	1.1.6 보행장애물	2
		P1-01-07	1.1.7 덮개	1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P1-02-01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1
		P1-02-02	1.2.2 주차면수 확보	1
		P1-02-03	1.2.3 주차면	1
		P1-02-04	1.2.4 보행 안전통로	1
		P1-02-05	1.2.5 안내 및 유도표시	1
	1.3 주출입구	P1-03-01	1.3.1 진출입 통제 계획	5
		P1-03-02	1.3.2 공원입구와 보도와의 경계	1
소계				21
2. 유도 및 안내 시설	2.1 안내설비	P2-01-01	2.1.1 안내판 설치	2
		P2-01-02	2.1.2 안내판의 정보	2
		P2-01-03	2.1.3 통합안내설비	2
		P2-01-04	2.1.4 경고시설	1
소계				7
3. 위생 시설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P3-01-01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5
		P3-01-02	3.1.2 안내표지판	2
	3.2 화장실 접근	P3-02-01	3.2.1 유효폭 및 단차	3
		P3-02-02	3.2.2 바닥마감	2
		P3-02-03	3.2.3 출입구(문)	3

범 주		분류번호	평가항목	배점
	3.3 대변기	P3-03-01	3.3.1 대변기	2
		P3-03-02	3.3.2 활동공간	2
		P3-03-03	3.3.3 형태	2
		P3-03-04	3.3.4 손잡이	2
		P3-03-05	3.3.5 기타설비	2
	3.4 소변기	P3-04-01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2
	3.5 세면대	P3-05-01	3.5.1 형태	1
		P3-05-02	3.5.2 거울	1
		P3-05-03	3.5.3 수도꼭지	1
소계				30
4. 편의 시설	4.1 접근 및 이용성	P4-01-01	4.1.1 시설까지의 접근로	1
		P4-01-02	4.1.2 공원시설의 주출입구	2
	4.2 공원시설	P4-02-01	4.2.1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공간)	8
	4.3 기타설비	P4-03-01	4.3.1 휴식공간	1
		P4-03-02	4.3.2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2
소계				14
5. BF 보행의 연속성	5.1 공원 내부 보행로	P5-01-01	5.1.1 BF보행로의 지정	2
		P5-01-02	5.1.2 보행안전공간	6
		P5-01-03	5.1.3 단차	1
		P5-01-04	5.1.4 기울기	5
		P5-01-05	5.1.5 바닥마감	2
		P5-01-06	5.1.6 자전거 도로와의 접점	2
		P5-01-07	5.1.7 보행유도의 연속성	10
소계				28
6. 종합평가		P6-01-01	5%(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총배점				100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공원편)」, 2012, pp. 27~30에 제시된 표를 이용하여 재작성함.

3. 관련 사업

문체부(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과 노인의 관광 편의를 배려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린관광지’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선정된 열린관광지 20개소 중 연안관광지는 6개소에 해당한다.

〈표 3-11〉 열린관광지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정의	-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
목적	-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조성으로 관광 향유권 보장 - 고령사회 대비 관광 환경의 개선
내용	- 공동사업 : 열린관광지 안내 팸플릿, 점자가이드북, 촉지형안내시설, 무장애 관광 웹페이지 - 대상지별 사업 : 무장애이동동선, 화장실, 체험시설 등 개선 등
지원규모	- 매년 5개소 선정 - 개소당 1.6억 원 한도(국비 : 지방비(또는 관광사업자) = 5 : 5)

자료: 한국관광공사(2016), 2016 열린관광지 사업설명회 자료, pp.4-16.

문체부가 시행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에서 연안공간과 관련된 사업 대상지는 전남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강원 동해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망상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경기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으로 총 6곳에 해당한다.

〈표 3-12〉 열린관광지 중 연안관광지 현황(2015~2018)

연도	대상지
2015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전남 순천)
2016	정동진 모래시계공원(강원 동해), 대천해수욕장(충남 보령)
2017	없음
2018	해운대해수욕장(부산), 갯골생태공원(경기 시흥), 망상해수욕장(강원 동해)

자료: 문체부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무 자료 (2019. 7. 8)

개별 지자체에서도 미흡하나마 해수욕장의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시, 보령시, 양양군 등에서 장애인의 해수욕장 접근·이용 여건 개선 사업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와 보령시의 경우는 문체부 열린관광사업을 기반으로 해수욕장에서 장애인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양양군은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이 편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표 3-13〉 지자체 단위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Barrier Free Zone 사업)	■ 도로 및 바다 접근성 개선 - 유모차 및 휠체어 운행에 있어 안전한 도로만들기 - 광장에서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계단 옆 유모차 통행가능 경사로 조성 - 휠체어를 탄 사람도 바닷물을 만질수 있는 '바다 로(路)' 1개 조성 ■ 민관 공동협력사업 - 유모차,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 거동불편자 이용 식당 인증제도 실시(식당 문턱 없애기 등)
강원도 양양군 큰바다해수욕장	- 서울시 거주 장애인과 가족들이 쉴 수 있는 '해변캠프' 운영 - 휠체어 전용 이동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점자 안내판 등 설치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모래사장에서 이동, 바다에서 수영을 즐길

자료: 보령시 내부자료; SBS 뉴스(검색일: 2019. 3. 7)

또한 부산시, 보령시, 속초시 등은 해수욕장에 별도의 장애인 유영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장애인 유영구역은 근거법이 있지 않고 지자체 자체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국외 제도 및 사업 분석

1. 미국

1) 관련 법

미국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고용 기회, 상거래 및 정부의 각종 사업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법은 모두 5개의 편(Title)으로 구성되며, 제1편은 고용영역, 제2편은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영역, 제3편은 민간(private entities)이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영역, 제4편은 전기통신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제5편에서는 기타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DA는 장애인에게 평등한 접근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미국 장애인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은 접근 가능한 디자인의 리더십과 건설된 환경, 교통, 통신, 의료 진단장비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및 표준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평등을 촉진하는 연방 기관으로 '미국엑세스위원회(U.S. Access Board)'를 설치하여 수상여가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여가장소의 환경 시설 측면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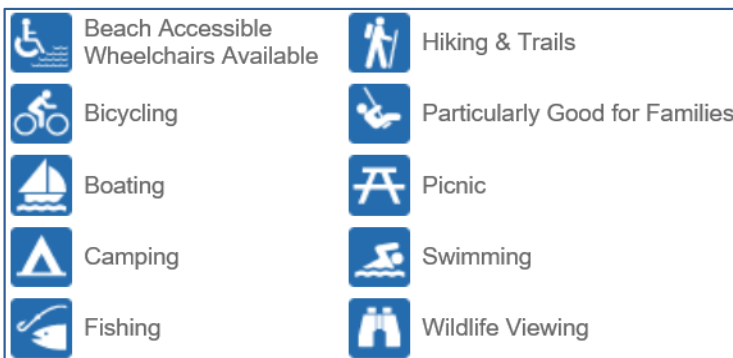
2) 관련 사례

장애인들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맞춤형 정

보검색이 가능한 장애인 관광포털의 운영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연안공간 접근과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웹 사이트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해변, 공원, 전망대 및 기타 장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휠체어 사용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장애인이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산책로, 공원 등을 쉽게 찾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해변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한편, 화장실, 주차, 테이블 등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장애인법 접근성 지침(ADAAG)과 캘리포니아 타이틀 24를 사용했다. 접근성 평가 기준 항목은 총 8가지로 접근 가능한 방문자 센터, 접근 가능한 주차장, 접근 가능한 화장실, 접근 가능한 피크닉 테이블, 접근 가능한 낚시 항구, 접근 가능한 운동장, 경사도, 지형이 있으며, 각 항목은 정해진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접근이 일부 제한된다.

〈그림 3-4〉 장소의 기능별 접근가능성 표시



자료: 캘리포니아 주 휠체어 사용자 가이드라인 홈페이지(검색일: 2019. 3. 15.)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해변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면 웹사이트에서 로스앤젤레스를 선택한다. 사이트에서는 로스앤젤레스의 해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장애인을 위해 근처 식당, 상점, 장비 대여업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각각의 해변에 대한 사진과 함께 해변의 사이트, 연락처, 입장료, 교통수단 등에 대한 내용과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그림 3-5〉 캘리포니아 해변별 접근가능성 표시

Site Overview	P					
1 Santa Monica: Pier, State Beach, & Ocean Front Walk	●	●	●	●	●	●
2 Venice Beach and Pier	●	●	●	●	●	●
3 Leo Carrillo State Park	●	●	●	●		●
4 Marina Del Rey	●	●	●			●
5 Manhattan Beach	●	●		●	●	●
6 Hermosa Beach Strand and Pier	●	●		●	●	●
7 Pelican Cove Park: Terranea Discovery Trail	●	●	●	●		
8 Ocean Trails/Trump National Golf Course	●	●	●	●		
9 White Point Beach/Royal Palms County Beach	●	●	●			
10 White Point Preserve and Education Center	●	●	●	●		
11 Long Beach Harbor: Shoreline Park, Rainbow Harbor, and Aquarium	●	●	●	●	●	
12 Long Beach to Alamitos Bay	●	●	●	●	●	●

자료: 캘리포니아 주 휠체어 사용자 가이드라인 홈페이지(검색일: 2019. 3. 15.)

미국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 리조트(Disney World Resort)'는 교통약자 및 자폐증, 인지장애를 가진 다양한 처지의 방문객들에 대해서도 리조트 이용 도움을 위해 편의시설과 휠체어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탑승 놀이시설 배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6〉 Disney World Resort의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서



자료: 디즈니월드 홈페이지; 이호승 외(2018), p. 48에서 재인용

2. 일본

1) 관련 법

일본에서는 1981년 국제장애인의 해 이후, 장애인을 고려한 ‘배리어프리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2000년 11월부터 「고령자·장애인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 시 이동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2000년 제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시행된 장애인신법으로 통합되었다.

배리어프리법은 고령자, 장애인 등이 스스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객시설, 차량 등 도로, 주차장, 도시공원, 건축물에 대하여 기준에 맞춰 공공교통시설 및 건축물 등의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는 법이다. 기본 방침은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중점정비지구를 정하여 각종 사업을 중점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 공공단체의 조례 제정 추진 및 시설물뿐만 아닌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마음속 배리어프리를 추진하고 있다.

2) 사례

일본에서 2018년 정부 예산 중 총 41억 엔을 철도 이용 관련 배리어프리 촉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휠체어 이용자도 안전하게 승하차가 가능한 노면전차의 보급, 장애인 및 고령자의 낙상 방지를 위한 이중 문을 플랫폼에 설치하는 등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3-7〉 일본 전철 및 전철역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사례



자료: kotra 해외시장 뉴스

일본의 배리어프리 전문 종합여행사 'H.I.S.'는 수화 가능 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 케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된 '유니버설 관광 데스크' 브랜드를 구축하여 장애인 여행자의 국내외 여행 프로그램에 있어서 모든 상품에 무장애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8〉 수상관광 프로그램 참가 지체장애인(H.I.S.사)



자료: HIS 여행사 홈페이지: 이호승 외(2018), p. 44에서 재인용

일본 여행사 'JTB'는 모든 사람을 위한 관광의 실현을 위해 유니버설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고령자, 지체부자유자, 유아동반, 외국인, 치료관광 등 다양한 처지의 대상자와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저상버스 운행하고 있다. 또한 무장애 숙박시설, 건강식단, 문자 크기와 배색,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제작된 안내책자 등을 개발하여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까지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3-9〉 지체장애인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 안내서(JTB사)



자료: JTB 홈페이지; 이호승 외(2018), p. 44에서 재인용:

일본 이바라키현 소재 ‘오아라이(大洗) 썬 비치 리조트’는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비치 만들기(유니버설 비치)’를 목표로 인명 구조 단체와 제휴로 접근 가능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수륙 양용휠체어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3-10〉 오아라이 썬 비치의 대여용 수륙양용 휠체어



자료: 미디어116 홈페이지: 이호승 외(2018), p. 47에서 재인용

일본 카고시마현 아마이오지마(奄美大島) 소재의 'Zero Gravity'는 길이 9m, 최대수심 2.5m의 2단계로 된 연습용 수조를 설치하여 휠체어이용자가 다이빙과 스노클링 체험이 가능하며, 휠체어를 탄 채 고 승선 가능한 쌍동선(catamaran)을 소유하고 있다.

〈그림 3-11〉 입수 체험활동 휠체어이용자



자료: 오션플러스알파 홈페이지: 이호승 외(2018), p. 47에서 재인용

제 4 장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증진 방안

제1절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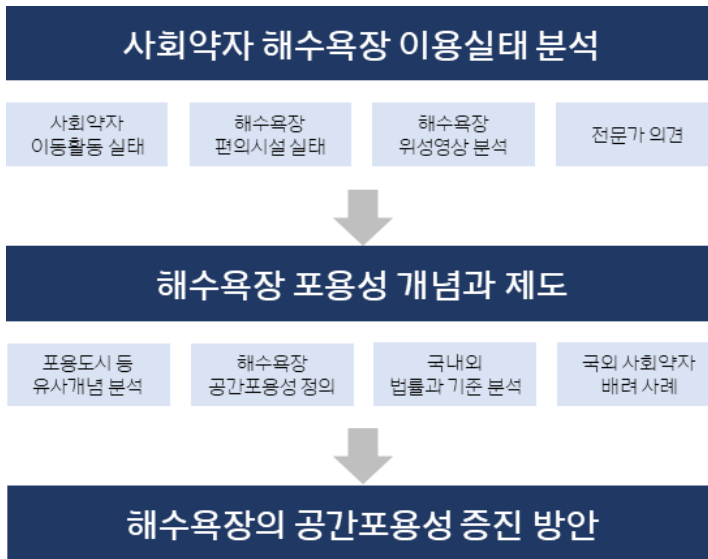
1. 기본방향 도출을 위한 방법과 주요 시사점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증진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그림 4-1〉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해수욕장에 대한 사회약자 이용실태는 현장조사, 문헌 분석, 전문가 인터뷰, 위성영상을 활용한 GIS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해수욕장 포용성에 관한 국내의 유사 개념을 살펴보고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국내 포용성 관련 제도는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약자 관련 법률, 「해수욕장법」, 「연안관리법」 등과 같은 해수욕장 조성과 관리 관련 법률 등을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사회약자 관련

법률, 해수욕장 등 바다에서 사회약자가 이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4-1〉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 방안 도출 과정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해 분석한 국내 여건을 통해 해수욕장에서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 해수욕장의 지형 특성(침식해변, 퇴적해변)을 고려한 접근·이용방안 마련 필요,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연안공간 접근·이용실태에 대한 조사와 평가 필요, 해수욕장을 비롯한 연안공간에서 장애인 등이 원하는 야외공간에서의 휴식과 레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 필요 등을 도출하였다. 국외여건 분석을 통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 등 장애인 사회약자 관련 법률과 「연안관리법」, 「해수욕장법」 등 해수욕장 관련 법률의 연계 필요, 장애인

등이 해수욕장에서 일반인과 동등하게 수영을 포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비,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서는 해수욕장만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필요, 해수욕장의 포용성 증진은 저소득층과 같이 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장애인, 노인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을 고려할 필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반적인 연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는 기존 장애인등 관련 편의 시설 설치 기준, 지원기준 등에 해수욕장의 공유수면적 특성 반영 필요, 물리적 공간이나 시설의 개선과 함께 인력지원과 같은 비물리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기존 포용성 논의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해수욕장을 비롯한 연안공간은 일반시민에게 중요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연안공간만의 포용성 연구 필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4-1〉 해수욕장의 포용성 증진 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 종합

구분	주요 내용	적용 시사점
국내 여건	장애인등편의법 등에 근거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에 대한 고려가 미흡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에서 장애인등 사회약자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
	우리나라 해수욕장은 지형적으로 다양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해수욕장의 지형 특성(침식해변, 퇴적해변)을 고려한 접근·이용방안 마련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오랫동안 일반인이 쉽게 가는 관광지, 공원 등 야외공간에 가지 못하였고 야외공간에 편하게 가고자 함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연안공간 접근·이용실태에 대한 조사와 평가 필요
	성별, 연령, 지역,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장애인이 근처 야외등산로나 공원시설 이용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음 - 산에 비해 바다에 대한 방문 경험이 많음	해수욕장을 비롯한 연안공간에서 장애인등이 원하는 야외공간에서의 휴식과 레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 필요

구분	주요 내용	적용 시사점
국외 여건	- 미국은 ADA에 근거하여 분야별로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즉 장애인 관련 법과 타 법의 연계가 잘 되어 있음 - 미국, 일본, 영국 등 연안이 길게 분포하는 국가에서는 해수욕장 등 연안에서 누릴 수 있는 휴식과 레저의 기회를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장애인들이 해변에서 일반인이 경험하는 각종 해양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지원인력, 지원장비 등)을 마련하여 운영	- 장애인등편의법 등 장애인 사회약자 관련 법률과 연안관리법, 해수욕장법 등 연안공간 관련 법률의 연계 필요 - 장애인들이 해수욕장에서 일반인과 동등하게 수영을 포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비,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해수욕장 이용실태 분석	- 시도 단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해수욕장이 분포하는 부산에서는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민원 등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 - 과거에 비해 해수욕장 편의시설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없고 연안의 지형적 특성, 해양물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 - 해수욕장 배후공간에 대한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으나 백사장, 바다에 대한 고려가 없음	- 해수욕장만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필요 - 해수욕장의 포용성 증진은 저소득층과 같이 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장애인, 노인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고려 대상임
전문가 자문	- 각종 편의시설 규정과 기준에서 해수욕장 등 연안에 대한 고려 미흡 - 해수욕장 지원 필요하나 인력지원 매우 부족 - 지원인력이 있어서 장애인 교육이 없어 불편 - 장애인 등 사회약자 관련 법률에서 바닷가를 비롯한 연안공간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없음 - 장애인 유영구역 등 사회약자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필요	- 기존 장애인등 관련 편의시설 설치 기준, 지원기준 등에 연안공간과 연안공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 물리적 공간이나 시설의 개선과 함께 인력지원과 같은 비물리적 지원 방안 마련

구분	주요 내용	적용 시사점
전문가 자문	- 내륙과 다른 특성을 가진 연안공간의 포용성에 대한 개념 정립과 심층적인 연구 필요 - 해수욕장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으로도 포용성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큼	- 기존 포용성 논의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연안공간은 일반시민에게 중요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연안공간만의 포용성 연구가 필요 - 해수욕장의 장애인등을 배려한 정책과 사업 추진 필요

2. 기본방향

앞서 정리한 각 연구 단계별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해수욕장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은 <표 4-2>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기본방향은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인식 증진’, ‘해수욕장 포용성 평가’, ‘공유수면적 특성 반영’, ‘법률간 분담과 연계’, ‘좋은 거버넌스 구축’ 5가지로 제시하였다.

<표 4-2>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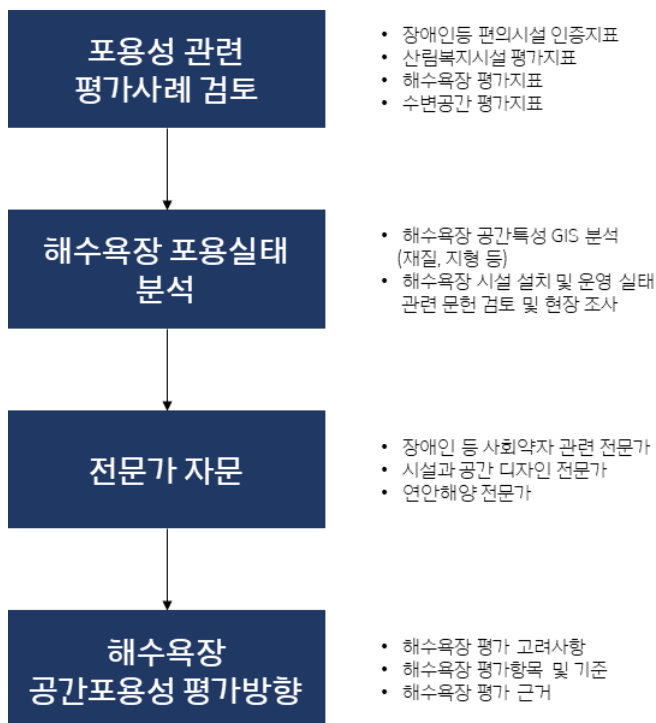
기본방향		세부 내용
1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필요성 인식 증진	해수욕장은 기존 포용성 논의에서 소홀했던 해수욕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2	해수욕장 포용성 평가	해수욕장의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의 포용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3	공유수면적 특성 반영	해수욕장의 포용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
4	법률간 분담과 연계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관한 법률과 해수욕장의 조성 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역할 분담과 연계가 필요함
5	좋은 거버넌스 구축	사회약자를 비롯한 과거 배제되었던 집단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제2절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방향

1.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방향 도출 절차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마련한 공간포용성 평가방향은 <그림 4-2>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림 4-2>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방향 도출 흐름도



먼저 포용성 관련 타 분야 평가 사례를 검토하여 포용성 진단 관련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확인하였다. 장애인등 편의시설 인증지표, 산림복지시설 평가, 해수욕장 및 수변공간 접근성 평가에서 사용한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해수욕장의 포용성 실태를 파악하였다. 해수욕장은 토지와 수면의 속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지형, 재질, 경사와 같은 자연조건,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GIS 분석, 현장방문 및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유사 평가항목 분석과 해수욕장 포용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한 해수욕장 포용성 평가방향에 대해 장애인복지 분야, 디자인 분야, 해양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수욕장 포용성 평가를 위한 방향과 평가항목(안)을 제시하였다.

2. 포용성 관련 평가 사례

1) 장애인 접근성 평가리스트 종합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접근성 관련 평가기준은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외에도 다양하다. 그러나 평가부문, 평가범주, 평가항목들이 모두 다르다.

이 연구에서 장애인 접근성 평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평가리스트를 종합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관광지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등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부터 최대한의 기준을 통합하고, 최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 4-3〉 장애물 접근성 종합 평가리스트(안)

구분	설치원칙	유형	의무 기준
접근로	주출입구와 연결되는 접근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 가능한 형태여야 함	유효폭	2m 이상(최소 1.2m)
		기울기	진행방향 기울기 1/180이하(최소 1/12)
			횡방향 기울기 1/25
		보행안전지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m 이하에 장애물 없음
			연석높이 25cm이하
		바닥마감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m까지 가지치기
			우천시 미끄럽지 않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으며, 틈새 없이 평탄
출입구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모든 이용객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함	차량진출입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 설치하되,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
			보도의 높이를 위지, 차도 경계부분 턱 낮추기
		횡단보도	접근로와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 바닥마감 재의 색상 및 질감 구분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 경계 턱 낮추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 경사로 설치. 높이차가 2cm 이하
			횡단보도에 음향(진동)신호기 설치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이용객이 안전하게 차량에서	유효폭	출입구 중 1개 이상은 휠체어, 유모차 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
		터크 낮추기	출입구 통과 유효폭은 최소 0.8m 이상 확보, 유효높이 최소 2.1m
		진출입통제	바닥면은 높이 차 없이 (최소 2cm) 이하 수평으로 접근 *2cm 이상 높이차 발생시, 기울기는 1/12 이하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이용객이 안전하게 차량에서	설치위치	진출입 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0.8m~1m 내외, 지름은 10cm~20cm 내외
			휠체어 사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이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은 짧은 경로와 위치에 설치

구분	설치원칙	유형	의무 기준
주차장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함.	주차공간의 형태	주차구역 최소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 확보 바닥면은 승하차에 지장이 없도록 2cm 이하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주차장 안내표시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입간판 높이 1.5m 설치)
		보행안전통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해수욕장의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는 높이차이 없애고, 유효폭 1.2m 이상
무장애 보행로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장애인 유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배려	무장애 보행로의 지정	주변의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 까지 가지치기
		유효폭	최소 통화 유효폭 1.2m 이상의 무장애 보행로 확보
		기울기	진행방향 기울기는 최소 1/18 이하
		노면의 마감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시각장애인용 마감재	무장애 보행로 양 측면에 경계용 공간을 두어 시각장애인 및 모든 사람의 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시각장애인에게 보행로 경계를 경고, 안내를 위해 바닥재의 질감 등을 구분
계단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계획되어야 함	구조	계단 높이 1.8m 이내마다 폭 1.2m 이상의 휴식참을 설치
		유효폭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
		손잡이	계단 측면에 반드시 연속하여 손잡이 설치 손잡이 높이는 0.85±5cm
		재질 및 마감	계단코에 줄눈 넣기 혹은 미끄럼방지재로 마감
		계단의 식별	계단코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구분
		디딤판과 철크면	계단에 반드시 철크면 설치

구분	설치원칙	유형	의무 기준
계단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계획되어야 함	디딤판과 철타면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철타면의 높이는 0.18m 이하 철타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 계단코는 3cm 이상 돌출하지 않도록 함
경사로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져야 함	형태 및 유효폭	최소 유효폭 1.2m 이상 확보 시작과 끝 지점, 방향전환지점은 1.5m 이상의 활동 공간 필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위한 휴식참 설치
		기울기	1/12 이하
		손잡이	경사로 길이 1.8m 이상 또는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0.15m 이상이 경우 양측면에 연속된 손잡이 설치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에 0.3m 이상의 수평 손잡이 연장하여 설치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5cm 이내, 손잡이 지름은 3.2cm~3.8cm 이내
		재질 및 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화장실	접근 불가능한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가 외출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므로,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핵심시설임	설치장소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보행통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함 일반 화장실과 근접하거나 함께 설치
		바닥마감	화장실 바닥면에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됨
		출입문	화장실로 연결되는 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은 0.8m 이상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안쪽으로 개폐할 수 있음
			출입문에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춘
		대변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녀 각각 1개 이상 설치

구분	설치원칙	유형	의무 기준
화장실	접근 불가능한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가 외출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므로,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핵심시설임	대변기	대변기는 양변기 형태, 바닥 부착형인 경우 변기 전면트랩부분에 휠체어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로 설치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0.4~4.5m 이내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은 폭 1.4m 이상, 길이 1.8m 이상 되도록 설치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해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대변기 전면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손잡이	대변기 양 옆에 수직 및 수평 손잡이 설치 하되, 수평 손잡이는 양쪽에 설치하고 수직 손잡이는 한쪽에 설치
			수평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0.7m, 한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 설치
			수직 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
		소변기	소변기 양 옆에는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수평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 내외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1.2m,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세면대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는 바닥면으로부터 상단 높이 0.85m 이하, 하단 높이 0.65m 이상의 위치에 부착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구분	설치원칙	유형	의무 기준
화장실	접근 불가능한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가 외출을 못 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므로,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핵심시설임	세면대	수도꼭지는 누름버튼식, 레버식, 또는 광감지식과 같이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해야 함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해야 함
		안내표시	일반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녀 구별이 가능한 점자 표지판 부착 벽면 점자표지판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 질감 등 구분
		보조의자 (권장사항)	필요시 물건을 올려둘 수 있는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보조의자를 휠체어의 활동범위에 제약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
		영유아 거치대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신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
안내 표지	안내표시는 모든 이용객의 원활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함임. 특히 모든 산책로, 시설 등에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함	설치방법 (권장사항)	공원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유도 신호장치 설치 가능
		조명 (권장사항)	안내판에 조명을 설치
		표시방법 (권장사항)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움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음성안내, 점자안내, 촉지도 안내 등을 설치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 안내판 (권장사항)	주요시설의 위치를 점자·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m~1.2m범위 안에 위치하도록 설치
		경고장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안내방송 및 음향 경보장치가 있어야 함
		정보제공	안내책자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여부 및 안내책자 제공 여부 안내원 또는 직원 중 1명 이상 수화사용가능자 유무, 지역의 수화통역센터와 연계 서비스 제공 여부

구분	설치원칙	유형	의무 기준
손잡이	손잡이는 추락 등을 방지하는 안전 시설임	설치방법	손잡이는 반드시 연속되도록 설치 계단, 경사로 등 바닥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시작과 끝지점에서 최소 길이 0.3m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설치 벽면 부착의 경우 벽과 손잡이 사이 간격은 5cm 이상 *손잡이가 끊어진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매우 신중히 설치
		설치 형태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 \pm 5\text{cm}$로 해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해야 함
		점자 표시	손잡이 시작과 끝부분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요부분에는 손잡이 상부면에 점자안내 표시를 함
시각 장애인 점자 블록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방향을 유도하거나 위험 등을 알려주는 주의 환기용으로 적합함. 그러나 무조건적인 점자블록의 설치보다는 바닥 재질, 색상, 질감 차이 등으로 점자블록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점자블록 형태	황색을 원칙으로 하되, 바닥재 색상이 황색 계열일 경우에는 명도의 차이가 크고 구별하기 쉬운 색으로 함 점자블록은 $0.3\text{m} \times 0.3\text{m}$ 크기를 표준형으로 함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함 점형블록의 돌출점의 높이는 $0.6 \pm 0.1\text{cm}$로 하며, 선형블록의 돌출선의 높이는 $0.5 \pm 0.1\text{cm}$로 해야 함
		설치방법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 설치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해야 함 주의환기용 점형 블록은 방향전환 지점, 위험물 주변, 계단 등의 시작과 끝지점, 승강기 조작판 전면, 화장실 전면 0.3m에 설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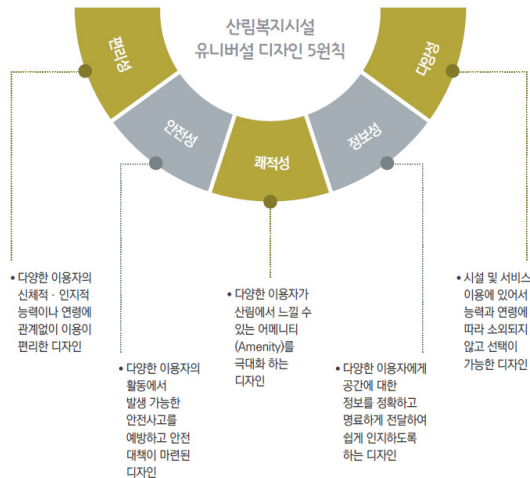
구분	설치원칙	유형	의무 기준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해야 함
휴게 공간	산책로, 광장 주변의 적합한 위치에 노인, 장애인 등을 배려한 벤치 설치 필수적임. 야외 탁자의 설치 장소와 구조는 휠체어 사용자와 노인, 어린이가 이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함	휴게시설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위치와 구조에 야외탁자를 설치하여야 함
		휴게의자 (권장사항)	의자 바닥의 높이는 0.4m로 할 수 있고, 발이 닿는 위치가 평탄하고 주변과 같은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
공중 전화	공중전화를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청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 임. 언어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 고려 필요	설치방법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 전화부스 설치시, 보행로와 높이차이 제거
		형태	공중전화기의 동전 또는 전화카드 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1.4m 범위
		활동공간 (권장사항)	내부 폭 0.9m 이상, 깊이 1.4m 이상을 확보
		기타설비 (권장사항)	지팡이, 목발 이용자 등이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수직 및 수평 손잡이 설치
음료대	노인,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등은 높게 설치된 음료대에 접근과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치, 구조를 결정해야 함	음료대 형태	분출구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8m 이하
		활동공간	음료대 전면은 휠체어 회전이 가능하도록 1.5m×1.5m 이상 공간 확보
기타		비치용품	입구에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유모차 등 대여여부

- 주: 1) 위 표는 서울특별시(2016)을 기반으로 한국관광공사(2010), 한국소비자원(2016) 통계청(2016), 캘리포니아 주 휠체어 사용자 가이드(검색일: 2019. 3. 15.)를 반영하여 하나의 표로 작성함
 2) 국외보다 우리나라의 기준이 더 구체적이어서 해외 기준이 우리나라 기준에 모두 포함됨

2) 산림복지시설 포용성 평가

산림을 대상으로 한 포용성 평가진단 체계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이 있다.⁵⁰⁾ 이는 산림복지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지침이다. 이 매뉴얼은 사회적 약자(장애우,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를 포함한 모든 이가 산림복지서비스의 수혜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체크리스트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정보성, 다양성으로 두고 산림복지시설을 공간특성과 기능에 따라 6가지 공간유형(진입 및 종합 안내시설 공간, 데크로드 및 산책로, 야외활동 공간, 체험시설 공간, 숙박시설 공간, 보차혼용 내부동선)별로 분류해 사용자가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4-3〉 산림복지시설 평가기준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2015, p. 11.

50) 산림청 보도자료(검색일: 2019. 7. 7.)

〈표 4-4〉 산림복지시설 공간유형 및 평가항목

구분	내용
공간유형	진입공간 및 종합안내시설, 데크로드와 산책로, 야외활동공간, 체험시설 공간, 숙박시설공간, 보차혼용 내부동선
평가항목	폭, 안내시설, 정보안내, 공간안내, 이동 동선 등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2015, p. 17.

3) 해양관광지와 친수공간 포용성 평가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한 포용성 진단 연구는 전무하며, 해양관광지와 친수공간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해수욕장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평가는 해양성 여가활동 및 친수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⁵¹⁾ 평가의 목적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약자가 친수 여가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6가지 이슈별(쾌적하고 편리한 이용, 접근 용이성 및 보행 연속성, 안전 및 시설관리, 관광자원의 자원경관, 관광자원의 매력 요인, 지역사회 참여 및 지속발전 가능성)로 시설 설치 유무, 공간 확보 여부, 정보 제공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4-5〉 해수욕장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Ver. 1.0)

이슈	잠재적으로 유용한 지표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	종합안내판은 다국어 표기, 이동약자를 위한 경로안내, 주요지점의 거리 등이 친절하게 제공되어 정보입수가 용이한가?
	장애인 유영구역이 설치되어 있는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장애인화장실은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51) (재)부산디자인센터·경성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2010), pp. 5~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p. 166.

이슈	잠재적으로 유용한 지표
	필요에 따라 성수기에는 충분한 수의 임시화장실이 운영되고 있는가?
	햇볕을 피해 쉴 수 있는 충분한 그늘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음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청결히 운영되고 있는가?
	발에 묻은 모래를 씻어낼 수 있는 세족장이 설치되어 있는가?
	어린이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는가?
	가까운 곳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는가?
	관광안내소(외국인 및 긴급상황 대응 가능)가 운영되고 있는가?
	해수욕 차림에도 위화감 없도록 주변환경(주변도로와의 거리 확보, 방사림 기능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는가?
접근 용이성 및 보행 연속성	해수욕장 인근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는가?
	충분한 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확보되어 있는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해변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나 슬로프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보행로는 이동약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원만한 통행이 가능한가?
	이동약자가 해변으로 접근 가능한 슬로프와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는가?
	슬로프와 접근로에는 이동약자를 배려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안전 및 시설관리	접근로는 장애인 유영구역으로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해변과 연속되는 경로 바닥면이 미끄러지기 어려운 소재로 되어있는가?
	해일, 태풍 등에 대비한 시설과 대피로가 명확히 전달되고 있는가?
	이안류와 파도, 해파리 등에 대한 위험 예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가?
	필요에 따라 깃발, 부표 등으로 유영가능지역을 나타내고 있는가?
	필요에 따라 만조시간과 간조시간 등의 공지사항이 전달되고 있는가?
	구조장비는 눈에 띄는 곳에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비치되어 있는가?
	응급구조센터가 눈에 쉽게 띄는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감시탑은 고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도 매력적인 형태인가?
	감시탑은 해수욕객의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가?
	유영구역과 레저장비사용 지역이 명확히 분리되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는가?
	야간 조명시설은 고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경관기능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가?
	쓰레기통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화장실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해수욕장 종합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가?

이슈	잠재적으로 유용한 지표
관광자원의 자연경관	천연자원과 지형을 살린 고유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가?
	자연경관 속의 조망과 휴식이 가능한 분위기인가?
	해수욕과 해양레저 활동에 적절한 수질이 유지되고 있는가?
	과도한 정비, 난개발 등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있지 않은가?
관광자원의 매력요인	지역의 개성이 나타나는 풍물 경험이나 주변의 연계 관광자원이 있어서 오락성이 풍부한가?
	다양한 방문객의 특성과 기대에 대응 가능한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각종 편의시설물들의 외관은 매력적이고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인가?
지역사회 참여 및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주민은 해당 관광자원으로 인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가?
	관리자는 비수기에 대응한 사계절형 상주운영체제를 유지하는가?
	재방문 유도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 방문객 만족도 유지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외부 이용객으로부터의 개선사항, 의견 수렴을 위한 관리자 대화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자료: (재)부산디자인센터·경성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 「해양 관광지과 친수공간 여가활동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2010, pp. 5~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해양과학생물디자인 육성을 위한 해양 디자인클러스터 구축사업」, 2011, p. 166.

또한, 이호승 외(2018)⁵²⁾는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수변활용형 관광레저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서 교통약자의 접근성은 휠체어 이용자가 원만한 이동과 시설 이용의 접근 정도를 의미한다. 대상 시설은 부산의 수변활용형 관광레저 시설 즉, 관람체험 시설, 해수욕장, 마리나·수상스포츠 시설, 해변산책로·해양공원, 강·하천 등이다. 현장 조사를 위한 경로 설정은 크게 매개시설·보행연속성, 유도·접객서비스, 관람·편의시설, 위생시설 경로와 그에 따른 세부시설로 구분하였다.

장소별 접근성 평가내용은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등에

52) 이호승 외, 앞의 책, pp.11~13.

기초하여 자체 개발한 ‘수변활용형 관광레저 시설의 교통약자 접근성 조사표’에 따른다. 이 내용은 방문지 도착 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의 매개시설에 대한 접근성부터 관광행동을 위한 경로 이동, 안내 및 관람, 편의,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이르기까지 시설 구분에 따른 대항목 7개, 그 하부의 세부 접근성 평가항목 20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4-6〉 수변활용형 관광레저 시설의 교통약자 접근성 조사표

대상지명	조사일지		
■ 적합도 평가기준: ⑤ 매우 편리 ④ (규격준수)관리 ③ (규격준수)보통 ② (규격미달)불편 ① (미설치)매우 불편 ■ 대상지의 특성상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③ (규격준수)보통'을 부여			
시설구분	시설별 세부 접근 편의성 평가지표	편리 ◀ 적합도 ▶ 불편	취득/배점
(A)주차장	①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공간 및 크기 (1대 주차 기준 폭330cm/길이500cm 이상, 평행주차형식: 1대 주차 기준 폭 200/길이600cm 이상)	⑤-④-③-②-①	/ 10
	②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표시 및 접근성 위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유도표지판, 건축물 출입구/승강기 근접 위치)	⑤-④-③-②-①	
(B)접근로/ 진출입구 (경사로, 현관) 통로(복도)	③차도와 분리된 안전한 접근경로 (장애인주차공간에서 건물 진출입구 또는 옥외시설까지의 연속성, 경로 상의 단차·과도한 횡단경사·설치물·비포장 등 보행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 유효폭 120cm 이상)	⑤-④-③-②-①	/ 20
	④휠체어 등판가능 종단경사 (수평면 기준 경사5° 이하, 필요시 중간 수평 구간(침) 확보/벤치 설치)	⑤-④-③-②-①	
	⑤휠체어 통행가능 진출입구/현관 (지면과 같은 높이의 출입구, 계단외 경사로 설치(경사 5° 이하, 폭 80cm 이상), 회전문 단독 설치가 아닐 것)	⑤-④-③-②-①	

시설구분	시설별 세부 접근 편의성 평가지표		편리 ◀ 적합도 ▶ 불편	취득/배점	
	⑥휠체어 교차통행 통로 공간 확보 (폭130cm 이상)		⑤-④-③-②-①	/ 20	
(C)계단	⑦핸드레일 설치		⑤-④-③-②-①		
	⑧디딤판의 미끄럼 방지소재 및 시인 성을 위한 표면처리		⑤-④-③-②-①		
(D)승강기	⑨휠체어 출입구(폭80cm 이상)		⑤-④-③-②-①		
	⑩휠체어이용자용 조작반 설치(앉은자세 에서 조작 가능 범위)		⑤-④-③-②-①		
(E)안내시설	⑪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안내소의 데스크 (설치 높이, 발공간 깊이 확보)		⑤-④-③-②-①	/ 15	
	⑫시설안내판 설치		⑤-④-③-②-①		
	⑬시설 및 종사자의 장애인 대응 능력 (교 육 프로그램, 전담인력, 대여용 휠체어 비치 등)		⑤-④-③-②-①		
(F)관람시설/ 편의시설	⑭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전시대(설치높이, 체험형 전시일 경우 무릎 및 휠체어 발판 공간 확보)		⑤-④-③-②-①	/ 20	
	⑮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매표기(설치높이, 발공간 깊이 또는 앉은 자세에서 조작 가 능 범위)		⑤-④-③-②-①		
	⑯	실내시설	휠체어가 통행 가능한 관 람물의 배치 동선, 간격		⑤-④-③-②-①
		옥외시설	휠체어 접근로 설치(모래 사장, 균일하지 않은 노면 상태의 경로에 설치)		
	⑰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벤치, 테이블, 자 판기(⑮번 내용 준용)		⑤-④-③-②-①		
(G)위생시설 (화장실)	⑱다목적기능 화장실 설치(휠체어 회전 내 부 공간, 손잡이 설치, 미닫이 /박여닫이 문, 선반)		⑤-④-③-②-①	/ 15	
	⑲휠체어통행 경사로 설치(⑤,⑨번 내용 준용)		⑤-④-③-②-①		
	⑳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세면기(상단높 이: 85cm 이하, 하단높이: 65cm 이상)		⑤-④-③-②-①		
				/ 100	

자료: 이호승 외, 「수변활용형 관광레저 시설의 접근성 실태파악과 개선방향 연구」, 2018, p. 66.

3. 해수욕장 포용성 평가 방향

1) 해수욕장 포용성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

이 연구에서 해수욕장 포용성 실태를 확인한 결과 해수욕장 포용성 유지·증진을 위해서는 바다·백사장과 배후공간의 물리적, 환경적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약자는 연안공간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동과 활동 측면에서 접근성과 지원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접근성이란 사람들이 바다에 가기 위한 도로 등의 물리적 접근성과 함께 백사장 혹은 물놀이 구역에서 휴식을 취하고 관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해양활동의 특성상 약자가 물놀이 혹은 백사장 접근을 위해서는 타인(장애를 가진 이용객의 동반 가족과 안전 요원 등)의 도움이 필수적임을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수욕장 포용적 측면의 필요 사항 및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바람직한 모습에 비추어서 현재 해수욕장의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 어떤 부문에서 이상적인 모습과 차이가 벌어지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현안이 정확히 진단되어야 해결을 위한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안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포용성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해수욕장 공간 특성

해수욕장 포용성 진단을 위해서는 연안공간의 특성과 현안을 토대로 우선 공간 특성별로 구분하여 점검할 항목을 도출하여야 한다. 해

수욕장은 공간특성과 기능에 따라 바닷물이 존재하는 “바다(해양공간)”, “바닷가(백사장 등)”, “배후공간”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바닷가는 파도와 조석에 따라 다양한 지형(경사도 등)과 재질(모래, 갯벌, 자갈 등)로 구성된다. 바다와 바닷가의 공간 특성(생태·환경), 바다에 이르는 접근성, 바다와 교통 거점 사이의 접근성, 해양활동을 지원하는 편의시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림 4-4〉 해수욕장 공간의 물리적 특성



- Swash zone : 파도에 상시 노출
- Beach Face : 낮은 모래 언덕의 경사진 공간
- Wrack Line : 파도에 의해 유기물 혹은 무기물이 퇴적되는 공간으로 알갈 조석이 가장 높은 공간
- Berm : 극도로 높은 파도와 폭풍우를 제외하고는 건조한 공간으로 모래 언덕이 존재

자료: 위키피디아(검색일: 2019. 7. 8.)

(2) 해수욕장 이용자 유형별 특성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약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약자는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

는 특성이 있는 반면 각각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사회약자 유형별 특성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정리된 바 있으며 이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를 토대로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에서는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이 곤란한 경우로 단차나 계단이 있을 경우, 통행로 폭이 좁을 경우, 측면이동의 경우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수욕장과 같은 연안공간은 휠체어가 지나는 표면의 재질의 상태에 따라서도 통행이 곤란할 수 있다. 즉 해수욕장을 구성하는 공간의 속성인 퇴적물의 재질, 경사, 폭, 수심 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표 4-7〉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주요 이용자 특성

유형	특성
노인	• 먼 거리를 이동하기 힘들다. • 걷기가 힘들어서 지팡이나 보행보조기와 같은 보조장치에 의존하기도 한다. • 안내 사인이나 책자 등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렵다. • 보통의 볼륨으로 소리를 인식하기 어렵다. • 빠른 속도의 말을 이해하기 곤란하다. •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증가한다. •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를 이해하기 힘들다. • 자신의 의사를 조리있게 전달하지 못한다.
보행곤란자	• 지팡이나 목발의 사용으로 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의 개폐 등이 곤란하다. • 지팡이나 목발 사용자는 바닥면의 흠, 틈새, 문턱 등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다. • 지팡이 사용자는 심한 경사로에서 넘어지기 쉽다. • 손이 닿는 범위가 좁고 아래 물건을 잡기가 곤란하다. • 무릎 위에서부터 의자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똑바로 버티고 있기 힘들기 때문에 경사로를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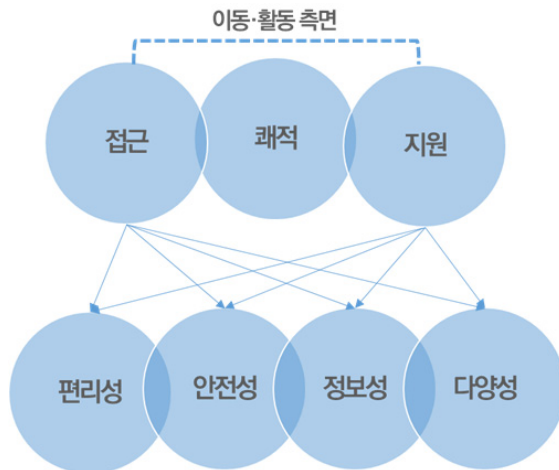
유형	특성
휠체어 사용자	• 이동 경로 내에 단차, 계단이 있을 경우 통행이 곤란하다. • 폭이 좁은 통로에서는 통행이 곤란하다. • 휠체어로는 측면이동이 곤란하다. • 휠체어에 탄 채로 접수대 등에 접근하기 어렵다. •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에 손이 닿지 않는다. • 시선의 높이가 비장애인 성인에 비해 낮다. • 선체로 말하면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을 줄 경우가 있다.
시각장애인	•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 손이나 지팡이가 닿는 범위 밖의 것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형태, 위치 식별이 곤란하다. • 계단을 오르다가 치수가 변하면 혼란이 생기고, 나선형 계단에서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다. • 수직이동 시 유도블록이나 핸드레일이 없으면 경사의 시작이나 끝부분을 인식하기 곤란하다. •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은 유도블록이 끊겨져 있으면 길 찾기가 곤란하다. • 방향안내 사인을 볼 수 없어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곤란하다. • 약시자는 계단이나 단차를 파악하기 어렵다.
청각장애인	• 소리에 의한 안내나 정보 입수가 어렵다. • 전화를 이용한 원거리 통신에서는 대화를 할 수 없다. • 실시간 정보나 긴급 상황을 알리는 음성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 • 외모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청각장애인끼리는 수화나 상대방의 입모양을 읽어서 의사소통한다. •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곤란하다. •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보청기를 사용해도 잘 들리지 않는다.
영유아, 어린이 및 동반가족	• 수유하거나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불편하다. • 유모차를 끌거나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며 자녀의 행동을 항상 살펴야 한다. • 유아동반자는 때로는 유아를 안거나 업어야 하므로 피곤해지기 쉽다. • 어린이는 주의력이 부족하고 호기심 때문에 아무 것이나 만진다. • 어린이는 키가 작아서 어른 키에 맞춰진 시설물의 정보를 읽을 수 없다. • 어린이는 힘이 약해서 출입구의 개폐 등이 곤란하다. • 어린이는 어렵거나 추상적인 개념의 문자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 2013, pp. 17~26.에 제시된 내용의 일부를 표로 정리함.

2) 해수욕장 포용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해수욕장 포용성 진단을 위한 분석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산림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⁵³⁾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공간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체크하는 것으로 연안공간 특성을 고려한 포용성 진단 평가항목과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용성 평가항목은 공간별 접근성, 쾌적성, 지원성과 편의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편리성, 안전성, 정보성, 다양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림 4-5〉 해수욕장 포용성 평가기준



자료: 저자 작성

이 연구에서 기초적인 수준으로 해수욕장의 세부공간을 바닷물이 존재하는 “바다(해양공간)”, “바닷가(백사장 등)”, “배후공간”으로 구분

53) 국립산림과학원(2015), p.43~51.

하고 세부 공간과 관련한 시설을 목록화하고, 공간과 시설의 포용성 진단을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배치하여 체크리스트(안)를 작성하였다. 해수욕장에만 있는 공간 유형인 바다와 바닷가에 대한 평가항목은 이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반면, 배후공간에 대한 포용성 평가항목은 제4장에서 분석한 타 분야 유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평가항목을 활용하였다.

해수욕장의 바다와 바닷가 포용성 평가항목은 <표 4-8>과 같다. 바다의 물놀이 구역의 경우 평가항목으로 안내시설, 위치/진입, 활동과 관련하여 정보성, 안전성, 다양성, 지원성이 평가되어야 하고, 바닷가의 경우 진입로, 사인시설, 종합안내시설, 산책로, 접근로별 안내시설, 폭, 구간, 경사, 바닥재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이용성 보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및 산림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해수욕장 시설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포용성 평가항목은 해수욕장 관리·운영 시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향후 포용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8> 해수욕장의 바다·바닷가 포용성 평가항목(안)

공간 유형	세부공간	평가항목	평가기준	요구사항
바다 (해양 공간)	물놀이구역	안내시설	정보성	식별이 잘 되고 내용을 알아보기 쉬운가?
		안내시설	정보성	필요에 따라 깃발, 부표(유영가능구역부표, 안전부표) 등으로 물놀이 구역을 나타내고 있는가?
		위치/진입	안전성	물놀이구역과 레저장비 활용 공간이 분리되어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가?
		위치/진입	안전성	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안전한가?

공간 유형	세부공간	평가항목	평가기준	요구사항
바다 (해양 공간)	물놀이구역	위치/진입	접근성	물놀이구역 이용을 위한 위치 및 진입에 있어서 편리한가?
		위치/진입	다양성	장애인, 유아, 노인 등이 이용가능한 유영구역 등 선택의 다양성이 있는가?
		활동	지원성	다양한 이용자의 해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활동	지원성	다양한 이용자 특성별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있는가?
바닷가 (백사장 등)	진입로 (배후공간 ⇒백사장)	안내시설	정보성	식별이 잘 되고 내용을 알아보기 쉬운가?
		폭	편리성	차량 및 보도로 이동하기 불편함이 없는가?
	사인시설	정보안내	정보성	이용자에게 공간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공간안내	정보성	안내 표시가 식별이 잘되고 보기 편한 위치에 있는가?
	종합안내 시설	진출입	편리성	종합안내시설은 접근이 편리한가?
		안내시설	정보성	종합안내시설은 흥미있고 재미있는 설명을 제공하는가?
	산책로	안내시설	식별성	이동 동선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며 식별이 잘되는가?
		구간	다양성	자연형 산책로, 장애인, 유아, 노인 등이 이용가능한 산책로 등 선택의 다양성이 있는가?
		폭	편리성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폭인가?
		경사	편리성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기울기인가?
	접근로 (백사장⇒ 물놀이구역)	안내시설	정보성	동선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며 식별이 잘되는가?
		폭	편리성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폭인가?
		진입구간	편리성	장애요소가 없어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한가?
		경사	안전성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기울기인가?
		바닥재	안전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바닥재인가?

3) 해수욕장 포용성 평가 근거 마련

이 연구를 통해 마련한 해수욕장에 대한 포용성 평가항목은 해수욕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해수욕장 평가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해수욕장 평가는 해수욕장법 제39조에 따라 시행하며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표 4-9〉 해수욕장 평가 개요

구분	세부 내용
평가 근거	해수욕장법 제39조
평가 목적	- 해수욕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 - 관리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관리체제 구축 유도
평가 주체	해양수산부
평가 항목	1. 해수욕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 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및 구조·구급 등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배사장 및 해수욕장의 수질 등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접근성,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성 및 해수욕장 사용료의 적정성 5. 해수욕장과 연계된 관광레저프로그램의 우수성 6. 해수욕장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 내용	평가 분야 : 관리우수, 시설개선우수, 으뜸 해수욕장으로 구분하여 선정 평가 기준 : 우수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시설관리 및 운영현황, 안전 및 환경 관리현황, 이용객 편의·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
지원 사항	- 으뜸 해수욕장 : 개소당 2천만 원의 예산 지원 - 관리우수 해수욕장 : 잔여 예산을 정책으로 나누어 지원 - 시설개선우수 해수욕장 : 해당 기관에게 상장과 포상금 지급

주: 평가내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3 참조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

현재는 해수욕장 평가항목에 사회약자의 접근성과 이동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수욕장의 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별도의 평가체계를 시행하는 방안과 현재 시행 중인 해수욕장 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평가의 중복성, 시간과 예산 여건, 제도 신설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의 해수욕장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3절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1. 사회약자 관련 법률 개선사항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개선은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약자 관련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편의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에 해수욕장과 같은 연안공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편의시설 설치 대상 공간의 하나로 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해수욕장은 해당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의 하나로 해수욕장 또는 해수욕이 가능한 바닷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표 4-10〉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사회약자 관련 법률 개선사항

구분	주요 이용·관리수단	개선방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편의시설 설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 편의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에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 포함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중 공원의 하나로 바닷가 혹은 해수욕장 포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서비스 - 보조기기 센터	- 보조기기 종류에 해수욕장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포함 -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의 하나로 포함
장애인복지법	-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해수욕장 지원 인력 보유와 파견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는 보조기기 종류에 해수욕장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기(해변용 휠체어 등)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해수욕장에서 이동과 활동을 돕는 기기가 포함될 경우 장애인, 노인 등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2. 해수욕장 조성 및 관리 관련 법률 개선사항

「연안관리법」에서는 연안관리에서 기본원칙의 하나로 포용성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해수욕장의 포용성 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안재해 예방, 친수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에 포용성을 증진하는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연안정비사업에서 포용성 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

법으로는 연안정비사업 선정기준에 포용성 증진 관련 항목 포함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법률인 해수욕장법에서는 해수욕장 구역 세분 시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의 해수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백사장과 수면의 자연조건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구역을 포용성 관점에서 세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 해수욕장 대상 포용성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열린관광지 사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해수욕장법에 근거하여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평가는 기존 해수욕장 평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포용성 관련 항목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의 접근·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4-11〉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연안공간 조성 관련 법률 개선사항

구분	주요 이용·관리수단	개선방향
연안관리법	- 연안정비사업	- 연안관리에서 기본원칙의 하나로 포용성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해수욕장의 포용성 평가를 위한 근거 마련 - 포용성을 고려한 연안정비사업 추진 - 연안정비사업 선정기준에 포용성 증진 관련 항목 포함 - 해수욕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수욕장에 대한 포용성 증진 사업 추진
해수욕장법	- 해수욕장 구역 세분	- 해수욕장 구역 세분 시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의 해수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구분	주요 이용·관리수단	개선방향
해수욕장법	- 해수욕장 시설 설치	- 전국 해수욕장 대상 포용성 증진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해수욕장 평가와 지원	- 해수욕장 평가체계에 포용성 관련 항목 포함 - 포용성 측면에서 우수한 해수욕장에 대한 재정 지원 -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의 접근·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지원 근거 마련
항만법	- 항만개발사업 - 항만시설(친수시설) 설	- 친수시설 설치기준에 포용성 관련 항목 포함
어촌어항법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항개발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선정과 추진 시 포용성 고려
관광진흥법	- 관광지 지정 - 관광지 개발	- 연안공간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관광지에 대한 개발에서 포용성 증진 고려

3. 관련 지침 등 제정

1) 지침 제정 방향

해수욕장(백사장)에 설치되는 접근시설 기준 정립 필요하다. 현재는 백사장 접근시설이 편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각기 다른 재료, 방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목재를 이용한 고정식 데크를 설치하였고 송도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에는 카펫 등을 이용한 비고정식 접근로를 설치하였다. 또한 광안리에는 햇빛을 가리는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송도해수욕장에는 백사장 진입하는 입구에 장애인 탈의장이 설치되어 있다.

부산의 해수욕장 사례와 같이 해수욕장에 설치되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은 모두 제각각이다. 향후 전국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

으로 접근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대비하여 가칭 ‘해수욕장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해수욕장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관리 기준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

〈그림 4-6〉 부산 주요 해수욕장 Access board 현황

해수욕장	접근시설 설치 모습	
해운대		
	Access board 접근로	목재 Access board
송도		
	Access board와 탈의실	
광안리		
	Access board	보행약자 쉼터 및 안내표지판

자료: 저자 촬영. 단 송도해수욕장 자료는 송도구청에서 제공 받음

2) 국외 사례

‘해수욕장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외의 우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와 키프로스(Cyprus) 섬 등지의 해수욕장에는 휠체어 산책 해변로, 호이스트 구비 수영장과 같은 휠체어이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합레저시설이 활성화 되어 있다. 특히 교통약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해수욕장에 입수 가능한 레일구조의 경사로(Seatrack. 그리스 특허)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4-7〉 해수욕장 입수 레일 경사로(Seatrack)



자료: 아키텍처 홈페이지: 이호승 외(2018), p. 46에서 재인용

〈그림 4-8〉 휠체어 입수 해수욕장 경사로(그리스, Sirenis 리조트)



자료: disabledaccessholidays 홈페이지: 이호승 외(2018), p.46에서 재인용

해수욕장과 수변공간에 설치하는 접근로는 설치 목적과 장소의 노면 특성에 따라 즉시 설치가 가능한 롤(roll) 구조의 가변식과 견고한 판재 소재로 된 고정식 접근로가 있으며, 해수욕장 모래사장과 돌, 수풀로 조성된 수변공간에서 휠체어와 유모차의 이동경로 제공, 이벤트 공간 설치, 운반용 카트의 이동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4-9〉 가변식 접근로 설치 사례(Access Rec사)



자료: accessrec 홈페이지; 이호승 외(2018), p. 54에서 재인용

〈그림 4-10〉 고정식 접근로 설치 사례(Kite Beach, Dubai)



자료: 더 네셔널 홈페이지; 이호승 외(2018), p. 54에서 재인용

제4절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1.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의 재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히 사회약자 관련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해수욕장과 같은 연안공간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재정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는 민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기금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에서 필요한 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자선기금 등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양관광 선진국에서는 자선기금을 통해 해양 및 수상레저에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4-11〉 휠체어 접근 가능 보트 1



자료: 리버풀 워터스포츠 홈페이지; 이호승 외(2018), p. 52에서 재인용

영국의 수상레포츠 전문 자선단체 ‘Liverpool Watersports Center’는 모든 사람들이 수상 스포츠에 접근 가능한 활동과 기회 제공을 목

적으로 기금을 모금하였다. 모아진 기금을 이용하여 휠체어이용자와 비장애인이 함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파워보트인 'Wheelyboat'를 개발하였다. 또한 영국의 자선기금 모금 활동 'RoRo Project'는 영국 내 6만 명 이상의 항해 욕구를 가진 장애인 수요자를 위해 휠체어의 접근성과 모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보트 제작을 추진하였다.

〈그림 4-12〉 휠체어 접근 가능 보트 2



자료: 아비바 홈페이지: 이호승 외(2018), p. 5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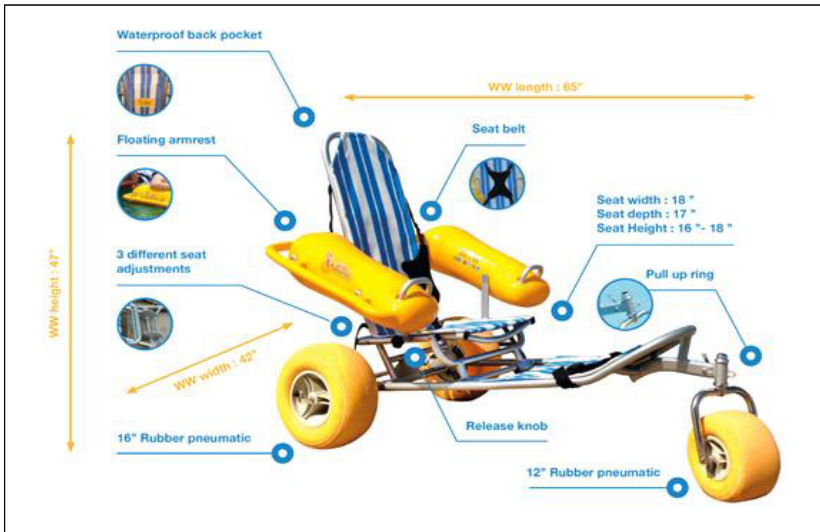
2. 한국형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정비 개발

해수욕장과 같은 연안공간에서 장애인의 이동과 활동을 돕는 각종 장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급되지 않아 주로 국외에서 수입하거나 품질이 낮은 국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분석하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시설과 장비를 개발하는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백사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 비치 휠체어는 수요가 많으면서도 고난이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비치휠체어는 해수욕장 모래사장이나 수변공간의

비포장 노면에서 바퀴가 빠지지 않고 주행 가능하도록 넓은 접지 면적의 바퀴가 장착된 휠체어이며, 수동식의 경우 구조적 특성상 보호자가 밀거나 당기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4-13〉 비치 휠체어(Access Rec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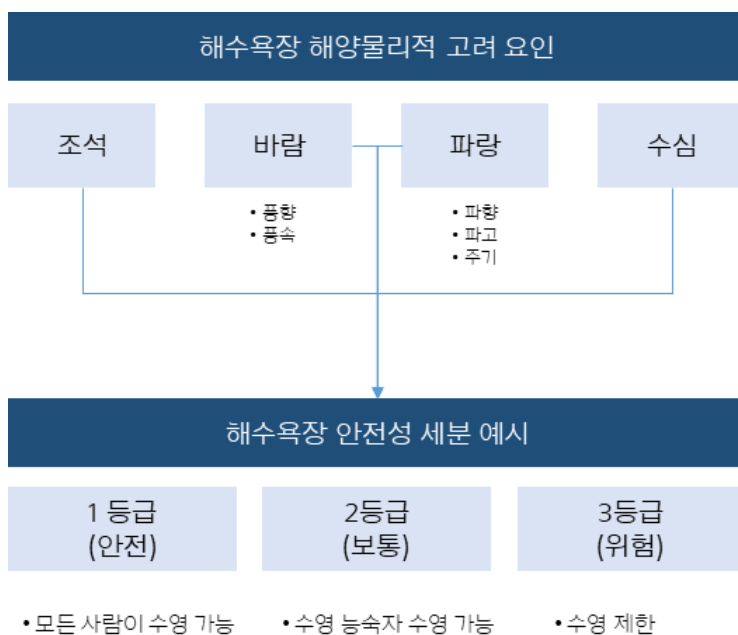
자료: accessrec 홈페이지; 이호승 외(2018), p. 55에서 재인용

3. 포용성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해수욕장의 특성 분석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은 바다의 영향이 없는 내륙과 다른 해양물리적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포용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수욕장에서 활동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수욕장의 해양물리적 특성 분석 결과는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구분하거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의 해양물리적 속성인 조석, 바람, 파랑, 수심 등을 분석·종합하여 해수욕장의 수면에서 해수욕의 안정성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래해변의 재질 속성인 퇴적물 유형, 분급도, 입경, 담수율 등을 분석하여 모래해변의 단단함 정도를 구분하고 단단함 정도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유형 선정, 설치 방식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4〉 해수욕장 특성을 고려한 공간 세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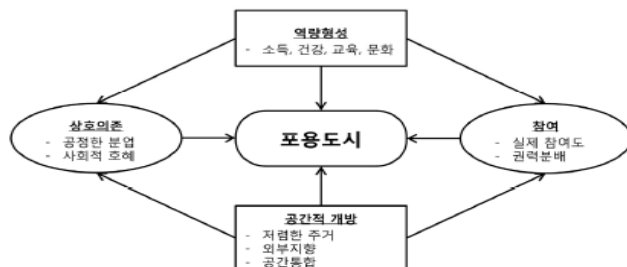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제5절 사회약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배제되었던 계층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포용도시 개념과 논의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포용’은 다양한 이유(인종, 젠더, 계층, 문화적 차이 등)로 사회에서 소외된 그룹이 기존의 사회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편입과정 자체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자체의 변화를 상정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데 있다⁵⁴⁾. 이런 이유로 포용도시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구축이 필요하다⁵⁵⁾.

〈그림 4-15〉 포용도시의 차원과 구성요소



자료: 박인권·이민주,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 한국의 포용도시 의제 설정을 위하여」, 『공간과 사회』, 제26권 제4호, 2016, p. 128.

박인권 외(2016)⁵⁶⁾는 한국형 도시포용성 지표체계 개발을 제안하면서 포용도시의 4대 차원의 하나로 참여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참

54) 김수진, 앞의 책, p. 18.

55) 임현목 외, 앞의 책, p. 43.

56) 박인권외(2016), pp. 131-132.

여는 여성, 장애인, 빈곤층, 청년 등 도시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사람들에게 권력을 분배하는 것과 시민사회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포용도시를 비롯하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 참여, 특히 그동안 배제되었던 사회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욕장의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과 관련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문정호 외(2016)⁵⁷⁾가 제안한 포용적 국토의 목표로 제시한 “권리증진과 행복추구로서의 참여약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4-12〉 포용적 국토를 위한 시민참여 관련 과제

핵심과제	세부 내용
정책, 계획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 정보 불평등 및 정보격차에 대해 기본적인 권리보장 및 포용적 사회(및 국토) 관점에서 대처 필요 • 정책대상은 전체적인 정보공유 체계에서는 특정되지 않지만, 보다 작은 공간단위에서의 지역공동체나 특수한 사회경제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보공유 체계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 • 세부 정책 목표는 정책대상 확인 및 실태 파악; 국토계획 및 정책과 관련된 사전 정보 공개 확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프로그램 확대;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국토계획 및 정책 수립 시 공공의 참여 확대 등임
공공계획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도화	• 도시계획 공람, 공청회 등 현재 시행되는 각종 참여제도는 다분히 요식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의 의미가 매우 미흡.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면 실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사회가 그 동력을 마련해 줘야 함 • 적용분야와 정책대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주로 도시정비사업 등 도시계획 영역에서 시범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차차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넓혀갈 수 있음 • 정책의 세부목표는 “평생, 지역공동체” 구축;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사업 모델 추진;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 및 권한 확대; 참여 거버넌스 조직·운영 및 실제 참여활동에 대한 물질적·행정적 지원 제도화 등을 포함

자료: 문정호 외(2016), pp. 요약 x~xi.

57) 문정호 외, 앞의 책, pp. 요약 x~xi.

포용적 국토를 위한 시민참여 관련 과제 중에서 “평생, 지역공동체” 구축,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사업 모델 추진,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 및 권한 확대, 참여 거버넌스 조직·운영 및 실제 참여활동에 대한 물질적·행정적 지원 제도화 등은 연안공간에서도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제6절 연안공간의 포용성 개념 정립 및 평가

이 연구는 연안공간의 하나인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수욕장에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약자가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배제되거나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연안공간도 많은 사람이 접근하고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포용성 수준을 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포용도시 등 포용성 관련 논의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욕장을 포함한 모든 연안공간은 정주공간, 휴식·관광공간, 생산·산업공간, 물류공간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내륙과는 다른 자연환경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때문에 포용성도 연안공간만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연안공간에 대한 포용성 개념을 정립하고 평가하는 것은 별도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연안공간의 포용성 개념을 정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연안공간의 범위와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1. 포용성 개념 정립을 위한 연안공간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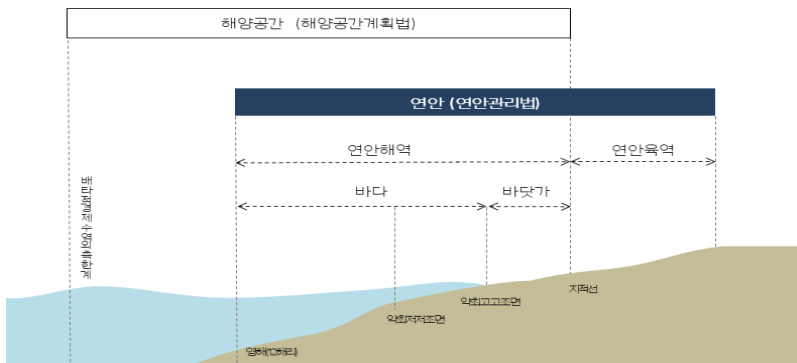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연안은 「연안관리법」에서 공간범위를 정하고 있다. 「연안관리법」에서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된다. 연안육역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1,000m 이내와 무인도서를 말한다. 연안해역은 바다와 바닷가를 말하는데 바닷가는 해안선(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의 사이를 말한다. 바다는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를 말한다.

〈표 4-13〉 연안관리법상 연안의 정의

구분		정의
연안	연안육역	-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1,000m - 무인도서
	연안해역	- 바닷가 : 해안선(약최고고조면)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바다 :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
해안	공간범위	- 간조선(약최저저조면)~지적선
	자연해안	-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 해안선이 유지되는 해안

자료: 「연안관리법」 제2조.

〈그림 4-16〉 연안공간의 범위와 구분



자료: 저자 작성

포용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연안공간은 기본적으로 연안관리법상 연안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포용성 관련 대상 공간은 일반 시민 접근성, 연안·해양관련 기관의 관리 등을 고려하여 연안관리법상 연안 중에서 일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연안공간의 포용성을 주제로 한다면 연안관리법상 연안 중에서 사람의 접근과 이용이 활발한 공간으로 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사람의 접근과 이용이 활발한 공간은 일반인들이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항만, 산업시설, 발전소 등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으로 포용성 관련 공간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누구나 접근은 가능하지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접근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자연상태의 연안공간도 제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일반인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연안·해양 분야가 아닌 국토·도시 등 타 분야에서 관리하는 공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같은 도시공간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국토·도시 분야의 법률과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 연구의 공간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타 분야에서 관리하는 공간이라도 연안·해양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2. 포용성 개념 정립을 위한 연안공간의 특성

연안공간은 기존 포용도시에서 대상 공간으로 다루는 내륙지역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포용도시 개념이나 포용적 국토 개념은 대부분 해양의 공간과 해양의 영향을 받는 바닷가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공간적 포용성의 목표가 주로 토지이거나 토

지에 기반하고 있고 바다와 같은 이질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연안공간의 특성은 대부분 수면이 있거나 수면의 직접 영향을 받는 공유수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남정호 외(2010)⁵⁸⁾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특성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유체 및 토지 속성, 둘째, 해양생태계 일부, 셋째, 공간 및 자원 측면, 넷째, 공유재 특성, 다섯째, 공공재 특성, 여섯째, 공공이익 창출기반이다. 공유수면의 특성을 종합하면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유재이면서 공유수면의 무형자원과 기능에 대해 경합과 배제가 없어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유수면은 토지와 유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공간과 자원으로써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근간이 된다. 예를 들면, 공유수면이 현재 수면이더라도 매립을 통해 토지를 조성할 수 있다.

〈표 4-14〉 공유수면의 특성

구분	세부 유형
유체 및 토지속성	• 바다와 바닷가로 구성 - 바다 :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 사이 - 바닷가 :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 • 바다는 유체 속성, 바닷가는 토지 속성을 지님
해양생태계 일부	• 해양생태계 :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 • 공유수면은 지구상 생태계 단위 중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서비스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임
공간 및 자원	• 사회경제적 이용과 개발 측면에서 공유수면은 ‘공간’이며 ‘자원’임 - 공간으로서의 속성 : 가용 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토지로 형질 전환하는 것 - 자원으로서의 속성 : 생물자원(수산자원), 관광자원, 해양에너지 자원, 광물자원, 신물질의 부존

58) 남정호·이윤정(2010), pp. 15~18.

구분	세부 유형
공유재	• 소유권이 특정한 법인격에게 귀속되지 않음 - 공유수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없었고, 법률에서 따로 소유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유가 아니라 관리 권한만 갖고 있음 • 가용한 자원과 공한이 유한하므로 증가하는 모든 사회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음
공공재	• 비경합성(non-competitiveness)과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을 가짐 - 유형자원(공간, 광물자원, 수산자원 등)에 대한 경합성이 있지만, 무형자원 및 기능(관광, 심미적 가치, 오염정화 기능, 생태계 기능 등)에 대해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음.
공공이익 창출 기반	•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유지, 보호,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자료: 남정호·이윤정, 「연안 공공이익 침해 방지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방안」, 2010, pp. 15~18.

내륙을 중심으로 하는 포용도시와 다른 연안공간의 포용성을 정의하고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특성은 토지와 다른 공유수면의 특성과 연안공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집단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공유수면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속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공공재와 공유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유수면이 어장 등과 같이 면허의 방식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공유수면이 매립을 통해 어느 개인에게 소유권이 부여되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매립된 토지의 분양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계층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제적 능력이 월등한 계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유수면이라는 공간 자체와 공유수면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특정한 소수가 배타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때 공유수면 공간과 서비스 측면에서 배제되는 계층은 포용도시에서 다루는 사회약

자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포용도시 개념은 모든 시민이 도시가 제공하고 기회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때 연안공간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약자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지역이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시민도 연안공간이 제공하는 기회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안공간의 포용성에 대한 배경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연안공간 전체에 대한 포용성 개념을 정립하고 연안공간이 제공하는 기회와 서비스에 대한 정의, 그동안 연안공간이 제공하는 기회와 서비스를 독점한 계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안공간의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해수욕장의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는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포용성 논의에서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이 포용성을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거나 일반시민에게 중요하지 않는 공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륙과는 다른 양상으로 포용성이 저해되는 이슈가 많다. 내륙과 다른 공유수면의 특성이 있는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약자의 전반적인 현황과 이동·활동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

아동반자 등 사회약자(교통약자)는 2017년 기준, 14,963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8.9%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사회약자의 비율이 높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포용성 관련 정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해수욕장에 대한 사회약자 이용실태는 부산시에 있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현장조사, 기존 문헌(보고서, 신문기사 등) 분석, 전문가 인터뷰, 위성영상을 활용한 GIS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에 비해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를 배려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이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장애인 화장실, 접근로 등이 설치되고 있으나 재질, 모양, 디자인 등이 제각각이다. 또한 물리적 편의시설은 설치되고 있으나 지원인력 등 비물리적 지원이 부족하고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수욕장의 지형적, 해양물리적 특성을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해수욕장 포용성에 관한 국내외 유사 개념을 살펴보았다. UN-Habitat가 제안하고 세계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는 ‘포용도시’ 개념과 포용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인 ‘공간적 포용(Spatial Inclusion)’ 개념을 주로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수욕장의 포용성은 공간포용성으로 한정하고 ‘해수욕장 공간과 자원이 제공하는 휴식, 레저, 치유 등의 서비스에 일반시민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국내 포용성 관련 제도는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약자 관련 법률, 「연안관리법」, 「해수욕장법」 등과 같은 해수욕장 조성관리 관련 법률 등을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사회약자 관련 법률, 해수욕장 등 바다에서 사회약자가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설치 사례 등

을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 속에서 해수욕장이 주는 혜택을 큰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수행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수욕장의 공간 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은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인식 증진’,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 ‘공유수면적 특성 반영’, ‘법률간 분담과 연계’, ‘좋은 거버넌스 구축’ 5가지로 제시하였다. 또한 추진과제로는 해수욕장 평가와 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해수욕장 포용성 증진사업,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전체 연안공간에 대한 포용성 개념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제2절 정책 제언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 작성한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수욕장에 대한 포용성 평가는 독립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당장은 해수부의 해수욕장 평가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를 기초로 해수욕장의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수욕장에서 장애인등 사회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가칭 ‘해수욕장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보급이 필요하다.

〈표 5-1〉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법률 개선사항

구분	주요 이용·관리수단	개선방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편의시설 설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 편의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에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 포함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중 공원의 하나로 바닷가 혹은 해수욕장 포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서비스 - 보조기기 센터	- 보조기기 종류에 해수욕장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포함 -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의 하나로 포함
장애인복지법	-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해수욕장 지원 인력 보유와 파견
연안관리법	- 연안정비사업	- 연안관리에서 기본원칙의 하나로 포용성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연안공간의 포용성 평가를 위한 근거 마련 - 포용성을 고려한 연안정비사업 추진 - 연안정비사업 선정기준에 포용성 증진 관련 항목 포함 - 해수욕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수욕장에 대한 포용성 증진 사업 추진
해수욕장법	- 해수욕장 구역 세분	- 해수욕장 구역 세분 시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의 해수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해수욕장 시설 설치	- 전국 해수욕장 대상 포용성 증진 사업 추진 근거 마련

구분	주요 이용·관리수단	개선방향
해수욕장법	- 해수욕장 평가와 지원	- 해수욕장 평가체계에 포용성 관련 항목 포함 - 포용성 측면에서 우수한 해수욕장에 대한 재정 지원 -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의 접근·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지원 근거 마련
항만법	- 항만개발사업 - 항만시설(친수시설) 설	- 친수시설 설치기준에 포용성 관련 항목 포함
어촌어항법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항개발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선정과 추진 시 포용성 고려
관광진흥법	- 관광지 지정 - 관광지 개발	- 연안공간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관광지에 대한 개발에서 포용성 증진 고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2015.
- 국토교통부,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8. 3.
- 김수진,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연구원, 2015.
- 김수진,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2018.
- 김원규 외, 「포용성장의 측정과 결정요인 분석」, 2018.
- 남정호·이운정, 「연안 공공이익 침해 방지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방안」, 2010.
- 문정호 외,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2016.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 2013.
- _____, 2016 열린관광지 사업설명회 발표자료, 2016.
- _____,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8. 12.
-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 박세훈 외, 「해비타트Ⅲ와 한국 도시정책에의 시사점」, 2016.
- 박인권·이민주,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 한국의 포용도시 의제 설정을 위하여」, 『공간과 사회』, 제26권 제4호, 2016.
- 변미리,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서울연구원, 2016.
- _____, 포용도시를 향하여_서울형 포용도시 지표개발과 포용성 진단,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45, 서울연구원, 2018.
- (재)부산디자인센터·경성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 「해양 관광지와 친수 공간 여가활동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2010.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광역시 7대 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및 백사장 접근로 실태조사보고서」, 2012.
- _____, 「부산광역시 7대 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및 백

- 사장 접근로 실태조사보고서」, 2013.
- _____, 「부산 7대 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고 및 주변 관광지 안내」, 2014.
- 서울특별시, 「2016 장애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6.
- 성경룡 외,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2017.
- 윤인진, 「한국 사회의 배타성: 소수차별의 메커니즘」, 『사회비평』, 제25호, 2000.
- 이호승 외, 「수변활용형 관광레저 시설의 접근성 실태파악과 개선방향 연구」, 2018.
- 임현묵 외,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1: 우리의 지속가능한 도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7.
-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 통계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2016.
- 한국관광공사, 「전국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201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해양과학생물디자인 육성을 위한 해양디자인클러스터 구축사업」, 2011.
- 한국소비자원, 「장애인 여행 실태 및 개선방안」, 2015.
- _____, 「장애인 편의시설(접근로·경사로) 안전실태 조사」, 2016.
- _____, 「해수욕장 안전실태조사」, 2018.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공원편)」, 2012.
- _____, 「장애인 여가활동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 눈에 보는 2017 장애인통계」, 2017.
-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5.
- _____, 「2018년 해수욕장 평가계획(안)」, 2018.
- 해운대구(관광시설관리사업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조례

제1178호), 2015.

_____, 「2019년 해운대구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 지정 고시」, 2019.

행정안전부,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 2018.

〈국외 문헌〉

Dworkin, A. G., & R. J. Dworkin (ed.), *The minority re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nic, and gender relation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EUROPEAN COMMISSION, *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2010.

Kroodsma, D. A., et al. "Tracking the global footprint of fisheries," *Science* 359(6378), 2018.

OECD, *Report on the OECD Framework for Inclusive Growth*, 2014.

Stelle, L. L., & M. King, "Whale mAPP: Engaging Citizen Scientists to contribute and Map Marine Mammal Sightings," In D. J. Wright (ed.), *Ocean Solutions*, Earth Solutions, ESRI Press, 2015.

UN-Habitat, *The 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 Concept Paper 2nd Edition, 2002.

World Bank, *World Inclusive Cities Approach Paper*, GSURR, 2015.

〈인터넷 자료〉

국제신문, "해수욕 누릴 권리 박탈당한 장애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705.22001001826> (검색일: 2019. 3. 7.)

- 네이버닷컴, 사회적 약자 정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18552&cid=47336&categoryId=47336>(검색일: 2019. 6. 15.)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271(검색일: 2019. 7.8)
- 산림청 보도자료, 국민행복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기회 확대 제공, http://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nttId=3053598(검색일: 2019. 7. 7.)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Beach>(검색일: 2019. 7. 8.)
-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기사 제목”, <https://www.ablenews.co.kr/>(검색일: 2018.7.26.~2018.7.31)
- 중앙일보, “팔공산 꽃 좀 봤으면 - 집에 갇힌 19만 노인환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403683>(검색일: 2019. 3. 7.)
-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app/sub07/211_tab2.do (검색일: 2019. 3. 28.)
- 캘리포니아 주 휠체어 사용자 가이드, <https://wheelingcalcoast.org>(검색일: 2019. 3. 7.)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conts/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menuId=10&NUM=1014(검색일: 2019. 7. 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장애인의 휴가, 여행인가, 고행인가, http://www.kofod.or.kr/bbs_shop/read.htm?me_popup=0&auto_frame=&cate_sub_idx=0&list_mode=board&board_code=sub2_2&search_key=%ED%9C%B4%EA%B0%80&key=&page=&idx=66723(검색일: 2019. 3. 14.)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해수욕장 지정현황,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430&boardKey=2&articleKey=25341>(검색일: 2019. 7. 9.)
- SBS 뉴스, “휠체어 타고도 즐길 수 있어요! 장애인 위한 멋진 해수욕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2211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검색일: 2019. 3. 7)

〈법령 자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 「관광진흥법」(법률 제16051호, 2019. 06. 2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15400호, 2019. 02. 22.)
- 「노인 복지법」(법률 제16243호, 2019. 07. 16.)
- 「어촌어항법」(법률 제15917호, 2019. 06. 12.)
- 「연안관리법」(법률 제15607호, 2019. 04. 18.)
- 「영유아 보육법」(법률 제16251호, 2019. 07. 16.)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 08. 12.)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91호, 2018. 12. 30.)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248호, 2019. 07. 16.)
- 「항만법」(법률 제16287호, 2019. 07. 16.)
- 「해수욕장법」(법률 제16163호, 2019. 07. 01.)

부록

부록 1.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관련 기준

〈부록 표 1〉 장애인등편의법 내 ‘공원’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신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자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부록 표 2〉 장애인등편의법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선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차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자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 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들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열람 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자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부록 2.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사용자유형별 특성과 배려사항

유형	개요	특성	배려사항
영유아, 어린이 및 동반 가족	• 유아동반자는 대부분 유아를 유모차에 데리고 다니거나 업고 다녀야 하고, 동반한 유아를 항상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든다. 어린이는 월령 및 연령대별로 신체, 심리 등의 발달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 수유하거나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불편하다. • 유모차를 끌거나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며 자녀의 행동을 항상 살펴야 한다. • 유아동반자는 때로는 유아를 안거나 업어야 하므로 피곤해지기 쉽다. • 어린이는 주의력이 부족하고 호기심 때문에 아무 것이나 만진다. • 어린이는 키가 작아서 어른 키에 맞춰진 시설물의 정보를 읽을 수 없다. • 어린이는 힘이 약해서 출입구의 개폐 등이 곤란하다. • 어린이는 어렵거나 추상적인 개념의 문자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 기저귀 교환 공간, 수유 공간, 휴식 공간 등을 설치한다. • 기저귀 교환대는 수유실 외에 화장실 근처나 남녀 각각의 화장실 내에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무거운 짐을 들어 주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짐 운반을 위한 카트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잘못 사용하더라도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설계한다. • 어린이의 키와 눈높이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높이나 깊이를 적절하게 정한다. • 짐이 많이 들어서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한 유아동반자나 어린이를 위해 출입구에 자동문 등을 설치한다. •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간결하며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노인	• 노화가 진행되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조그마한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 등의 감각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또한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기억력,	• 먼 거리를 이동하기 힘들다. • 걷기가 힘들어서 지팡이나 보행보조기와 같은 보조장치에 의존하기도 한다. • 안내 사인이나 책자 등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렵다. • 보통의 볼륨으로 소리를	• 보행로에는 적절한 간격으로 잠시 걸터앉아 쉴 수 있는 벤치, 의자, 휴게장소 등을 배치한다. • 지팡이나 보행보조기 등의 이용을 고려해 보행로나 문 등의 폭을 여유있게 한다. • 안내 사인이나 책자의 글씨 크기차를 크게 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유형	개요	특성	배려사항
	판단력, 이해력이 저하되는 등의 현상이 두드러진다.	- 인식하기 어렵다. - 빠른 속도의 말을 이해하기 곤란하다. -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증가한다. -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를 이해하기 힘들다. - 자신의 의사를 조리있게 전달하지 못한다.	-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 음성메시지의 속도를 늦춘다. - 말을 빨리 하지 않고 외래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 단순하고 꼭 필요한 문장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문의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듣는다.
임산부	임신 초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유산이 될 수 있고, 임신 기간이 경과할수록 몸무게가 늘어나고 눈에 띄게 거동이 불편해진다. 입덧을 하게 되며 사람에 따라서 증세가 다르지만 구토와 현기증 및 전신 권태현상을 느끼게 된다.	- 피곤하기 쉽고 장시간 선택로 공연 등을 관람하기 곤란하다. - 빨리 움직이고 이동하기 곤란하다. - 임산부는 발밀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차 등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 출산 후에는 수유 공간이 요구된다.	- 적절한 위치에 벤치나 휴게 공간을 설치한다. - 자신의 페이스에 따라 자동문 등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 바닥의 단차, 문턱 등을 없애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닥면을 마감한다. - 수유와 기저귀 교환을 위한 공간을 설치한다.
외국인·관광객		-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글자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문화와 지역에 대한 이해도 떨어진다. - 관광객은 여행용 가방을 휴대하고 한 손에는 카메라 등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양손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 한글로만 되어있는 안내사인을 이해하기 어렵다.	- 관광명소의 안내 사인에는 한글 외에 영어 등 외국어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픽토그램을 함께 표기한다. - 가방을 휴대하고 양손이 자유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개폐가 쉬운 자동문 등을 설치한다. -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등을 적당한 거리마다 설치한다.

유형	개요	특성	배려사항
		• 무거운 가방을 휴대하거나 지도나 카메라를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 걸어 다니면서 관광을 하다보면 다리가 아프고 피곤해진다.	
보행 곤란자	• 지체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탈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하지 장애로 스스로 몸을 지탱하거나 서있거나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보행이 곤란한 사람 중에는 지팡이나 목발, 의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 지팡이나 목발의 사용으로 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의 개폐 등이 곤란하다. • 지팡이나 목발 사용자는 바닥면의 홈, 틈새, 문턱 등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다. • 지팡이 사용자는 심한 경사로에서 넘어지기 쉽다. • 손이 닿는 범위가 좁고 아래 물건을 잡기가 곤란하다. • 무릎 위에서부터 의자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똑바로 버티고 있기 힘들기 때문에 경사로를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을 열수 있도록 출입문을 설계한다. • 홈이나 틈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면을 마감한다. • 경사로의 각도를 완만하게 하여 지팡이 사용자, 의족 착용자 등이 넘어지지 않게 한다. • 아주 높거나 낮은 위치에 손을 뻗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한다. • 목발사용자가 원할 경우 좌, 우 한쪽이 비어있는 곳에 좌석을 배치할 수 있다. • 원할 경우 대여용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휠체어 사용자	• 휠체어사용자란 하지의 절단, 뇌혈관 장애, 척추손상, 뇌성마비, 진행성 근위축, 류마티스성 질환 등에 의해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중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 이동 경로 내에 단차, 계단이 있을 경우 통행이 곤란하다. • 폭이 좁은 통로에서는 통행이 곤란하다. • 휠체어로는 측면이동이 곤란하다. • 휠체어에 탄 채로 접수대 등에 접근하기 어렵다. •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에 손이 닿지 않는다.	• 단차를 없애거나 최소화한다. •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경로를 안내한다.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폭을 고려하여 통로의 폭을 설계한다. • 휠체어를 탄채 지그재그로 이동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편의시설의 접수대 등에 휠

유형	개요	특성	배려사항
	말한다. 또 일시적 부상에 의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시선의 높이가 비장애인 성인에 비해 낮다. • 선체로 말하면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을 줄 경우가 있다.	• 체어사용자의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 출입구 가까운 곳에 좌석을 배치한다. • 휠체어사용자의 시선의 범위 내에 정보를 배치한다. • 허리를 굽혀서 휠체어 사용자와 같은 시선의 높이로 대화한다.
시각 장애인	• 시각장애인은 시각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으로,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 시력이 약해서 물체를 분간하기 힘든 '약시', 색 구분을 잘 할 수 없는 '색각이상',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은 '시야협착' 등이 있다.	•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 손이나 지팡이가 닿는 범위 밖의 것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형태, 위치 식별이 곤란하다. • 계단을 오르다가 치수가 변하면 혼란이 생기고, 나선형 계단에서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다. • 수직이동 시 유도블록이나 핸드레일이 없으면 경사의 시작이나 끝부분을 인식하기 곤란하다. •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은 유도블록이 끊겨져 있으면 길 찾기가 곤란하다. • 방향안내 사인을 볼 수 없어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곤란하다. • 약시자는 계단이나 단차를 파악하기 어렵다.	• 시각 대신에 음성·점자·유도블록·향기 등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보행할 때 발 밑 외에도 상부에 돌출물이 없게 하고 불가피하게 돌출물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알려준다. • 경사의 시작과 끝부분에 유도블록이나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유도블록을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 사인에 시설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제공한다. • 장소를 알려줄 때 '이쪽', '저쪽' 등의 지시어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리나 각도를 구체적인 숫자로 안내한다. • 계단의 끝에 눈에 잘 띄는 색띠를 부착하거나 도장 처리한다.
청각 장애인	• 청각장애인은 정도에 따라 '농아'와 '난청'으로 분류되는데, 농아는	• 소리에 의한 안내나 정보 입수가 어렵다. • 전화를 이용한 원거리 통신에서는 대화를 할	• 소리 대신에 시각, 촉각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일반전화 대신에 화상전화 등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

유형	개요	특성	배려사항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거나 청력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소리만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난청은 보청기 등으로 남아 있는 청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이다.	수 없다. • 실시간 정보나 긴급 상황을 알리는 음성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 • 외모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청각장애인끼리는 수화나 상대방의 입모양을 읽어서 의사소통한다. •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이 곤란하다. •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보청기를 사용해도 잘 들리지 않는다.	선 한다. • 긴급 상황발생 시 시각과 수단(LED 전광판, 긴급 문자메시지 등)과 진동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안내소에서 필담용구를 준비하고 적절히 대응한다. • 청각장애인의 좌석을 수화통역사의 앞 쪽, 강연자와 수화통역사가 함께 시야에 들어오도록 배치한다. • 강연자가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강연자의 입과 마이크가 겹치면 입모양을 읽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강연자에게 핀 마이크 부착하는 방식을 권유한다. • 문자를 소리로, 소리를 문자로 전환하는 ‘음성합성’, ‘음성인식’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 • 바닥에 자석루프를 깔아서 자기장을 발생시켜 보청기의 소리를 확대하는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
지적 장애인	• 지적 기능이 평균 이하인 상태이며 지능 발달의 장애로 인하여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고, 적응 행동의 장애와 학습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리분별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식	• 어렵거나 추상적 개념의 문자나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 • 외모를 보고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처음 경험하거나 급격한 변화에 대응이 곤란하다. • 상황의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고 패닉상태에 처할 때도 있다.	•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고 알기 쉽고, 간결하며,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필요시 픽토그램을 함께 사용한다. • 실수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제품이나 설비를 설계한다. • 패닉상태가 오면 안정을 시키고 필요하면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반복해서 설명한다.

유형	개요	특성	배려사항
	사, 배석, 옷 입고 벗기, 교통기관의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 목소리의 크기 조절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스트레스에 약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서툰 사람이 많다. • 제품 등의 조작이 매우 서투르다. • 충돌 등의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 큰소리를 낼 때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게 “왜 그러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조용히 말을 건다. • 충돌에 의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를 피하고 탄력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안정을 위해 가급적 동반하여 대피한다.
자폐 장애인	• 뇌손상, 정서적 원인, 유전적 이상 등의 원인으로 자신의 내부에만 빠져 있어 외부의 자극에 무관심하며 사회적인 반응의 결여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 언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장애를 보인다. • 자신이 관심 있는 몇 가지 행동이나 물건에만 집착하는 증상을 보인다.	•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부딪치는 이상행동을 보일 때는 조용히 말을 걸어서 마음을 안정시킨다. • 충돌에 의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를 피하고 탄력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내부 기능 장애인	• 심장, 신장, 호흡기관, 방광, 직장, 소장의 각종기능 장애에 의해 일상행황이 현저하게 제한을 받아서 인공장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겉으로 봐서 장애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 장애가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피로해지기 쉽다. • 오스트 대응 설비가 없으면 불편하다. • 휴식 벤치 등을 사용하고 있어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 공연 등의 관람 중에 병의 상태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다.	• 겉으로 보아서는 알기 어려운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이해하여 가급적이면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응한다. • 피곤을 느낄 때마다 쉴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벤치나 휴게공간을 배치한다. • 인공장기에 의한 배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오스트메이트(인공 배설기) 대응 설비를 갖춘다.

부록 3. 해수욕장 평가 기준

1. 으뜸해수욕장 조성계획 평가 기준

연번	기 준	배 점	평가 사항
1	비전의 독창성	20	으뜸해수욕장이 추구하는 비전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참신한가?
2	목표와 계획의 구체성	30	2018년 달성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인가
3	예산의 확실성	15	으뜸해수욕장 조성에 투입하기 위해 관리청이 확보한 예산과 규모
4	사업의 효과성	20	으뜸해수욕장 조성이 해수욕장과 주변 경제에 가져다 줄 예상 효과는?
5	홍보 계획	15	으뜸해수욕장을 이용객에 알리기 위한 홍보의 구체성과 실효성은?

2. 으뜸해수욕장 선정 평가표 (정성평가)

연번	기 준	배 점	평가 사항
1	비전 독창성	10	으뜸해수욕장 조성 비전(추구하는 바)의 차별성과 독창성
2	목표 달성도	30	2018년 설정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일정을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 관리청은 정량적 성과 입증에 가능한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제시
3	효과성	30	목표 달성이 가져다 준 효과는 무엇인가?
4	2019년 활용 및 홍보계획	10	으뜸해수욕장 선정시 이를 2019년에 활용하고 홍보할 계획은?
5	만족도	20	이용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 승계
6	합 계	100	

3. 관리운영우수 해수욕장 평가표(정성평가)

연번	평가항목	배점	평가 기준	점수
1	시설관리	20	• 관리청은 해수욕장 기본시설*은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관리하였는가? *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등	
2	환경관리	20	• 관리청은 어떻게 해수욕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였는가?	
3	안전관리	20	•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노력은 무엇이고 및 사고조치는 얼마나 잘 이뤄졌는가?	
4	물가관리	10	•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 관련(식당, 숙박업소 등) 물가는 어떤 수준으로 관리하였는가?	
5	즐거움	10	• 해수욕장 방문객이 해수욕 외에 즐길 특별한 것이 있는가?	
6	홍보	10	• 해수욕장을 이용객에게 알리기위한 해수욕장의 노력은?	
7	고객 만족도	10	• 이용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 승계	
8	으뜸해수욕장 선정 가점	5	• 으뜸해수욕장에 선정된 경우	
	합 계	105		

4. 관리운영우수 해수욕장 평가표(실사평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점수
합 계			100
시설 관리·운영 (20)	탈의·샤워 시설 설치 및 운영 (5)	① 샤워시설 90% 이상 정상작동, ② 샤워장 배수 원활*, ③ 청소시간과 담당자 표시 게시판을 운영하고 매일 점검 및 청소 * 평가일 개장 전 샤워장의 모든 샤워꼭지를 2분간 최대 가동 후 모든 샤워꼭지를 잠겼을 때부터 12초 이내 샤워장 바닥에 물이 완전히 빠질 경우 원활	5
		4점 요건 중 1개 결여	4
		4점 요건 중 2개 결여	3
		4점 요건 중 3개 결여	2
		탈의샤워시설 미설치	0
	화장실 설치 (2)	해수욕장법상 법정 화장실기준에 따라 설치된 화장실의 여자화장실 이용자 대기 시간이 10분 미만 또는 남자화장실 대변기 이용자 대기 시간이 5분 미만 (평가일 정오 기준)	2
		해수욕장법상 법정 화장실기준에 따라 설치된 화장실의 여자화장실 이용자 대기 시간이 10분 초과 또는 남자화장실 대변기 이용자 대기 시간이 5분 초과(평가일 정오 기준)	1
		해수욕장법상 법정 화장실기준에 미달	0
	화장실 운영 (6)	① 화장실 환경미화 담당자, 연락처 및 시간표 게시판을 설치하고 일 3회 이상 청소, ② 변기 90% 이상 작동, ③ 화장지 90% 이상 비치 * 현장 및 종합상황실 해수욕장 운영일지 등으로 확인	6
		6점 요건 중 1개 결여	4
		6점 요건 중 2개 결여	2
		6점 요건 중 3개 결여	0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점수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4)	① 관리청 인력 1명 이상 근무*, ② 구급 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하고 약품 비치, ③ 구조인력 상주 * 조직도와 출근 기록부 등으로 확인	4
		3점 요건 중 1개 결여	3
		3점 요건 중 2개 결여	2
		3점 요건 중 3개 결여	0
	주차장 (3)	① 해수욕장 전용 주차장이 해수욕장 지정고 시 구역 반경 200m이내 존재, ② 주차요금 시 간당 2천원 이하	3
		2점 요건 중 1개 결여	2
		2점 요건 중 2개 결여	0
안전관리 (20)	안전사고 대응 (6)	① 해수욕장에 익수사고 대응요령 게시판 설치(필수), 해파리 출몰지역 및 이안류 위험 지역은 각각 위험 게시판 등 공지(해당 해수욕장 만) ② 구명조끼 대여(유무상 무관), ③ 인명구조요원 또는 구급요원 상주	6
		6점 요건 중 1개 결여	4
		6점 요건 중 2개 결여	2
		6점 요건 중 3개 결여	0
	안전시설 구비 (6)	전년도 이용객 대비 법정* 기준으로 ①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구명튜브 등 구조장비, ② 감시탑, ③ 물놀이구역 안전시설 구비 * 해수욕장법 시행령 별표 3 라목 안전시설 기준	6
		6점 요건 중 1개 결여	4
		6점 요건 중 2개 결여	2
		6점 요건 중 3개 결여	0
	안전관리협력체계 구축 (2)	관리청이 ① 관할 해양경비안전서, 소방서, 민간구조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② 해수욕장 개장 전후 총 1회 이상 합동 훈련 실시	2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점수
		2점 요건 중 1개 결여	1
		2점 요건 중 2개 결여	0
	안전 모니터링 (3)	인명구조요원을 백사장 길이 300m당 동시에 1일 상주 3명 이상 배치 * 백사장 길이는 관리청 고시 내역에서 확인	3
		인명구조요원을 백사장 길이 300m당 동시에 1일 상주 2명 배치	2
		인명구조요원을 백사장 길이 300m당 1일 상 주 1명 배치	1
		인명구조요원을 백사장 길이 300m당 1일 상 주 1명 미만 배치 * 다만 ATV 또는 MTV를 백사장 길이 1Km당** 1대 이상 갖추었다면 백사장 길이 500m당 1 일 상주 1명 이상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 면(3점) 700m당 1일 상주 1명 이상(2점), 1Km당 1일 상주 1명 이상(1점), 1Km당 1일 상주 1명 미만(0점) ** 백사장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는 ATV 또 는 MTV 1대 구비	0
	시설안전 (3)	① 수상레저구역 진입로 설치·운영, ② 해수욕 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청의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③ 안전점검 결과 공개 * 종합상황실 운영일지, 점검대장 및 주요시설 부착 점검표지판 등으로 확인 * 단, 수상레저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해수욕장 은 ②, ③ 모두 충족시 3점	3
		3점 요건 중 1개 결여 * 단, 수상레저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해수욕장 이 ②, ③ 중 하나를 결한 경우 2점	2
		3점 요건 중 2개 결여 * 단, 수상레저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해수욕장 이 ②, ③ 모두 결한 경우 1점	1
		3점 요건 중 3개 결여	0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점수
환경관리 (15)	수질관리 (3)	해수욕장법에 따른 수질검사 이행, 모든 검사 결과 적합	3
		해수욕장법에 따른 수질검사 이행, 부적합 1회	2
		해수욕장법에 따른 수질검사 이행, 부적합 2회	1
		해수욕장법에 따른 수질검사를 이행, 부적합 3 회 이상	0
	오·폐수관리 (3)	해수욕장법상 ① 설치기준에 따른 오폐수 처 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② 관리기 준에 따른 관리 및 ③ 관리대장을 종합상황실 등에 비치 * 관리청, 종합상황실의 관련 문서 등으로 확인	3
		3점 요건 중 1개 결여	2
		3점 요건 중 2개 결여	1
		3점 요건 중 3개 결여	0
	쓰레기 집하시설 등 (3)	① 분리수거식 쓰레기 집하(장)시설이 해수욕 장법상 법정기준에 따라 설치, ② 집하장 주변 청결 상태 유지 ③ 집하장 주변 10m밖 악취 감지, * ②, ③은 이용객 10명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 질의하여 항목별 8명 이상 '긍정' 대답시 인정	3
		3점 요건 중 1개 결여	2
		3점 요건 중 2개 결여	1
		3점 요건 중 3개 결여	0
	백사장 관리 (3)	① 개장기간 매일 클리닝 타임 1회 이상 실시, ② 개장 전 1개월 이내 1회 이상 환경기준 충족 여부 검사 및 ③ 검사결과 해수욕장법상 환경 기준 충족	3
		3점 요건 중 1개 결여	2
		3점 요건 중 2개 결여	1
		3점 요건 중 3개 결여	0
	오염 관리	① 쓰레기, 해초 등 물놀이 수역 부유물 제거,	3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점수
접근 우수성 및 주변 인프라 등 편의성 (10)	(3)	② 백사장의 쓰레기 및 해초 제거 등 청결 유지, ③ 물놀이 구역의 유막 형성 또는 악취 여부 * 종합상황실 해수욕장 운영일지 등으로 환경 관리 상태서면 확인 후 이용객 10명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 질의하여 항목별 8명 이상 긍정대답시 인정	
		3점 요건 중 1개 결여	2
		3점 요건 중 2개 결여	1
		3점 요건 중 3개 결여	0
	대중교통 접근성 (2)	① 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수욕장 경유 대중교통* 안내, ② 개장 및 폐장시간대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 대중교통 실제 운행 * 섬의 경우 정기 해운이 있는 경우	2
		2점 요건 중 1개 결여	1
		2점 요건 중 2개 결여	0
	숙박 및 음식점 (3)	① 관리청 등의 홈페이지, SNS, 종합상황실 등을 통해 해수욕장 주변 숙박, 음식점 등을 안내, ②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의 1박당 숙박 요금이 非개장기간 가격* 대비 150% 이내로 억제** ③ 해수욕장 주변 식당의 음식가격이 非개장기간 가격* 대비 150% 이내로 억제** * 해당 지역 '15.12월 기준 가격 또는 2015년 통계청 발표 (지역)소비자물가 ** 관리청 제공자료를 통해 확인(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 0점 처리)	3
		3점 요건 중 1개 결여	2
		3점 요건 중 2개 결여	1
		3점 요건 중 3개 결여	0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준수 (3)	① 조례에 사용료 명기, ② 해수욕장내 사용료 관련 내용 표기, ③ 표기된 사용료 징수	3
		3점 요건 중 1개 결여	2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점수
		3점 요건 중 2개 결여	1
		3점 요건 중 3개 결여	0
	불편사항 대응 (2)	① 이용자 불편사항 대응 인력 배치*, ② 불편 접수사항 기록대장 비치 * 종합상황실 또는 전담센터내 조직도 등으로 확인	2
		2점 요건 중 1개 결여	1
		2점 요건 중 2개 결여	0
연계 관광프로그램, 레저 프로그램 우수성 (10)	연계관광프 로그램 우수성 (3)	① 연계관광지 보유, ② 주변 관광지 축제, 문 화·공연행사, 이벤트 등 보유, ③ 해수욕장 자 체 축제 또는 문화·공연행사, 이벤트 등 프로 그램 보유 * 종합상황실 또는 해수욕장내 관광안내소 등 에 비치된 팸플릿, 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3
		3점 요건 중 1개 결여	2
		3점 요건 중 2개 결여	1
		3점 요건 중 3개 결여	0
	관광안내 편리성 (3)	① 독자 관광안내소 또는 종합상황실내 안내 전담인력 운용, ② 팸플릿 등 안내인쇄물 비치, ③ 관리청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해수욕장 안내	3
		3점 요건 중 1개 결여	2
		3점 요건 중 2개 결여	1
		3점 요건 중 3개 결여	0
	레저프로그램 및 조건 우수성 (4)	① 개장 기간 중 1개 이상의 레저스포츠 참여 프로그램 운영 또는 동력·무동력 레저스포츠 시설 대여 가능 ② ①항이 유상일 경우 가격을 관리청이 관리, ③ 1개 이상의 레저스포츠 대 회 유치, ④ 해수욕장법상 체육시설 존재 * ①항이 무상일 경우 ①, ③, ④ 모두 충족시 4점	4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점수
홍보, 캠페인 등 4계절 이용활성화 노력정도 (15)		* 관리청 홈페이지, 관리청 또는 종합상황실 문 서 등을 통해 확인	
		4점 요건 중 1개 결여 * ①항이 무상일 경우 ③, ④ 중 1개 결여시 3점	3
		4점 요건 중 2개 결여 * ①항이 무상일 경우 ①을 결여하거나 ③, ④ 모두 결여시 2점	2
		4점 요건 중 3개 결여 * ①항이 무상일 경우 ①과 ③, ④ 중 1개 결여 시 1점	1
		4점 요건 중 4개 결여	0
	홍보노력 (4)	非개장기간에도 관리청 등이 해수욕장 프로그 램, 현황 등에 대해 ① 홈페이지 안내, ② 블로 그, SNS 등 온라인 홍보, ③ 지역언론 보도 ④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배포 * '16~'17 언론보도, 관리청 등 제출 자료로 확인	4
		4점 요건 중 1개 결여	3
		4점 요건 중 2개 결여	2
		4점 요건 중 3개 결여	1
		4점 요건 중 4개 결여	0
	이용촉진 캠페인 등 (3)	16년도 非개장기간에 관리청 등이 해수욕장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캠페인을 연 3회 이상 실시 * 관리청 등의 문서, 보도자료, 현수막 등 증빙 자료로 확인	3
		非개장기간에 상기 캠페인을 연 2회 이상 실시	2
		非개장기간에 상기 캠페인을 연 1회 이상 실시	1
		非개장기간에 상기 캠페인 미실시	0
	4계절 활성화 정도 (8)	非개장기간에 관리청 등의 ① 각종 동호회 등 의 해수욕장 이용 실적, ② 해수욕장 이용 레저	8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점수
		스포츠 등 대회 개최 또는 유치 실적, ③ 해수욕장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실적, ④ 해수욕장 주변에 위치한 관광지와 해수욕장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 '16~'17 관리청 등의 문서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	
		위 8점 요건 중 1개 결여	6
		위 8점 요건 중 2개 결여	4
		위 8점 요건 중 3개 결여	2
		위 8점 요건 중 4개 결여	0
만족도 (10)	현장 설문조사 실시(10)	(만족도 점수 합 / 만족도 표출자수) * 100	10

5. 개선시급 해수욕장 평가표(정성평가)

연번	평가항목	배점	평가 기준
1	관리청의 시설개선사항	20	• '17년 해수욕장 폐장이후 '18년 개장시까지 관리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의 시설개선 성과는?
3	해수욕장을 차별화하기 위한 관리청의 노력	10	• '18년 개장시까지 여타 해수욕장에 비해 뛰어나거나, 차별화되는 시설개선은? • 향후 해수욕장을 여타 해수욕장과 차별화기 위한 시설개선 구상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4	향후 발전가능성	10	• 해수욕장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한 관리청의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가?
5	관리청과 지역민의 열정	10	• 관리청과 관리청의 기관장은 해수욕장에 대해 얼마나 애정이 있는가? • 지역민, 해수욕장과 관련된 어촌계, 마을번영회, 상인회 등이 해수욕장 발전에 기여한 점은 무엇인가?
	합 계	50	

6. 개선시급 해수욕장 선정 평가표(실사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총 40점)	평가내용
관리청의 기본적 시설개선 사항 (10)	• 관리청이 2018년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위해 개선한 시설은 무엇인가?(10점) ① 해수욕장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1)~5)까지의 기본 및 기능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웠는지? (5점) * 해수욕장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1)~5)까지의 기본 및 기능시설 모두에 대해 정비계획을 세웠다면 5점,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면 0점 ②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상기 정비계획을 모두 이행하였는지?(5점) *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해수욕장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1)~5)까지의 기본 및 기능시설 모두에 대해 정비계획을 이행하였으면 5점, 하나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0점 * 만일 해수욕장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1)~5) 중 3가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개장 전까지 이행하였으면 3점, 2가지만 이행하였으면 2점
관리청의 시설개선계획의 구체성 (10)	• 관리청이 이용자들로부터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여 시설개선계획에 반영하였는가?(5점) ① 17년 개장기간 종합관리소 등 운영(1점), ② 16년 폐장 후 2주 내 관리청 기관장*에 불편사항 등 해수욕장 운영 종합평가보고(2점) ③ 18년도 시설개선 계획의 수립 및 기관장 보고(2점) * 제주도는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 관리청이 수립한 시설개선계획 및 투자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인가?(5점) ① (17년 이용객 5만 이상) '18년 해수욕장 시설개선예산에 관리청의 지방비(관리청만) 2억 이상 반영(5점) 1.6억 이상(4점) 1.2억 이상(3점) 0.8억 이상(2점), 0.4억 이상(1점) 0.2억 이상(0.5점), 0.2억 미만(0점) ② (17년 이용객 5만 미만) '18년 해수욕장 시설개선예산에 지방비(시·도비+구·시·군비) 2억 이상 반영(5점) 1.6억 이상(4점) 1.2억 이상(3점) 0.8억 이상(2점), 0.4억 이상(1점) 0.2억 이상(0.5점), 0.2억 미만(0점)

평가항목 및 배점 (총 40점)	평가내용
향후 발전가능성 (10)	• 해수욕장을 포함하는 자체 지역개발(발전) 계획* 수립(5점) *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포함 ① '18년부터 시행 (5점), '19년부터 시행(4점),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18년 상반기에 발주한 한 경우(3점), 그 외(0점) • 관리청의 발전 의지(5점) ② 수립 완료(기관장 보고)된 해수욕장을 포함하는 자체 지역개발(발전) 계획의 예산 중 민간투자 부분이 30% 이상일 때(5점), 20% 이상일 때(3점), 10% 이상일 때(1.5점), 10% 미만일 때(0점)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청의 애정과 의지 (10)	① 17.10월~18.7월 중 관리청의 장 또는 해당 광역단체 해당 과장 이상이 중앙 일간지, TV, 종편 등(아래 ②항의 매체 제외)의 인터뷰 또는 기고에서 해수욕장을 언급 (4점) ② 17.10월~18.7월 중 관리청의 해당 과장 이상이 지역 일간지, 중앙TV의 지국, 지역민방 등(위 ①항의 매체 포함)의 인터뷰 또는 기고에서 해수욕장을 언급(건당 2점, 최대 6점)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해양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최지현
02	수산부문 전망모형「KMI-FOSiM」구축 연구(2차년도)	이현동
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박상우
04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최석우
05	연안토지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통한 연안관리 효과 제고방안	윤성순
06	선박 배출저감기술의 국내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안용성
07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최일선
08	주요국의 해양유전자원 관리체계 강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09	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장원근
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이정삼
11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연구	류정곤
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명화
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영향분석 연구	한광석
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김태일
15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전형진
16	해상 사이버 보안 대책방안 연구	박한선
17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기업 역량강화방안 연구	윤희성
18	국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산항 및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하태영
19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이기열
20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수준 분석과 물류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은수
21	온도조절 컨테이너의 국제물류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신수용
2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3/3)	박한선
23	환동해권 경제개발 및 협력방안 연구(3/5)	최나영환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	------------------------------	-----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 연구(1/2)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양식어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해양사고조사체계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연구 - 베이지안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병욱
12	해운기업 지배구조 및 비즈니스 유형과 경영성과 관계 분석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이기열
18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차년도) -	박한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일본의 수산물 수입 구조 분석과 對일본 수출 전략 연구	임경희
----	--------------------------------	-----

2018년

01	선화주조선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낙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3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안용성
04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조지성
05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6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류정곤
07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방안	엄선희
08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미얀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 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 위한 우리나라-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7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홍장원
28	어촌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박상우
29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	이종필
30	IMO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비한 국내 해운산업 대응 전략	이호춘
31	외래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 방제체계 개선방안	최나영환
32	수산물 생산·유통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가능성과 도입방안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성과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트렌드 분석 및 수출 전략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브릿지 구축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인 쇄 | 2019년 8월 11일 인쇄

발 행 | 2019년 8월 13일 발행

발 행 인 | 양 창 호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효민디앤피 Tel : 051-807-5100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6,000원